

## CONTENTS

### 권두칼럼

경제 · 사회적 불안과 정부 본연의 역할 · 유정호 ..... 02

### 현안분석

미국과 한국의 주택관련 조세정책 변화에 관한 소고:  
재산세와 거래세를 중심으로 · 노영훈 ..... 08

에너지세제 개편 논의: 원자력과 전기 과세를 중심으로 · 허경선 26

### 주요국의 조세 · 재정동향

프랑스의 대기업 이전가격 보고의무 강화 외 ..... 43

### 정책흐름

2013회계연도 세입 · 세출 마감 결과 ..... 75

벤처기업 스톡옵션 소득에 대한 세제지원방안 마련 ..... 81

2013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 84

경제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 결과 ..... 86

'12년말 공공부문 부채 산출 결과 ..... 92

2014년도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 확정 ..... 99

### 이슈&포커스

조세재정연구원“기초연금 지급대상 45%로 축소해야” 외 ..... 102

## 경제 · 사회적 불만과 정부 본연의 역할



유정호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지금 우리 사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발전을 이뤄,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 가운데 하나에서 그런대로 잘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경제 문제로 인한 우리 사회의 불만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그것은 대체로 경제 성과의 배분과 관련된 문제이며, 이는 소득 및 빈부격차, 대기업 · 중소기업 관계, 노사관계 등등이다. 이에 관한 사회적 불만 내지 의분의 비등은 체제 비방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고, 이를 이용한 반체제 이념 투쟁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근간마저 위협하고 있다.

### 시장경제에서의 성과 배분의 공정성

경제 성과 배분에 대한 불만은 무엇보다 그 공정성에 관한 것인데, 공정성을 보는 시각부터 살펴보자. 하나의 비관적인 견해는, 시장경제에서는 그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시장경제에서 성과 배분이란 기본적으로 힘에 의해 결정되며,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탐욕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는 소박한 철학과 결부되어 바른 판단을 어렵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탐욕에 눈이 어두워, 부자는 가난한 이를,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고용주는 노동자를 착취하며, 세상은 약한 선과 힘센 악이 대결한다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정부는 약자 편에 힘을 실어주어야 하며, 그것이 정의다.

그러나 약자라고 두둔하는 것도, 강자라고 눈감아 주는 것도 정의가 아니다. 또한 불공정한 배분이 시장경제에서 불가피하다는 체제관은 그릇된 것이며, 선악 이분법적 사고는 올바른 진단을 어렵게 하고, 사회적 불만 해소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증폭시킬 수 있다.

문제가 갈피를 잡기 어려울수록 근본으로 돌아가 생각할 일이다. 사람은 모두 크든 작든 탐욕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 이익을 남의 이익보다 앞세운다. 남을 해하고서 자기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처벌받을 위험이 없다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빈번히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이다. 그대

로 두면, 남의 것을 약탈하려는 폭력이 난무하고 사기가 횡행하는 난장판 사회가 된다. 여기에 정부의 역할이 있다. 정부의 본질은 합법적 권력을 독점하는 존재이고, 정부 본연의 역할은 그 권력을 사용해서 사회구성원들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방법은, 타인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불의(不義)로 규정하는 법을 세우고, 그 법을 어기는 자는 강자이든 약자이든 예외 없이 처벌하는 것이다. 즉, 모든 이에 대해 공정·투명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폭력, 사기, 특권을 통한 약탈이나 착취가 사라질 것이다. 정부가 권력으로 세울 수 있는 정의는 여기까지이다.

### 정부 본연의 역할과 사회정의

경제 성과의 배분이 공정하지 못하고 그 때문에 사회적 불만이 증폭되는 것은 정부가 본연의 역할을 철저히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점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소득격차에 관한 사회적 불만을 생각해 보자. 가령, 어떤 사람의 소득이 내 소득의 100배, 혹은 200배나 된다고 하자. 그리고 그 소득은 폭력, 사기 혹은 특권을 통해 얻은 것이 아니라 능력과 노력, 그리고 운(運)으로 얻은 정정당한 소득이라 하자. 이때 내가 단지 소득격차가 엄청나다는 이유로 사회정의가 깨졌다고 주장한다면, 내가 잘못된 것이다. 이 예에서 보듯이, 사회적 불만을 야기하는 것은 소득격차 자체가 아니라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이다. 고소득을 얻는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사회구성원들은 당연히 그에 승복하지 않는다. 정부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그래서 폭력·사기 등등의 불법을 통해서 혹은 특권을 통해서 얻는 고소득이 없어진다면, 소득격차가 있더라도 그에 대한 사회적 불만은 최소화될 것이다. 소득격차는 더 이상 사회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저소득에 대한 사회안전망 마련의 문제가 될 것이다.

대기업·중소기업의 관계도 정부 역할을 염두에 두고 살펴봐야 한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하도급 관계에서 단가 인하, 기술 탈취, 인력 유출 등의 불이익을 흔히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며, 이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 본연의 역할 수행이 철저히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만약 철저히 했더라면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착취 문제는 애당초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대기업의 보복이 두려워 중소기업들이 부당행위의 신고·고발을 꺼리기

.....

**사회적 불만을 야기하는 것은 소득격차 자체가 아니라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이다. 고소득을 얻는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사회구성원들은 당연히 그에 승복하지 않는다.**

.....

.....

**노사관계에 힘의 균형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바람직하고 필요하다. 그러나 기업의 자유를 제약하는 종래의 방법보다는, 근로자의 자유의 범위를 확대시켜 주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다.**

.....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권리보호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음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도 정부가 할 일이다.


노사관계도 기본으로 돌아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령, 기업과 근로자 모두 현재의 고용관계를 끝내고 싶다고 가정하자. 기업이 한 명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쉬운 반면, 근로자가 현 직장을 떠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결정이다. 고용주가 근로자보다 더 큰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그만큼 고용주의 힘이 근로자에 비해 센 것이다. 이 때문에 정리해고 금지, 고용의 기간 및 형태에 대한 제한, 유급휴가 일수 보장 등을 포함하는 여러 규제가 입법되어 있다. 근로자의 자유를 신장하기보다는 기업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다. 이 고용보호 입법으로 근로자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분되었고, 기업에서는 정규직을 고용하는 비용이 높아졌다. 기업들은 당연히 비용이 적게 드는 비정규직 고용을 늘렸고, 그 결과 우리의 노동시장은 비정규직 비중이 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비정상적 구조가 되었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차별대우 문제를 야기하였고, 정부는 다시 그 시정을 위해 일련의 법들을 제정하였다. 이렇게 해서 결국, 기업에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고용’ 자체가 비용이 높고 번거로운 일이 되었으며, 근로자의 취업기회는 좁아졌다. 다른 한편 투쟁적 노사관계는 우리나라 기업환경이 열악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노사관계에 힘의 균형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바람직하고 필요하다. 그러나 기업의 자유를 제약하는 종래의 방법보다는, 근로자의 자유의 범위를 확대시켜 주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다. 이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자유와 재산권 보호라는 정부 본연의 역할에 더 합치한다. 근래 거론되고 있는, 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및 확충,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직업훈련, 취업정보 제공 등등이 그 예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룰이 창조경제의 바탕**

위에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몇몇 경제문제를 살펴보았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불만을 해소하려면, 정부는 무엇보다 먼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소득격차를 축소하겠다는 소득재분배 정책을 강구하기에 앞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사이 좋게 지내도록 하겠다는 공생발전 내지 동반성장을 위한 입법에 앞서, 노사분쟁을 어떻게 중재하고 쟁의에 대비하느냐 머리를 짜내기에 앞서, 정부는 먼저 어떻게 하면 사회구성원들이 누리

는 자유의 범위를 더 확대하고 개개인의 재산을 더 철저히 보호할까를 고민해야 한다.

진정으로 그렇게 한다면, 요즘 유행하는 말로 ‘대박’이 터질 것이다. 정부가 모든 이의 자유와 재산을 최대한 보호하고, 모든 이에 의한 타인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를 철저히 처벌한다고 하자. 그러면, 내가 나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받는 것은, 남의 자유나 재산을 침해함으로써 정부의 제재를 자청했을 때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나는 옆 사람이나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다. 이것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첫째 조건이고, 개인의 잠재력뿐 아니라 여럿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또한 창조경제의 바탕이다. 눈치에서 자유로워진 우리 기업들은, 내가 잡을 수 있는 기회는 모두 잡겠다고 투자를 늘릴 것이며, 개선된 기업환경은 우리 경제에 대한 다국적기업들의 직접투자를 증대시킬 것이다. 그리고 우리 경제는 가지고 있는 모든 잠재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

**정부는  
먼저 어떻게 하면  
사회구성원들이  
누리는 자유의 범위를  
더 확대하고 개개인의  
재산을 더 철저히  
보호할까를  
고민해야 한다.**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 현안분석 |

■ 미국과 한국의 주택관련 조세정책 변화에  
관한 소고: 재산세와 거래세를 중심으로  
노영훈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에너지세제 개편 논의: 원자력과 전기 과세를 중심으로  
허경선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 미국과 한국의 주택관련 조세정책 변화에 관한 소고: 재산세와 거래세를 중심으로

## I. 서론



**노영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yhrut@kipf.re.kr)

2013년은 미국에서 'California Proposition 13'이 발생한 지 35주년을 맞는 해이다. 캘리포니아주 Proposition 13은 1978년의 캘리포니아주 헌법을 개정하자는 발의안을 칭하는데, 주민투표에 참가한 유권자들에 의해 1978년 6월 6일 찬성 가결된 후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13A조에 포함되었으며 1992년에는 미국 연방대법원에 의해 합헌결정을 받았다. 주택가격 상승기에 미국 내 조세저항(tax revolt) 운동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 Proposition 13의 핵심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자.

부동산의 시가에 기초하여 계산한 종가세 최고액은 현금가액의 1%를 넘을 수 없고, 1% 세율의 세금은 군(County)정부가 징수하여 군내 하위 지역구들에 법에 따라 배분한다는 것이다. 또한 재산세 과세가액(과세평가액)을 1975년 기준 가격으로 평가하고 매년 과표조정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연간 2% 한도 내에서 인상할 수 있을 뿐이며, 소유주가 바뀌거나 신축주택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기준연도로 재평가할 수 없도록 하여 재산세 부담을 대폭 감소시켰다. 그 결과 2010년 미국 전역의 주 및 지방정부 세입은 재산세 34.8%, 일반매상세 22.4%, 개인소득세 20.5%, 법인소득세 3.4%, 기타 18.9%인 데 반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각각 31.2%, 23.1%, 26.4%, 5.3% 14.0%으로 재산세 비중은 낮고 개인소득세 비중은 미국 전체 평균에 비하여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Proposition 13을 통해 재산세 과표를 '취득가격에 연계시킨(acquisition-value assessment)' 재산세시스템은 부동산시장 호황기에는 지자체의 과도한 지출을 통제하고, 침체기에는 지방정부가 지출을 감축하도록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 있다고 평가받기도 하나, 재산세의 주택가액 대비 수직·수평적 형평성 불균형 문제가 심해졌다고 평가받기도 한다.<sup>1)</sup> 한편, 고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보유단계 중에 납부해야 할 현금이 부족한 노령층 등 저소득가구들에는 소득 대비 주택재산세 부담

이 높게 나타나던 문제를 완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제 변화를 2005년 이후부터 살펴보자. 부동산의 취득과세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원칙이 강화되어 왔고, 보유단계 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인 재산세라 하더라도 2005년 이후 중앙정부의 통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서울의 경우 지방세법에 의해 전국 공통의 세율이 적용되며 탄력세율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과거에는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기준이었으나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과표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2011년부터 「지방세법」 제4조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규정을 지방세법 제일 앞부분에 위치하도록 한 후,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하여 지방재산세의 과세표준 결정 권한을 중앙정부가 갖도록 하였다. 또한 참여정부 때부터 보유과세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토지 및 주택공시가격의 일정비율을 재산세 과표로 사용하도록 법제화되어 재산보유세의 경우에도 과세권자가 과세표준 결정에 영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주택 또는 부동산대책으로 발표되는 정책세제들의 경우에는 ‘거래’와 ‘보유’ 단계의 세부담이 시장참여자의 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종합적 판단에 기초하여 정부의 시장대응적 조세정책이 마련되

“  
**주택 또는 부동산대책으로 발표되는 정책세제들의 경우에는, ‘거래’와 ‘보유’ 단계의 세부담이 시장참여자의 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종합적 판단에 기초하여 정부의 시장대응적 조세정책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들 정책세제 결합(tax policy mix)의 정책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모형은 그다지 활발하게 개발되는 것 같지 않다. 예를 들어, 현재의 주택시장이 과거 시장가격 안정화 정책 수단으로 양도소득세가 주로 활용되던 전통적 환경에서, 거래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 또는 영구적) 추가적인 주택취득세의 감면까지도 요청되는 시장상황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분석틀이 필요한 실정이다. 거래단계 세부담을 명시적으로 감안한 주택자산투자 균형모형을 상정하면 타 정책요인들의 정책효과를 과다추정하는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이 거래활성화에 미치는 정책효과는 과거 집값 상승기의 양도소득세 강화를 통해 가격안정효과를 기대하던 2000년대 상황에 비해 많이 낮아졌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5년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혜택을 부여해 봤자 세후투자수익률을 높여 주택구입 수요를 증대시키는 효과는 과대추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과거와 달리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기대가 높지 않은 현 주택시장 상황에서 보유세 완화가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

1) 같은 가격대의 두 집에 대한 연간 재산세액이 기존 소유주와 새로 이사온 소유주 사이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인상에 상한(cap)이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으로 주택가액 대비 수평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고,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서의 기존 주택소유주가 과표인상 상한설정 혜택을 더 받게 되어 수직적 형평성이 악화되었다고 지적되는 것임. 따라서 후술하는 소득 대비 재산세 부담의 역진성 문제를 완화시켰다는 표현과 반드시 상충되는 것은 아님

“  
**미국에서는 최근 몇 년간 자가점유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지원을 축소하여 미연방의  
 재정적자 문제를 완화하려는  
 조세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

다면, 양도세 비과세보다는 오히려 거래비용을 낮추어 주는 일회성 거래세 감면조치가 주거서비스 수요를 임대주택에서 자가주택으로 해결하려는 일부 계층에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주택구입을 고려하는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주택취득세 부담을 50% 낮추어 주는 한국의 정책과, 주택매수자의 연방소득세에서 일정금액을 세액공제해 주는 미국의 정책이 모두 구입단계(Front-end, Up-front)의 거래비용을 경감시켜 준다는 점에서 유사하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즉, 양국이 모두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 단계에 개입하는 조세를 정책수단화한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과 주택관련 보유세 및 거래세 조세정책 변화와 이를 평가하는 모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책론적 관점에서 조세정책 수단의 선택, 수혜대상 범위, 형태 변화를 유도하는 실효성 정도, 조세지출 규모 및 자원조정 등 이슈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미국 내 조세개혁과 주택관련 조세정책 논의**

**1. 최근 미국의 주택관련 조세정책 변화**

미국에서는 최근 몇 년간 자가점유주택(owner-occupied housing)에 대한 각종 세제지원을 축소하여 미연방의 재정적자 문제를 완화하려는 조세개혁(Tax Reform)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과거 조세

개혁의 주된 목적이나 동기들로서 경제성장 지원, 친환경 및 외부불경제 교정, 조세의 형평성 제고 및 경제제 비효율성 축소, 세제 단순화를 통한 납세협력비용 절감 등이 전면에 부각되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최근의 논의방향은 세입증대(revenue-raising) 목표가 전면에서 부각되고 있다. 이는 그만큼 미국의 국가부채나 재정적자가 경제에 중장기적인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여 미국 경제의 지탱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013년 OMB 추계에 따르면, 주택소유자가 ①납부한 모기지이자 및 지방재산세액의 연방소득세에서의 소득공제, ②주거주택으로부터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높은 수준의 비과세(exemption)를 통한 세제지원 규모만 1,510억달러에 달해 세법 항목 중 가장 큰 조세지출 항목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실 주택소유자에 대한 가장 큰 혜택은 ③자가점유가구의 귀속임대료(imputed rental income)에 대한 비과세(exclusion)이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자가점유자들이 자기소유주택으로부터의 귀속임대소득을 자신과 주고받는 것을 소득과세 대상으로 삼지 않는 현실을 소득과세 기준점(baseline)으로 삼고 있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항목들만 조세지출(tax expenditure) 항목에 포함시키고 있다.

현재 미국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연방소득세에서 이미 납부한 모기지이자금액을 소득공제하던 것을 세액공제로 대체하거나 납부한 지방재산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철폐하자는 정책제안들을 활발히 검토중인데, 2014년 연방예산에서 이미 오바마 대통령은 자가점유자에 대한 모기지이자 및 지방재산세에 세제지원을 포함한 개별소득공제(itemized deduction) 세금우대혜택을 총공제금액의 28%로 제한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에 있다. 또한 Feldstein, Fennberg, MacGuinness(2011)는 위의 주택관련 세제혜택을 포함한 조세지출 한도를 납세자 과세소득의 2% 내로 제

한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한편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보유단계에서 주택소유자에게 지속적으로 모기지이자 및 지방재산세 소득 공제를 해주는 것보다는 이를 제한하고 거래단계에서의 일회성 거래비용 경감 보조를 해주는 것이 주택시장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된다는 주장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 2. 주택시장에 미치는 조세정책 분석틀의 변화

조세정책의 변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전통적으로 ‘(주택자본의) 사용자비용(user-cost of capital)’ 분석틀 내에서 이루어져 왔다. 즉, 주택을 소유할 것인지 임대할 것인지의 의사결정은 주택소유비용과 임차비용이 일치할 때까지 소비자가 주택자산에 대한 투자를 지속한다는 전제하에 주택소유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세후 모기지차입비용, 세후 재산세비용, 자기자본 기회비용, 관리비 등에서 세후 실질주택가격상승률을 차감한 것을 주택자본의 사용자비용으로 정의하고 임차비용과 같아지는 균형상태를 상정하였다.

미국 주택시장의 경우 거래비용은 저당대출(mortgage) 및 신청비용, 소유권확인비용(title service), 거래세,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이 포함되는데, 그 크기는 <표 1>에서 나타나듯이 도시별로 상이하지만 상당하며, 초기 매입시점 비용은 0.8~2.5%에 이르고 말기 매도시점에는 5.5~9.5%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up>2)</sup>

이는 기존의 전통적인 주택자산시장 균형모형으로 많이 사용되던 사용자비용모델(user-cost framework)을 변형한 불연속기간 사용자비용모델(discrete-period user-cost model)을 사용하기 시

“  
미국 주택시장의 경우 거래비용은 저당대출 및 신청비용, 소유권확인비용, 거래세,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이 포함되는데, 초기 매입시점 비용은 0.8~2.5%에 이르고 말기 매도시점에는 5.5~9.5%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작하는 계기가 되었고, 거래비용이 주택소유기간(homeownership duration)에 미치는 영향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먼저 전통적인 사용자비용모델은, 주택구입가격  $P$ 의  $\alpha$ 만큼을 모기지로 대출받고 나머지  $(1-\alpha)$  부분은 자기자본(owner's equity)으로 투자하여 모기지이자율  $i$ , 실질주택가격상승률  $g$ , 관리비용비율  $m$ , 기회비용투자수익률  $r$ 하에서의 사용자비용은 식 (1)의 오른쪽으로 나타낼 수 있고, 왼쪽은 주택임대료이다. 즉, 주택자본의 사용자비용이 한계점에서 임대수익률( $R/P$ )과 일치할 때까지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R = [(1-\gamma t^y)\alpha i + (1-\gamma t^y)t^p + (1-t^{cg})(1-\alpha)r - g + m]P \quad (1)$$

반면에 거래세를 포함한 거래비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주택소유기간에 따른 사용자비용의 차이가 커질 경우 매입시점-보유기간-매도시점의 특성을 감안한 아래와 같은 불연속시간모형(discrete time model)을 상정할 수 있다. 이때  $T^0$ 는 매입시점의 거래비용 비율을,  $T^k$ 는 매도시점의 거래비용 비율을 표시하며, 주택가격 연간상승률은  $\pi$ 로 일정하다고

2) Harris (2013) Table 1 참조

“  
**과거 주택 자가점유자에 대한  
 모기지이자 및 재산세 납부액 소득공제 혜택을  
 연방소득세에서 축소하게 되면  
 주택시장 가격의 하락을 야기한다는  
 많은 연구결과들이 제시되었다.**  
 ”

가정하였다.

$$\sum_{t=1}^k \frac{R_t}{(1+i)^t} =$$

$$PT^0 + P \sum_{t=1}^k \left[ \frac{\lambda r_t (1-\tau^y) + \tau_t^p (1-\tau^y)}{(1+i)^t} \right] +$$

$$P \left[ \frac{(1-\lambda)1+r(1-\tau^{cg})^k - (1-\lambda)}{(1+i)^k} \right] +$$

$$P \left[ \frac{(1+\pi)^k (T^k)}{(1+i)^k} \right] \quad (2)$$

이러한 변형모델하에서 주택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추가 가정을 하면 정책 변화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효과는 임대료-가격비율( $R/P^0$ ), 초기매입비용( $T^0$ ), 보유기간 동안의 재산세실효세부담 합계의 현재가치, 그리고 매도시점 거래비용의 현재가치를 합산한 값의 변화로 표시할 수 있다.

과거 주택 자가점유자에 대한 모기지이자 및 재산세 납부액 소득공제 혜택을 연방소득세에서 축소하게 되면 주택시장 가격의 하락을 야기한다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우변의 두 번째 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1997년 TRA(Tax Reform Act) 이후 자가점유자에 대한 주택양도세 부담이 사실상 거의 사라지게 되자 우변의 세 번째 항을 고려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정책당국에서는 만일 ‘주택소유를 지

원하는 보유단계 조세지출 항목들을 축소하면서 1회성 거래비용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정책 전환을 한다 면’이라는 가상시나리오를 우변의 첫 번째 항 및 두 번째 항에 적용함으로써 이를 통한 정책효과 평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표 1〉 미국 대도시별 거래비용: 주택가액 대비 비용

(단위: %)

	거래세	매입단계 비용	재산세율	매도단계 비용
애 틀 랜 타	0.10	1.20	1.00	5.60
보 스 턴	0.46	1.15	1.31	5.96
시 카 고	1.20	2.51	2.02	6.70
신 시 내 티	0.30	1.35	1.27	5.80
클리블랜드	0.40	1.00	1.58	5.90
델 러 스	0.00	1.23	1.93	5.50
덴 버	0.01	1.03	0.70	5.51
디트로이트	0.86	1.27	1.88	6.36
호 놀 룰 루	0.10	1.00	0.29	5.60
휴 스 턴	0.00	1.32	2.02	5.50
캔자스시티	0.00	1.22	1.31	5.50
로스앤젤레스	0.11	1.33	0.70	5.61
마 이 애 미	0.95	1.83	1.30	6.45
밀 워 키	0.30	1.42	1.76	5.80
미니애폴리스	0.56	2.12	1.19	6.06
뉴 욕	2.05	2.20	1.70	7.55
필라델피아	4.00	1.94	1.63%	9.50
피 츠 버 그	4.00	1.84	1.50%	9.50
포 틀 랜 드	0.00	1.02	1.05%	5.50
샌 디 에 이 고	0.11	1.24	0.73%	5.61
샌프란시스코	0.68	1.24	0.75%	6.18
시 애 틀	1.78	2.20	1.02%	7.28
세인트 루이스	0.00	0.79	1.30%	5.50
평균값	0.78	1.45	1.30%	6.28
중위값	0.30	1.27	1.30%	5.80

주: 미국 연방주택금융청(FHFA) 자료를 이용하여 Harris(2013) 계산한 자료 인용  
 자료: Tax Foundation (2009).

미국은 이미 주택구입 지원용 보조금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중이었던 2008년에 생애최초 주택구입세액 공제(FTHBC: First-Time Homebuyer Credit)를 통해 8천달러 연방소득세 세액공제를 시행한 경험이 있다.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조세지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모기지이자 및 지방재산세 소득공제를 축소하려는 정책논의가 활발한 상황에서 주 및 시·군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주택거래세 같은 거래비용 변화도 연방소득세 세액공제와 같이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향후 연방소득세를 통한 정책수단을 하위정부의 주택관련 지방세 정책수단으로 대체할 경우 정부 간 재정조정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이를 사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나 주택양도세의 대폭 완화 이후 침체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거래세나 거래비용 완화가 새로이 주목받고 있음은 분명하다.

### 3. 미국 내 주택거래과세의 현황

Dachis et al.(2012)에 의하면 미국 내 34개 주 및 주 내 지방정부에서 주택거래세(housing transfer tax)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sup>3)</sup> 대표적 사례로 뉴욕시와 워싱턴 D.C.의 경우를 살펴보자.

뉴욕주의 부동산이전세(Real Estate Transfer Tax: RETT)는 소유권(deed)을 포함하여 500달러 이상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는 거래에 부과된다. 거래종료, 즉 인도 후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매 500달러당 2.00달러 즉 0.4%의 세율이 적용

“  
**주택양도세의 대폭 완화 이후  
 침체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거래세나 거래비용 완화가  
 새로이 주목받고 있음은 분명하다.**  
 ”

된다.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양도자라는 점이 특이하나, 미납부하거나 비과세대상자라면 양수자가 납부해야 하므로 양도자와 양수자가 연대납부의무가 있다.

뉴욕시도 부동산이전세(Real Property Transfer Tax)는 뉴욕주가 RETT를 부과하듯이 시정부가 부동산매도자에게 부과하는 시세인데, 이는 뉴욕시 행정법<sup>4)</sup>에 근거를 두고 있다. 대부분 주택의 경우 세율은 50만달러 이하의 경우 1%이고 50만달러를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만 기준금액인 50만달러 초과분이 아닌 거래액 전체에 대해 1.425%를 적용한다. 주택 이외의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해당 세율은 50만달러 이하 및 초과인 경우 각각 1.425%와 2.625%<sup>5)</sup>이다. 거래 후 30일 이내에 ACRIS(Automated City Register Information System)를 통해 전자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통상 매매계약의 최종 정산(closing)단계에서 거래쌍방이 정산비용(closing costs) 중 하나로 정산되면서 매도인측 변호사가 매도인을 대신하여 납부하게 된다.

결국 100만달러가 넘는 고가주택에 대한 맨션세를 포함하더라도 뉴욕시 주택매매거래에서 거래세로 부담하게 되는 총실효세부담은 2.825% 이하이다.

워싱턴 D.C.에서는 2003년 매매가격에 적용되

3) Dachis et al.(2012), p. 328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 부동산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다. 2004년 미국 내 많은 시들과 주들이 부동산거래세로 무시할 수 없는 세수를 거두어 들인다. 34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어떤 형태로든 부동산에 대한 이전과세를 발견할 수 있다. 캐나다는 대부분의 주정부들이 토지이전세를 부과하고 오스트레일리아 주정부들도 유사한 조세를 부과하며 영국 및 프랑스도 마찬가지이다. 토지이전세가 재정에 미치는 중요성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들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된 바 없다.”

4) NYC Administrative Code, Local Law: Title 11, Chapter 21, Administrative Code, Enabling Act: Tax Law Section 1201(b).

5) 시세로서 뉴욕시 일반재정에 귀속되는 세율인 1.625%와 교통청(Mass Transit Authority) 및 민간버스회사에 귀속되는 1%를 합한 세율임

“  
**결국 가격턱인 25만달러 부근의  
 가격대로 평가되는 주택들을 대상으로  
 1월 1일부터 공식적인 매매가가  
 24만 9,999달러를  
 넘지 않도록 유도할 인센티브가  
 상당히 존재하게 되었다.**  
 ”

는 주택거래세율이 2.2%에서 3%로 인상되었는데 이는 신고된 거래가격이 25만달러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었다. 이것은 주택이 25만달러 이상으로 거래되면 주택 매매가 전액에 대해 고세율이 적용되어 24만 9,999달러에서 1달러만 늘어난 25만달러로 거래되어도 세액은 2천달러가 증가하게 되는 가격턱 효과(price notch effect)를 발생시키게 되었다. 결국 가격턱인 25만달러 부근의 가격대로 평가되는 주택들을 대상으로 1월 1일부터 공식적인 매매가가 24만 9,999달러를 넘지 않도록 유도할 인센티브가 상당히 존재하게 되었다. 주택 매수자가 등록세(deed recordation tax)를, 그리고 주택 매도자가 이전세(deed transfer tax)를 각자 같은 금액씩 부담하므로<sup>6)</sup>, 주택 매수자의 입장에서 주택가격 25만달러를 구분점(cut-off)으로 하여 급등하게 되는 거래세 증가액은 세율변동 %p의 절반인 25만달러×(3%-2.2%)/2=1,000달러에 해당한다. 매도자도 같은 금액만큼의 이전세(deed transfer tax)를 절약할 수 있는 유인이 존재하므로 25만달러 이하로의 저가신고 유인이 존재하게 된다.

3%에 해당하는 고세율 그리고 이에 따른 가격턱은 2004년 10월 1일에 폐지되었지만, 2006년 10월 1일

에 40만달러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2.9% 고세율 구간이 새로 생긴 후 2,800달러에 달하는 새로운 세액 급등 구분점이 재도입되었다.

#### 4. 미국의 주택재산세 현황과 실질부담 수준

##### 가. 미국의 주택재산세 실질부담 수준 현황

미국의 1,800여 군(county) 단위의 중위값 주택들, 재산세 중위값 부담, 가구소득 중위값 분포들은 미국조세협회(Tax Foundation)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를 주(state) 단위로 합산한 분포표는 <표 2>와 같다. 부동산 등에 대한 미국 기초자치단체 재산보유세(local property tax)의 군단위별 세부담을 군 내의 중간재산세액, 중간주택가격, 중간가구소득을 구해 실효세율을 집값 대비 그리고 가구소득 대비로 계산한 후 주 단위로 평균한 것이다.

6) 보통 구매자가 등기하는 과정에서 등록세(deed recordation tax)를 내고 매도자가 이전세(deed transfer tax)를 내게 되며, 본고에서 주택거래세율이라고 칭할 때는 이 두 가지 조세의 세율을 합한 것을 말함

〈표 2〉 미국의 주(state)별 자가점유주택에 대한 지방재산세 실효세부담(군 중위값들의 주 평균)

(단위: 달러, %)

주	중간재산세 납부액 (A)	중간주택가격 (B)	주택가격 대비 재산세 실효세율	중간가구소득 (C)	소득 대비 재산세 실효세율	가격 대비 실효세율 (A/B)	중간소득 대비 중간재산세 실효세율 (A/C)
주 전체 평균	1,559	156,745	1.00	56,737	2.56	0.99	2.75
앨라배마	396	106,940	0.37	47,542	0.82	0.37	0.83
알래스카	2,641	240,240	1.09	84,347	3.08	1.10	3.13
애리조나	1,093	161,129	0.69	48,108	2.26	0.68	2.27
아칸소	540	97,368	0.55	46,398	1.15	0.56	1.16
캘리포니아	2,507	360,269	0.71	71,667	3.38	0.70	3.50
콜로라도	1,391	269,284	0.54	68,083	1.99	0.52	2.04
코네티컷	4,448	293,763	1.53	84,867	④ 5.20	1.51	5.24
델라웨어	997	240,033	0.41	65,395	1.49	0.42	1.52
워싱턴 D.C.	2,222	446,300	0.50	100,204	2.22	0.50	2.22
플로리다	1,536	171,004	0.89	52,161	2.90	0.90	2.94
조지아	1,121	139,820	0.80	54,460	2.00	0.80	2.06
하와이	1,093	519,525	0.21	75,231	1.43	0.21	1.45
아이다호	1,171	178,111	0.69	53,896	2.15	0.66	2.17
일리노이	2,482	131,358	③ 1.84	60,303	3.90	1.89	4.12
인디애나	942	117,625	0.80	55,268	1.68	0.80	1.70
아이오와	1,567	120,750	1.30	59,247	2.62	1.30	2.65
캔자스	1,558	114,764	1.39	58,189	2.65	1.36	2.68
켄터키	822	109,727	0.73	49,501	1.59	0.75	1.66
루이지애나	467	119,600	0.37	52,445	0.86	0.39	0.89
메인	1,791	165,687	1.09	52,819	3.33	1.08	3.39
메릴랜드	2,350	288,667	0.82	79,326	2.91	0.81	2.96
매사추세츠	3,265	312,158	1.08	79,439	4.11	1.05	4.11
미시간	1,741	128,184	1.36	51,773	3.30	1.36	3.36
미네소타	1,682	174,333	0.96	62,071	2.66	0.96	2.71
미시시피	639	94,157	0.69	44,516	1.43	0.68	1.44
미주리	977	119,696	0.80	51,532	1.83	0.82	1.89
위스콘신	1,680	205,878	0.84	55,579	3.02	0.82	3.02
네브래스카	2,149	121,376	1.77	60,472	3.51	1.77	3.55
네바다	1,441	214,763	0.69	62,940	2.32	0.67	2.29
뉴햄프셔	4,043	223,670	④ 1.82	67,427	② 5.96	1.81	6.00
뉴저지	6,393	333,257	② 1.95	87,743	① 7.23	1.92	7.29
뉴멕시코	711	135,090	0.54	47,484	1.50	0.53	1.50
뉴욕	3,379	195,750	① 2.09	65,742	④ 4.93	1.73	5.14

〈표 2〉의 계속

(단위: 달러, %)

주	중간재산세 납부액 (A)	중간주택가격 (B)	주택가격 대비 재산세 실효세율	중간가구소득 (C)	소득 대비 재산세 실효세율	가격 대비 실효세율 (A/B)	중간소득 대비 중간재산세 실효세율 (A/C)
노스캐롤라이나	1,002	138,701	0.75	50,797	1.94	0.72	1.97
노스다코타	1,479	124,321	1.16	56,185	2.57	1.19	2.63
오하이오	1,553	126,282	1.20	55,365	2.74	1.23	2.80
오클라호마	658	96,193	0.66	50,005	1.28	0.68	1.32
오리건	1,898	232,207	0.82	56,489	3.32	0.82	3.36
펜실베이니아	1,934	142,179	1.37	56,484	3.31	1.36	3.42
로드아일랜드	994	134,247	0.70	51,834	1.78	0.74	1.92
사우스캐롤라이나	625	116,993	0.55	47,840	1.28	0.53	1.31
사우스다코타	1,930	147,856	1.30	60,964	3.16	1.31	3.17
테네시	761	121,594	0.63	48,238	1.54	0.63	1.58
텍사스	1,653	108,960	1.46	55,560	2.84	1.52	2.97
유타	1,208	221,460	0.56	63,876	1.87	0.55	1.89
버몬트	3,255	201,908	1.61	60,298	③ 5.39	1.61	5.40
버지니아	1,572	219,987	0.68	66,295	2.20	0.71	2.37
워싱턴	1,984	230,800	0.87	60,846	3.23	0.86	3.26
웨스트버지니아	532	97,084	0.55	45,372	1.14	0.55	1.17
위스콘신	2,659	158,654	1.69	59,631	4.43	1.68	4.46
와이오밍	1,423	244,110	0.59	68,945	2.04	0.58	2.06

자료: 미국조세협회(Tax Foundation) 2008~2010년 3개년 자료를 사용한 저자의 계산

또한 〈부록〉상의 〈부표 2〉~〈부표 4〉는 미국 내 군(county)별 중간주택 재산세액, 중간주택가격 대비 재산세 부담, 중간가구소득 대비 재산세 부담에 대한 순위를 매긴 후 상위 5개와 하위 5개 군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의 자가점유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군(county) 단위로 계산한 중간주택에 대한 연간 재산세액은 1,800여 군들이 매우 큰 편차를 보이는데, 절대금액 측면에서 뉴욕주 및 뉴저지주 내 소재하는 50만달러 안팎의 고가주택에 대한 연간 8,500~9,400달러의 부과액에 비해 루이지애나주 소

재 7만~9만달러짜리 주택에 대한 200여 달러의 부과액 간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둘째, 주택가격 대비 재산세 실효세율이 상위권에 있는 뉴욕주의 올린즈, 웨인, 나이아가라 등 군들은 주택가격의 2.9~3.4%에 달하는 실효세율을 보이지만 주택재산세 절대금액이나 가구소득 대비 재산세 부담 비율이 이에 상응하는 순위에 있지는 않다. 반면 하위 5개 군들은 루이지애나 군들과 하와이 군들에서 발견되는데 그 비율이 0.15~0.23%로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대비 주택보유세 비율인 0.18~0.20%보다도 낮았다. 하와이 2개 군의 경우 중간주택가격은 56만~61만달러에 달해 고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재산

세액이 1천달러 안팎이어서 미국의 주택재산세가 지방정부마다 다르다는 지방세적 특징을 결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셋째, 주택으로부터 명시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자가점유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부액을 중간가구소득으로 나눈 부담비율은 상위 5위 내에 뉴저지 및 뉴욕주 소재 군들이 포함되었는데 연간가구소득 10만 달러에 납부재산세액이 8천~9천달러에 달해 소득의 9% 가까이를 재산세로 내고 있었으나 중간주택가격이 50~60위나 100위권 밖이어서 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군들의 지방재산세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하위에 속한 5개 군은 모두 루이지애나주 소속으로 5만달러가 못되는 가구소득자들에 대해 8만달러 정도의 주택에 대해 200여 달러의 재산세액을 납부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주(state)단위로 살펴보면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3개 주(Tri-State)가 소득 대비 재산세부담이 5%를 넘어 높았으며, 주택가액 대비 주택재산세 실효세율은 이들 주 이외에도 뉴햄프셔 및 버몬트주를 포함하여 1.6~2.1% 범위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주정부는 주 내 지방정부(county, city, municipality, township)뿐만 아니라 교육구(school district)를 포함한 재산세 과세권자(local jurisdiction)의 세율을 최종적으로 입법을 통해 확정해 주면서 지방정부의 재산세 과세표준 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서 주와 지방정부 간 주택재산세를 통해 자치권을 통제하고 있다.

위의 결과를 우리나라 2011년 귀속 가계금융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노영훈(2012) 연구와 비교해 보자. 동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6,700여 주택 재산세 및 주택중부세 납부가구들을 1,200만원,

“  
**주택자산가액이 높은 가구들에 대해  
 납부보유세 평균세율이 증가하므로  
 누진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주택보유세는 역진적으로 나타난다.**  
 ”

2,400만원, 3,800만원, 6,000만원을 구분점으로 하는 소득 5분위별로 경상소득 대비 실효세부담을 계산한 결과 5.58%, 2.20%, 1.51%, 1.17%, 0.97%로 나타났다. 주택가액 대비 실효세율은 고소득분위로 올라갈수록 0.18~0.20%로 미약하게 상승하여 주택보유단계의 세부담이 역진적 또는 누진적인지에 대한 판단은 가구소득 대비인지, 주택가액 대비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주택자산가액이 높은 가구들에 대해 납부보유세 평균세율이 증가하므로 누진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주택보유세는 역진적으로 나타난다.

#### 나. 미국 지방재산세 시스템의 의미

올해로 35주년을 맞은 ‘캘리포니아 Proposition 13’을 통해 미국의 주택재산세 파동과 주와 지방정부 간 관계를 살펴보자.

1978년 지방정부의 재산세 인상을 제한하려는 조세저항 차원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발의된 Proposition 13은 ①지방정부가 재산세로 부과하는 증가세율은 시가(full cash value)의 1%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sup>7)</sup>과 ②부동산과표는 1975년 재산세 과세대장상의 과표액으로 고정되며 소유권이 바뀌거나 신축

7) Section 1. (a) The maximum amount of any ad valorem tax on real property shall not exceed one percent (1%) of the full cash value of such property. The one percent (1%) tax to be collected by the counties and apportioned according to law to the districts within the counties.

“  
**자주재원으로서의 지방세 과세결정권을  
 제약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상급정부가 부족한 재원을 보전해 주면서  
 세출권한까지 제약하게 되는  
 상황으로 진행하게 된다.**  
 ”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재산세 과표 인상을 2% 이내의 인플레이션으로 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캘리포니아주 헌법에 Proposition 13이 도입되었지만, 재정관계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지방 정부들을 주정부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묶어두게 되었다는 것이다. 지방정부를 주의회 대상 로비스트로 변신시켜 연례적인 예산편성 과정으로 끌어들이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원래 Proposition 13은 정부의 과세권 남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주민들에게 권력을 이동시키자는 취지에서 출발하였으나, 역설적이게도 재산세를 갖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의 지출권한까지도 지방정부에서 빼앗는 셈이 되어 버렸다. 과거에는 재산세 세부담이 높아도 얼마나 세부담을 인상할지 또는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해 적어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논의라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Proposition 13으로 주 내 지방정부들 간의 재산세 (세부담) 배분은 주지사나 주의회가 내리는 결정사항으로 되어버려 더 이상의 논의가 불가능해졌다.

또 한 가지 지방정부의 재정시스템과 토지이용계획 간에는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운영되고 있음이 나타나는 계기가 되었다. 1977년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승인한 결과 Proposition 13이 재산세율과 미래의 급격한 과표 인상을 제한하여 캘리포니아 지방정부들은 재산세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따라서 주택이나 산업용 토지 이용보다는 쇼핑센터나 매상세 (sales tax) 세수를 발생시키는 토지 용도들로 전환되

는 부동산 개발을 승인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한편 10여년 후 미 연방대법원은 1989년 Allegheny Pittsburgh Coal Co. v. County Commission of Webster County, West Virginia 판결에서, 군 정부가 새로 이사 온 Allegheny Pittsburgh 광산회사에 대해 재산세 과표를 새로 크게 인상하여 부과한 처분이 미 연방헌법 ‘동등보호’ 조문을 위반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다. 캘리포니아주가 주민투표로 도입한 주헌법 제13조 A가 전형적인 ‘Welcome Stranger clause’ 였는데 이에 대한 정반대 판결로서 주목을 받았다. 즉, 소유주가 바뀔 때에는 취득가액(acquisition value)을 일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주택가격 상승기에 이사하지 않고 오래 거주하는 자가점유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을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하면서, 새로 이주해 오는 이방인(stanger)에게는 재산세 부담을 급등시키는 ‘Welcome Stranger Clause’를 재해석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결국 미국 대법원이 확인한 것은 지방재산세는 시·군 같은 지방정부의 주요 세입원이기는 하나 주정부의 입법권하에서 세제가 결정되어야 하며 시·군단위 지방정부의 과표결정 권한은 주의 위임입법하에서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자주재원으로서의 지방세 과세결정권을 제약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상급정부가 부족한 재원을 보전해 주면서 세출권한까지 제약하게 되는 상황으로 진행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참여정부 때 재산세와 종부세로 부동산보유세에 대한 세원공유 현상이 발생하면서 총체적인 보유세부담을 늘리게 되는 상황에서도 중앙과 일부 지방정부 간 세수보전을 위해 부동산교부세를 활용한 경험이 있다.

### Ⅲ. 미국과 한국의 재산(보유)세와 거래세 조세정책의 차이

미국과 한국 모두 주택소유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했지만 미국은 보유단계 중 부담하는 지방재산세나 주택금융비용을 연방소득세 공제를 통해 개인소득세 한계세율을 적용한 만큼 낮추어주는 정책을 사용한다. 그 결과 연방소득세의 전반적인 한계세율 인하는 주택자본의 사용자비용(user cost)을 중간소득가구에 비해 고소득가구에 더 크게 인상시키지만 여전히 세후 사용자비용은 낮게 나타나 주택소유에 따른 세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상한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무주택자나 일정 면적 이하 1주택자에 한해 매우 제한적으로 납부이자액 공제만을 제한적으로 실시하여 차입비용공제를 엄격하게 제한한다는 차이가 있다.

그대신 우리나라는 거래단계 중의 주택취득세 감면이나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정책을 취하고 있어서, 정책당국이 주택시장(가격이나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수단의 실효성에 대한 미국과 한국 간의 판단이 다르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중앙정부인 연방이 주도하는 주택정책일 경우 연방소득세 내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라는 정책수단에 국한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주택정책이라 하더라도 국세인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광역세인 취득세도 정책수단화하는 경향이 있다. 세수손실을 중앙과 지방 간 재정조정제도를 통해 보전하는 정책수단은 한국과 미국의 중앙과 지방 간 재정관계의 차이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과거 경험을 살펴보면 거래단계에 관련되는 조세 중에서 한국은 가격상승기에 양도소득세를 주된 정책수단으로 사용했으며 가격하락/침체기에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를 모두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참여정부 때에는 처음으로 지방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

“  
우리나라는 무주택자나  
일정 면적 이하 1주택자에 한해  
매우 제한적으로 납부이자액 공제만을  
제한적으로 실시하여 차입비용공제를  
엄격하게 제한한다는 차이가 있다.  
”

세라는 보유세를 통해 가격안정을 꾀하기도 하였다. 반면 미국의 경우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연방소득세 세부담 변경을 1997년 TRA(Tax Reform Act)에 담아서 주택자가점유자의 주택양도차익을 부부합산 50만달러까지 비과세하게 되어 주택시장의 과열을 부추겼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미국은 2007년 Sub-prime 모기지사태 이후 이어진 세계금융위기 과정에서 중고주택시장의 가격 및 거래량 회복뿐만 아니라 경기부양정책의 일환으로 2008년의 주택 및 경기활성화법(The Housing and Economic Recovery Act)과 2009년의 미국 경기회복 및 투자촉진법(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을 시행하였다. 주 내용은 주거목적용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잔금청산일 기준 2010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8,000달러 한도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세액공제(First-Time Homebuyer Credit)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미국 역사상 최초로 주택구입자에 대한 거래비용을 보조하는 세제정책을 채택하였다.

원래는 7,500달러 상당액의 무이자 대출을 15년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제공하는 법안이었으나 미 의회가 상환의무 없는 1회성 8,000달러 세액공제로 변경하였다. 혜택규모는 40만달러 정도의 주택의 경우 매매가격의 2%에 달해 세후 정산비용(closing cost)을 7.2%에서 5.2%로 약 27.8%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sup>8)</sup> 결국 미국도 부시행정부 시절 검토되었다가 시행되지 못했던 것을 2008년에

“  
**미국과 우리나라 모두 극심한  
 주택거래 침체기에 모두 주택거래단계  
 거래세 부담 완화정책을 시행하였는데,  
 미국은 한시적으로  
 1년 반여 기간 동안 시행하였으며,  
 우리나라는 한시적이라고 발표된  
 50% 감면정책을 반복하거나  
 연장한 경험을 갖고 있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세액공제(First-Time Homebuyer Credit)를 시장대책으로 활용한 셈이다.

우리나라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거래과세 감면 대책들을 살펴보자. 2005년 개인 간 기존주택거래에 대해 등록세를 반감(3% → 1.5%)한 것을 시작으로, 2006년부터는 취득세도 반감(2% → 1%)하였다.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면서 폐지된 2011년 이후 정상법정세율인 4%를 적용했던 기간보다는 감면세율을 적용했던 기간이 훨씬 더 길다. 특히 2011년 3월 23일 이후 연말까지는 9억원 고가기준과 다주택기준, 그리고 2012년 9·10대책으로 9월 24일부터 2013년 3월 말까지는 9억, 12억원 가액기준과 다주택기준, 2013년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는 이들에 추가해서 생애최초구입자에게는 6억원 이하 1주택자에게 주택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결국 미국과 우리나라 모두 극심한 주택거래 침체기에 모두 주택거래단계 거래세 부담 완화정책을 시행하였는데, 미국은 한시적으로 1년 반여 기간 동안 시행하였으며, 우리나라는 한시적이라고 발표된 50% 감면정책을 반복하거나 연장한 경험을 갖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매수자의 취득세 50% 감면 이외에도 2013년 4·1대책에서는 과거의 미분양이나 신축주택에 국한하였던 양도세 5년간 감면정책을 기존주택에 대해서까지 확대하여 시행하여 사실상 거래단계에 개입되는 취득세, 양도세 수단이 모두 동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지방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에 대한 정책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결국 주택거래와 관련된 거래세 부담이나 관련 수수료 등 거래비용은 국가단위 또는 대도시 간 높고 낮다는 비교를 하기 매우 어렵다. 본문에서 제시한 주택자본의 사용자비용 정의 식들에 포함된 주택재산세 실효세율, 거래세율 등이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의 경우 지역별 차이가 매우 크고 주택자가점유자들이 직장 등의 이유로 인해 노동과 연계된 지역주택시장에 구속되어 주거서비스를 소비해야 하는 제약조건도 존재하므로 자본의 사용자비용에 기초한 조세정책의 주택시장 영향분석에 있어서 국제비교 또는 공간적 비교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주택취득세의 50% 감면 및 5년 양도차익 비과세정책이 주택매수 수요를 증대시켜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경로들을 판단해 보자. 자가점유를 목적으로 주택매수를 고려하고 있는 실수요자의 경우 충분히 가격이 하락한 후 향후 5년 내 양도차익이 집중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을 선택한다면, 주택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간을 활용하여 매수하여 세후투자수익률을 극대화하려는 행태를 기대할 수 있다. 만일 관심지역 내 매수 고려 중인 대상주택에 대한 추가적인 가격하락이나 가격회보 현상이 상당기간 예상된다면 양도차익 5년 비과세만으로는 당근책이 되기 힘들다. 양도소득세 혜택은 양

8) Section 1. (a) The maximum amount of any ad valorem tax on real property shall not exceed one percent (1%) of the full cash value of such property. The one percent (1%) tax to be collected by the counties and apportioned according to law to the districts within the counties.

도차익이 기대되는 경우에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을 뿐 양도손실이 예상되거나 양도차익이 0인 주택에 대해서는 매수 수요를 야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실거주 수요자로서 최근 전세보증금의 급등으로 무주택자에서 최초로 주택소유자가 되려는 세입자의 경우, 추가적인 가격하락은 없을 것으로, 즉 거의 최저점에 달한 가격조정이 이루어진 주택이라고 판단이 서면 양도소득세 혜택은 무시하더라도 주택취득세의 50% 감면 또는 생애최초구입에 대한 취득세 면제만으로도 매수 수요를 자극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인 주택매수로 다주택소유자가 되어 임대주택사업을 영위하려는 수요자의 경우, 관심대상 주택으로부터 5년 내 양도차익이 집중적으로 발생된다고 예상되더라도 투자수익률 중 임대수익 구성부분에 대한 소득과세의 불확실성 때문에 주저하게 될 요인이 존재한다. 즉, 3주택소유자가 되면 예외없이 전세로 임대한 경우라도 전세보증금 합계액에 대한 간주임대소득과세가 이루어지고, 고가주택을 구입한 경우라면 1주택소유자라도 월세임대에 대해서는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즉, 투자목적 주택수요자들에게는 투자수익을 구성하는 두 가지 큰 구성요소인 임대소득과 자본이득 중 전자에 대한 소득과세 불투명성과 후자의 불확실성 때문에 주택취득세만의 50% 세일 효과가 거래량을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하기는 무리라는 판단이다.


#### IV. 결론

본고에서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각종 조세정책 분석의 틀로 제시한 비연속 사용자비용모델을 통해 주택시장 회복기에 있는 미국과 침체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책당국이 고민하는 한국의 상황을 비교하여 주택관련 조세들의 정책세제로서의 실효성에 대해 살

“  
**양도소득세나 주택취득세 같은  
 거래단계에서 개입되는  
 조세들을 정책세제로 활용하고자라도  
 주택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유혹이 정책당국에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

펴보았다. 보유단계 재산보유세 세부담을, 미국의 경우에는 지방재산세 자주권 때문에 간섭할 수 없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고가나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 여론 때문에 완화하여 주택소유 사용자 비용을 낮추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나 주택취득세 같은 거래단계에서 개입되는 조세들을 정책세제로 활용하고자라도 주택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유혹이 정책당국에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양도소득세나 자본이득세의 경우, 주거서비스 수요를 자가점유를 통해 해결하려는 실수요자의 경우 이미 미국은 자본이득세를 사실상 면제한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추가하여 2008년 세법개정 이후 1세대1주택 고가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양도세 부담을 대폭 축소한 상황이므로 이들 계층에게 양도소득세가 당근책으로 작동될 여지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주택거래비용을 감소시키는 주택취득세 감면이나 일회성 주택구입 비용 세액공제만이 대안으로 남는 셈이며, 미국과 한국 모두 거래비용적 성격의 주택거래과세 세부담을 낮추려는 노력은 이미 기울인 상황이다. 다만 정책방법론에 있어서 미국은 연방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는 지방세인 주택취득세 세율을 인하하는 방식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만일 자가주택점유자에 국한하지 않고 투자 목적의 주택자산 구입을 염두에 둔 대상계층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나 보유세 부담 완화, 또한 임대주택소득세에 대한 세법규정 명확화로 수요를 제고시킬 여지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 〈참고문헌〉

노영훈, 『글로벌 금융위기와 주택시장: 조세 · 재정 정책적 함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11-04, 2011, 12.

\_\_\_\_\_, 『부유세와 종합부동산세: 부유세의 조세정책적 의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12-07, 2012, 12.

Burman, L. and Randolph, W., “Measuring Permanent Responses to Capital Gains Tax Changes in Panel Data,” *American Economic Review*, 84(4), 1998, pp. 794~809.

Dachis, B., Duranton, G and Turner, M.A., “The effects of land transfer taxes on real estate markets: Evidence from a natural experiment in Toronto,”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12, 2012, pp. 327~354.

Feldstein, M., Feenberg, D., MacGuineas, M., “Capping Individual Tax Expenditure Benefits,” NBER Working Paper No. 16921, April 2011.

Harris B., “Tax Reform, Transaction Costs, and Metropolitan Housing in the United States,” Working Paper(paper to be presented in 106th NTA conference), 2013.

Haveman M. and T. Sexton, *Property Tax Assessment Limits: Lessons from 30 Years of Experience*, Lincoln Institute of Land Policy, Policy Focus Report, 2008.

NYC Administrative Code, Local Law: Title 11, Chapter 21, Administrative Code, Enabling Act: Tax Law Section 1201(b).

Shan, H., The Effect of Capital Gains Taxation on Home Sale: Evidence from the Taxpayer Relief Act of 1997,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5(102), 2011, pp. 177~188.

미국조세협회(Tax Foundation) 홈페이지 (<http://taxfoundation.org/>)

<부록>

<부표 1> 2011년 가계금융조사기구의 소득분위별 주택 보유세 부담분포(공시가격비율 80%, 가중치 적용)

(단위: 가구, 만원, %)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표본수	가중평균	표본수	평균	표본수	평균	표본수	평균	표본수	평균	표본수	평균
	10,517		2,072		2,082		2,061		2,090		2,212	
주택재산세	6,694	18.51	1,070	8.10	1,066	12.44	1,229	15.04	1,488	18.63	1,841	31.02
지방교육세	6,694	3.70	1,070	1.62	1,066	2.49	1,229	3.01	1,488	3.73	1,841	6.20
재산세과세특례	6,694	16.41	1,070	8.46	1,066	12.20	1,229	13.98	1,488	17.18	1,841	24.98
지역차원시설세	6,642	13.74	1,035	7.77	1,054	10.68	1,225	11.73	1,488	14.18	1,840	20.20
재산세 + 지방교육세 + 재산세과세특례 + 지역차원시설세	6,694	52.26	1,070	25.68	1,066	37.69	1,229	43.74	1,488	53.71	1,841	82.39
증부세	255	95.00	8	68.25	14	68.02	23	137.70	52	72.42	158	99.61
농특세	255	19.00	8	13.65	14	13.60	23	27.54	52	14.48	158	19.92
증부세+농특세	255	114.00	8	81.90	14	81.62	23	165.23	52	86.91	158	119.53
보유세 전체	6,694	55.86	1,070	26.16	1,066	38.61	1,229	46.43	1,488	56.18	1,841	91.18
주택가액 대비 재산세	6,694	0.18	1,070	0.18	1,066	0.18	1,229	0.18	1,488	0.18	1,841	0.19
주택가액 대비 증부세	255	0.07	8	0.05	14	0.07	23	0.08	52	0.06	158	0.07
주택가액 대비 보유세	6,694	0.19	1,070	0.18	1,066	0.18	1,229	0.18	1,488	0.19	1,841	0.20
순자산 대비 증부세	255	0.08	8	0.07	14	0.09	23	0.09	52	0.07	158	0.07
순자산 대비 보유세	6,694	0.17	1,070	0.15	1,066	0.15	1,229	0.18	1,488	0.20	1,841	0.15
경상소득 대비 재산세	6,675	1.98	1,051	5.51	1,066	2.15	1,229	1.41	1,488	1.12	1,841	0.89
경상소득 대비 증부세	251	2.28	4	23.72	14	4.82	23	5.79	52	1.78	158	1.09
경상소득 대비 보유세	6,675	2.05	1,051	5.58	1,066	2.20	1,229	1.51	1,488	1.17	1,841	0.97

〈부표 2〉 미국 군(County)별 중간주택 재산세액: 상위 5개 및 하위 5개

주	군	중간재산세액	순위	중간주택가액	주택가액 대비 재산세율	순위	중간가구소득	가구소득 대비 재산세 부담	순위
뉴욕	웨스트체스터	\$9,424 +/- 140	1	\$546,900 +/- 6,269	1.72% +/- 0.03	196	\$110,211 +/- 1,823	8.55% +/- 0.19	4
뉴욕	니소	\$8,968 +/- 42	2	\$479,500 +/- 2,238	1.87% +/- 0.01	120	\$105,507 +/- 1,028	8.50% +/- 0.09	5
뉴저지	버겐	\$8,780 +/- 50	3	\$475,200 +/- 3,504	1.85% +/- 0.02	132	\$102,269 +/- 1,340	8.59% +/- 0.12	3
뉴욕	로크랜드	\$8,673 +/- 112	4	\$468,000 +/- 4,687	1.85% +/- 0.03	129	\$105,342 +/- 2,525	8.23% +/- 0.22	7
뉴저지	헌터돈	\$8,582 +/- 154	5	\$433,700 +/- 9,072	1.98% +/- 0.05	89	\$115,029 +/- 4,283	7.46% +/- 0.31	11
...	...	...	...	...	...	...	...	...	...
루이지애나	프랭클린 패리쉬	\$221 +/- 73	1829	\$76,700 +/- 8,029	0.29% +/- 0.10	1816	\$43,590 +/- 6,001	0.51% +/- 0.18	1828
루이지애나	버밀리온 패리쉬	\$218 +/- 39	1830	\$94,400 +/- 4,261	0.23% +/- 0.04	1830	\$48,002 +/- 3,420	0.45% +/- 0.09	1833
루이지애나	드 소토 패리쉬	\$217 +/- 60	1831	\$78,500 +/- 6,188	0.28% +/- 0.08	1822	\$46,304 +/- 4,600	0.47% +/- 0.14	1831
루이지애나	아이버빌 패리쉬	\$216 +/- 72	1832	\$82,600 +/- 6,302	0.26% +/- 0.09	1827	\$47,122 +/- 5,604	0.46% +/- 0.16	1832
루이지애나	세인트 랜드리 패리쉬	\$215 +/- 37	1833	\$81,300 +/- 2,701	0.26% +/- 0.05	1825	\$43,047 +/- 3,027	0.50% +/- 0.09	1829

자료: 미국 조세협회(Tax Foundation), 2008-2010년 미국 군별 지방재산세 세부담에서 발췌

〈부표 3〉 미국 군(County)별 중간주택가액 대비 재산세 부담순위: 상위 5개 및 하위 5개

주	군	중간재산세액	순위	중간주택가액	주택가액 대비 재산세율	순위	중간가구소득	가구소득 대비 재산세 부담	순위
뉴욕	올린즈	\$3,072 +/- 116	158	\$90,700 +/- 4,071	3.39% +/- 0.20	1	\$56,163 +/- 4,400	5.47% +/- 0.48	58
뉴욕	웨인	\$3,231 +/- 83	136	\$109,600 +/- 2,569	2.95% +/- 0.10	2	\$60,668 +/- 2,355	5.33% +/- 0.25	65
뉴욕	나이아가라	\$3,020 +/- 65	162	\$102,500 +/- 2,359	2.95% +/- 0.09	3	\$57,698 +/- 1,927	5.23% +/- 0.21	70
뉴욕	엘라게니	\$1,969 +/- 72	463	\$67,200 +/- 2,017	2.93% +/- 0.14	4	\$48,537 +/- 1,958	4.06% +/- 0.22	225
뉴욕	먼로	\$3,899 +/- 40	76	\$133,500 +/- 1,232	2.92% +/- 0.04	5	\$66,847 +/- 911	5.83% +/- 0.10	50
...	...	...	...	...	...	...	...	...	...
루이지애나	포인트 쿠페 패리쉬	\$269 +/- 58	1816	\$114,700 +/- 11,092	0.23% +/- 0.06	1829	\$47,176 +/- 5,101	0.57% +/- 0.14	1822
루이지애나	버밀리온 패리쉬	\$218 +/- 39	1830	\$94,400 +/- 4,261	0.23% +/- 0.04	1830	\$48,002 +/- 3,420	0.45% +/- 0.09	1833
하와이	하와이	\$737 +/- 39	1404	\$349,600 +/- 7,533	0.21% +/- 0.01	1831	\$60,913 +/- 2,259	1.21% +/- 0.08	1622
하와이	키와이	\$1,127 +/- 80	1046	\$561,800 +/- 23,891	0.20% +/- 0.02	1832	\$72,912 +/- 3,231	1.55% +/- 0.13	1394
하와이	마우이	\$936 +/- 72	1213	\$605,000 +/- 14,399	0.15% +/- 0.01	1833	\$78,422 +/- 3,216	1.19% +/- 0.10	16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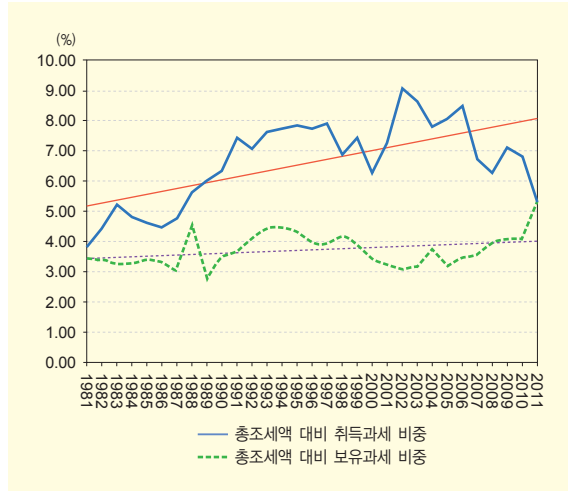
자료: 미국 조세협회(Tax Foundation), 2008-2010년 미국 군별 지방재산세 세부담에서 발췌

〈부표 4〉 미국 군(County)별 중간가구소득 대비 재산세 부담순위: 상위 5개 및 하위 5개

주	군	중간재산세액	순위	중간주택가격	주택가격 대비 재산세율	순위	중간가구소득	가구소득 대비 재산세 부담	순위
뉴저지	패세익	\$7,863 +/- 100	8	\$373,800 +/- 3,452	2.10% +/- 0.03	58	\$84,705 +/- 2,309	9.28% +/- 0.28	1
뉴저지	에섹스	\$8,344 +/- 78	6	\$389,100 +/- 3,996	2.14% +/- 0.03	50	\$95,309 +/- 1,727	8.75% +/- 0.18	2
뉴저지	버겐	\$8,780 +/- 50	3	\$475,200 +/- 3,504	1.85% +/- 0.02	132	\$102,289 +/- 1,340	8.59% +/- 0.12	3
뉴욕	웨스트체스터	\$9,424 +/- 140	1	\$546,900 +/- 6,269	1.72% +/- 0.03	195	\$110,211 +/- 1,823	8.55% +/- 0.19	4
뉴욕	나소	\$8,968 +/- 42	2	\$479,500 +/- 2,238	1.87% +/- 0.01	120	\$105,507 +/- 1,028	8.50% +/- 0.09	5
...	...	...	...	...	...	...	...	...	...
루이지애나	세인트 랜드리 페리쉬	\$215 +/- 37	1833	\$81,300 +/- 2,701	0.26% +/- 0.05	1825	\$43,047 +/- 3,027	0.50% +/- 0.09	1829
루이지애나	아카디아 페리쉬	\$228 +/- 37	1925	\$88,300 +/- 4,176	0.26% +/- 0.04	1828	\$48,151 +/- 3,965	0.47% +/- 0.09	1830
루이지애나	드 소토 페리쉬	\$217 +/- 60	1831	\$78,500 +/- 6,188	0.28% +/- 0.08	1822	\$46,304 +/- 4,600	0.47% +/- 0.14	1831
루이지애나	아이버밀 페리쉬	\$216 +/- 72	1832	\$82,600 +/- 6,302	0.26% +/- 0.09	1827	\$47,122 +/- 5,604	0.46% +/- 0.16	1832
루이지애나	버밀리온 페리쉬	\$218 +/- 39	1830	\$94,400 +/- 4,261	0.23% +/- 0.04	1830	\$48,002 +/- 3,420	0.45% +/- 0.09	1833

자료: 미국 조세협회(Tax Foundation), 2008~2010년 미국 군별 지방재산세 세부담에서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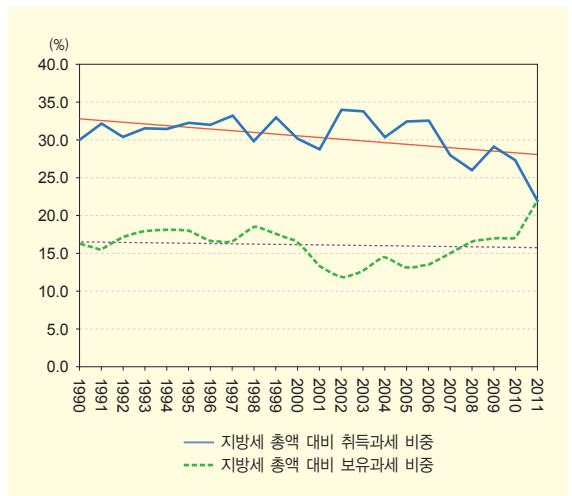
[부도 1] 부동산 취득 및 보유과세의 총조세액 대비 비중 추이(1981~2011)



$$\frac{\text{부동산취득과세액}}{\text{총조세액}} = \frac{\text{부동산취득과세액/지방세액}}{(\text{국세액} + \text{지방세액})/\text{지방세액}}$$

$$= \frac{\text{부동산취득과세액/지방세액}}{(\text{국세액}/\text{지방세액}) + 1}$$

[부도 2] 부동산 취득 및 보유과세의 지방세수 대비 비중 변화 추이(1990~2011)



# 에너지세제 개편 논의: 원자력과 전기 과세를 중심으로

## I. 서론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kheo@kipf.re.kr)

우리나라의 에너지세제는 에너지 상대가격을 조정하기 위해 2001년에서 2007년에 걸쳐 단행되었던 1·2차 에너지세제 개편 이후 큰 변동 없이 유지되어 왔다. 에너지세제와 관련하여 지난 정부에서 탄소세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졌으나 실제 에너지세제의 변화로 연결되지는 못하였다. 새 정부 들어서는 에너지세제 개편 논의가 다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탄소세 도입을 위한 법안(13.7)과 기후정의세(13.6) 법안이 발의 중이며, 최근 확정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과세와 프로판과 등유에 대한 세율 인하를 밝히고 있다(14.1).

이상과 같이 에너지세제 개편 논의가 활발해진 배경에는 현재의 에너지세제 체계가 에너지세제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선 수송용 석유류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비수송용 석유류와 유연탄, 무연탄, 원자력, 전기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에너지원 간 과세 형평성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과세하지 않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에너지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유지하게 되고, 따라서 자원배분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전기의 경우 물가안정을 위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장기 간 통제된 결과 전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최근 전기수급 부족 등의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에너지세제는 에너지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와 같은 사회적 비용이 세제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아 지속적인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본 원고에서는 에너지세제의 현황 및 이슈와 최근 에너지세제 개편 논의의 쟁점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해외의 에너지세제 구조와 동향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상황에 필요한 에너지세제 개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발전 연료 중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원자력과 전기에 대한 과세방안을 중심

으로 세제 현황과 이슈, 해외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 상황에 필요한 에너지세제 개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에너지세제 현황과 개편 논의의 쟁점

### 1. 에너지세제 현황

현행 에너지세제는 수송용 에너지의 상대가격 조정을 통한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한 1·2차 에너지세제개편을 거쳐 현재의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1차 에너지 세제 개편은 수송용 에너지의 적정소비 유도과 대기오염 개선을 목적으로 휘발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되던 경유와 LPG의 가격을 에너지세제

“  
**현행 에너지세제는 수송용 에너지의 상대가격 조정을 통한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한 1·2차 에너지세제 개편을 거쳐 현재의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

를 통해 인상하고자 하였다. 휘발유:경유:LPG의 상대 가격은 2000년 100:47:26이었으나 1차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인해 100:75:60으로 조정되었다. 2차 에너지세제 개편은 경유 승용차 시판 허용에 따른 경유 수요 급증과 대기오염 우려에 따라 경유의 상대가격을 인상하고자 시행되었으며 휘발유:경유:LPG의 상대 가격이 100:85:50이 되도록 목표치를 설정

〈표 1〉 에너지세제 및 관련 부과금 세율 현황(2013년 7월 기준)

관세	원유	휘발유 (원/l)	경유 (원/l)	LPG(원/kg)		LNG (원/m <sup>3</sup> )	등유 (원/l)	중유 (원/l)	유연탄 (원/kg)	무연탄	전력 (원/kwh)	에너지관련 회계/기금
				부탄	프로판							
관세	기본	3%	3%	3%	3%	3%	3%	3%	3%	0%	0%	-
	할당	-	-	-	-	-	-	-	-	-	-	-
개별소비세 (a)	기본	-	-	-	252	20	60	90	17	-	-	-
	탄력	-	-	-	275	-	-	-	-	-	-	-
교통에너지환경세 (b)	기본	-	475	340	-	-	-	-	-	-	-	교특(80%), 환특(15%), 예특(3%), 균특(2%)
	탄력	-	529	375	-	-	-	-	-	-	-	
교육세 (a, b×15%)	-	79	56	41	-	-	14	3	-	-	-	-
주행세 (a, b×26%)	-	138	98	-	-	-	-	-	-	-	-	-
부가가치세	10%										-	10%
수입부과금	-	16	16	-	-	19.6	16	16	-	-	-	에특
판매부과금	-	36 (고급)	-	62.28	-	-	-	-	-	-	-	-
안전관리부담금	-	-	-	4.5	4.5	3.8	-	-	-	-	-	-
품질검사수수료	-	0.47	0.47	0.03	0.03	-	0.47	0.47	-	-	-	-
전력산업기반기금	-	-	-	-	-	-	-	-	-	-	3.7%	전력산업기반기금

자료: 개별 세법, 허경선·성명재·김승래(2012)

“  
**에너지세제의 첫번째 이슈는  
 에너지원 간 조세 불균형이다.**  
**즉, 수송용 유류(휘발유, 경유)에는  
 높은 세율로 과세되는  
 반면 그 외의 유류에는 낮은 세율로 과세되고,  
 석탄류와 원자력, 전기에는 과세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

하였다(허경선 · 성명재 · 김승래 외, 2012). 이러한 에너지세제 개편은 수송용 연료 간의 상대가격 격차를 줄여 유종 간 자원배분의 왜곡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수송용 석유류에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와 수송용 석유류와 비수송용 에너지원 간의 격차를 크게 만드는 부가적인 효과를 발생시켰다.

현행 에너지세제의 구체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송용 석유류에 해당하는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서는 리터당 각각 529원과 375원의 소비세를 과세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등유나 중유에 대해서는 리터당 각각 90원과 17원을 과세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유연탄과 무연탄, 전기에 대해서는 소비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 또한 소비세에 대하여 부가세로 교육세와 주행분 자동차세(주행세)를 부과하고 있고 부가가치세와 각종 부담금 등으로 에너지세제는 다층적이고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원고에서 중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하는 전력 생산과 관련된 에너지원의 비율을 살펴보면 2012년 기준으로 전체 전력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유연탄 화력 발전이 40.2%로 가장 높고, 원자력 발전이 32%, 천연가스 및 복합 화력 발전이 20.7%, 석유류

가 2.1%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 중 비중이 가장 높은 유연탄과 원자력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천연가스와 석유류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전력 생산과 관련된 에너지원의 세제구조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은데, 개별소비세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와 원자력 관련 부담금이 유연탄, 원자력, LNG에 추가로 부과되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균형개발과 수질개선 및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의 자원과 시설에 과세되는 지방세이며 목적세이다. 과세대상으로는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 발전에 대해 과세하며 기존 수력발전소는 물 10m<sup>2</sup>당 2원, 원자력 발전은 1kWh당 0.5원을 부과한다. 2014년부터는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도 1kWh당 0.15원으로 과세할 계획이다. 원자력에 대해서는 사용후 핵연료관리 부담금,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부담금,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의 비용부담금의 세 가지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어 다른 에너지원과 달리 부담금이 집중되어 있다. 한편 전기에 대해서는 가격의 3.7%를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 2. 에너지세제의 이슈와 개편 논의의 쟁점

### 가. 에너지세제의 이슈

현행 에너지세제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첫 번째 이슈는 에너지원 간 조세 불균형이다. 즉, 수송용 유류(휘발유, 경유)에는 높은 세율로 과세되는 반면 그 외의 유류에는 낮은 세율로 과세되고, 석탄류와 원자력, 전기에는 과세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에너지과세를 위한 기준이나 원칙이 명확하지 않은 채로 정책목표에 따라 과세

〈표 2〉 전력생산 관련 에너지원과 에너지세제 구조

에너지세제 및 부담금		유연탄	원자력	LNG(원/m <sup>3</sup> )	전기(원/kwh)
개별소비세		-	-	60	-
지역자원시설세(지방세)		0.15원/kWh <sup>1)</sup>	0.5원/kWh <sup>1)</sup>	0.15원/kWh <sup>1)</sup>	-
부담금	전력산업기반금	-	-	-	3.7%
	사용후 핵연료관리 부담금	-	사용후 핵연료 처리 추정 비용 <sup>2)</sup>	-	-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비용 부담금	-	1.2원/kWh	-	-
	원자력관계 사업자 등의 비용 부담금	-	1기당 단가 <sup>3)</sup>	-	-
	수입부과금	-	-	19.6	-
안전관리 부담금		-	-	3.8	-

주: 1)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력발전소의 발전량('14년~), 원자력발전소의 발전량('06년~)에 대하여 부과

2) 다발당 추정비용\*(1+물가상승률)물가반영기간/(1+할인율)할인기간\*다발수.

- 추정비용('03년기준): 경수로(410,650천원/다발), 중수로(5,795천원/다발)

3) 기당단가(1,537백만원)\*운영 및 건설 중 원전 기수(30기), 기준단가(329,000원)\*투입인력(MD)

자료: 기획재정부, 『2012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대상과 세율이 결정되어 옴에 따라 에너지원의 과세가 일부 에너지원에 집중된 반면 일부 에너지원은 과세가 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에너지원 간 조세 불균형은 에너지 상대가격을 변동시켜 에너지원 간 소비대체 현상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즉, 에너지세제가 높게 부과되는 세원에 대해서는 상대가격이 높아져 소비가 감소하는 반면 에너지세제가 부과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유지하는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는 수송용 석유류에 대한 소비 억제와 유종 간 과도한 소비대체 현상을 완화하고자 한 1·2차 에너지세제 개편이 의도했던 효과이지만, 한편 소비세가 적용되지 않는 석탄류와 전기에 대해 필요 이상의 과소비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두 번째, 이러한 상대가격 차이로 인한 문제는 특히 전기의 경우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전기는 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요금에 대한 정부의 통제까지 더해져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2002~2011년 기간 중 경유, 등유 등 석

“  
2002~2011년 기간 중 경유, 등유 등 석유제품 가격은 각각 165%, 145% 상승한 반면 전기요금은 21% 상승에 그쳤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가격수준은 2차 에너지원인 전기가 1차 에너지원보다 낮은 왜곡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

유제품 가격은 각각 165%, 145% 상승한 반면 전기요금은 21% 상승에 그쳤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가격수준은 2차 에너지원인 전기가 1차 에너지원보다 낮은 왜곡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에너지 가격 수준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아래 <표 3>에서 보듯이 다른 에너지 가격은 OECD 평균과 비슷하거나 더 높지만 예외적으로 전기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가정용 54.4%, 산업용 54.3%)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산업용(2008~2009년)과 가정용(2008~2011년) 전기 가격이 OECD 회원국

“  
**에너지는 사용과정과 에너지 관련시설의  
 건설·운영 과정에서 대기오염을 비롯한  
 각종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고 지구온난화,  
 잠재적인 원자력 사고 위험 등의  
 다양한 외부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의 에너지 가격구조와 에너지세제에는  
 이러한 외부효과의 사회적 비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 수준이었다.

〈표 3〉 에너지 최종가격 비교 (OECD 평균 vs 한국)

에너지원	가정용 전기	산업용 전기	천연가스 (가정용)	천연가스 (산업용)	보통 휘발유	경유	경등유 (산업)
(단위)	(USD/ MWh)	(USD/ MWh)	(USD/ MWh)	(USD/ MWh)	USD/L	USD/L	USD/ 1000L
연도	2012	2009	2011	2011	2012	2012	2010
OECD 평균	171.2	106.5	61.1	29.4	1.089	1.579	680
한국	93.1	57.8	65.0	60.2	1.764	1.604	922.9
한국 에너지 가격 비율	54.4	54.3	106.4	204.8	162.0	101.6	135.7

자료: IEA, Energy Prices & Taxes, 2013 2thQ

이와 같이 전기의 가격이 왜곡됨으로써 에너지 대 체현상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며 최근 전기 수요가 급증하여 수급 위기까지 발생하고 있다.

에너지세제의 세 번째 이슈는 현 에너지세제 구조가 에너지 사용의 외부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에너지는 사용과정과 에너지 관련시설의 건설·운영 과정에서 대기오염을 비롯한 각종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고 지구온난화, 잠재적인 원자력 사고 위험 등의 다양한 외부효과가 발생하고 있

으나 현재의 에너지 가격구조와 에너지세제에는 이러한 외부효과의 사회적 비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외부효과를 내부화하기 위한 에너지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탄소세 도입 논의 등이 이러한 에너지 사용의 외부효과를 에너지세제에 반영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 나. 탄소세 도입 논의

이상 에너지세제의 이슈를 개선하기 위해서 에너지세제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 더 활발하게 에너지세제 개편이 언급되고 있다. 에너지세제 개편과 관련하여 지난 정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탄소세 도입에 대한 추진이다. 탄소세는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원에 대하여 탄소배출량에 따라 과세하는 것으로 1990년대 초부터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도입이 활성화되었다. 탄소세는 화석연료 사용 감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녹색산업으로의 투자 전환, 신재생에너지 증진을 위한 자원마련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원의 탄소 함유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탄소세를 녹색성장 국가전략 1차 5개년 계획 ('09~'13)의 주요 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하여 왔다. 탄소세 도입은 아직까지 실제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지만 2013년 들어 기후정의세와 탄소세 법안이 발의되면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2013년 5월에 발의된 기후정의세는 기존 탄소세 개념에 핵 연료세를 추가한 개념으로 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에 대해 탄소세 개념의 세금을 부과하고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도 과세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유류에 대한 과세와 더불어 그간 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던 유연탄과 무연탄에도 각각 9.9원/kg과 5.8원/kg를 과세하

고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에 대해 7.5원/kWh를 과세하도록 하였다.

〈표 4〉 2013년 기후정의세 법안의 적용 대상과 세율

에너지원	기후정의세 적용세율
유류	휘발유 13.4원/l, 경유 7.8원/l, 중유 19원/l 항공유 15.2원/l, 부탄가스 10.6원/l, 프로판가스 18.4원/l, 나프다 등 13.8원/l, 천연가스 8.8원/m <sup>3</sup>
석탄류	유연탄 9.9원/kg, 무연탄 5.8/kg
원자력 발전	핵발전으로 생산되는 전기 7.5원/kWh

자료: 박원석 의원실, 「기후정의세 법안」, 2013

기후정의세에 곧이어 발의된 탄소세 법안(13.7)은 탄소세 개념의 소비세를 유류와 석탄류, 전기에 과세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탄소세 법안은 기후정의세법안과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조세의 수용도를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부과 시기도 석탄류와 전기는 2016년과 2018년 이후로 제시하고 있다. 기후정의세법안과 탄소세법안의 한 가지 차이는 기후정의세의 경우 원자력 발전에 대한 과세만을 제안하는 데 반해 탄소세에서는 발전원과 상관없이 전기 전체에 대해 과세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5〉 2013년 탄소세 법안의 적용 대상과 세율

에너지원	기후정의세 적용세율
유류	휘발유 6.7원/l, 경유 8.2원/l, 등유 7.8원/l, 중유 9.5원/l 부탄가스 5.3원/l, 프로판가스 9.2원/kg 부생유 9.2원/l, 천연가스 8.8원/kg
석탄류	유연탄 3.3원/kg, 연탄, 무연탄 5.8/kg
전기	1.4원/kWh

자료: 심상정 의원실, 「탄소세 법안」, 2013

탄소세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라는 점과 에너지과세에 대해 탄소 함유량이라는 명확한 기

“  
전기요금에 대한 통제와 더불어  
발전연료 중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연탄과 원자력에 대한 비과세,  
전기에 대한 비과세가 전기의 상대가격을 낮게  
유지시킨 원인으로 지적이 되었다.”

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대대적인 에너지세제 개편에 대한 부담과 과세부담증가로 인한 산업계의 반대로 적극적인 입법화로 연결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 다. 발전연료 과세 논의

2013년 11월 정부에서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안을 발표하였고 2014년 1월에 확정된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발전용 유연탄에 kg당 24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것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발전연료에 대한 과세 논의는 최근의 전력수급 위기의 원인이 지나치게 낮은 전기요금과 높은 관련이 있다는 문제인식에서 시작한다. 전기요금에 대한 통제와 더불어 발전연료 중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연탄과 원자력에 대한 비과세, 전기에 대한 비과세가 전기의 상대가격을 낮게 유지시킨 원인으로 지적이 되었다. 따라서 에너지원 간 상대가격을 조정하고 에너지원 간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비과세되었던 발전연료의 과세를 확대하고 대신 전기 대체 에너지원인 LNG, 등유, 프로판의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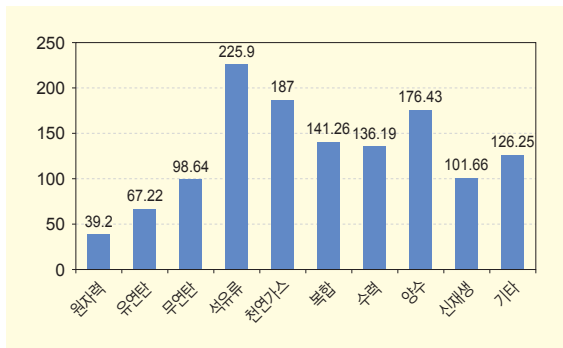
전력 생산을 위한 에너지원의 비율은 2012년 말 기준으로 유연탄 화력 발전이 40.2%로 가장 높고, 원자력 발전이 32%, 천연가스 및 복합 화력 발전이 20.7%, 석유류가 2.1%의 순이지만, 주요 에너지원별

“  
**발전연료 중 유연탄에 대해서만  
 과세를 확대할 경우  
 비과세로 남아 있는 원자력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며 원자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다.**  
 ”

발전 단가를 살펴보면, 원자력 39.2원/kWh, 유연탄 화력 발전 67.2원/kWh, 복합 화력 발전 141.26원/kWh, 천연가스 화력 발전 187.0원/kWh 등의 순서로 나타난다. 유연탄과 원자력은 전기 발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에너지원이지만 발전 단가가 매우 낮으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유연탄은 탄소배출과 대기오염을 많이 발생시키는 연료이므로 이러한 외부효과 비용이 내부화되어야 하며, 원자력의 경우 최근 원자력 발전의 안전관리에 대한 요청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안전관리와 위험 비용이 내부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림 1] 발전원별 평균 거래단가 ('12년 기준)

(단위: 원/kWh)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2012』

유연탄과 원자력에 대한 과세 논의는 앞서 설명한 기후정의세 법안과 탄소세 법안에서도 이미 제시되고

있으나 세제 개편의 필요 이유와 과세방법에 있어서는 각각 다른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기후정의세 법안과 탄소세 법안은 지구온난화라는 외부효과를 교정하기 위한 외부비용의 내부화를 위해 탄소배출 에너지원에 과세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기후정의세 법안의 원자력 과세는 원자력 발전의 잠재적 위험비용을 조세의 방법으로 내부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발전연료 과세논의는 왜곡된 에너지원의 가격과 조세구조를 합리화하여 장기적으로 초과수요가 발생하는 전기에 대한 수요를 안정화하는 것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발전연료 과세논의는 발전용 유연탄에 대해 개별 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과세방법과 세율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같은 선상에서 계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것은 여전히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원자력과 전기에 대한 과세 문제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않고 있다. 발전연료 중 유연탄에 대해서만 과세를 확대할 경우 비과세로 남아 있는 원자력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며 원자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원고에서는 원자력과 전기에 대한 다양한 과세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의 에너지원 과세 현황을 원자력과 전기 중심으로 살펴보고 발전용 연료와 전기에 대한 과세 시나리오를 다음 장에서 제안해 보고자 한다.

### Ⅲ. 에너지세제 해외 사례- 원자력과 전력 과세

#### 1. 원자력 과세

해외에서 원자력에 대한 과세는 대다수의 OECD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일본의 핵연료세와 독일의 원전연료세(nuclear fuel rod tax)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은 국세인 전원개발촉진세에서 전력에 대해 과세하고 있으며 지방세인 핵연료세 및 사용후핵연료세에서 지역에 위치한 원자력발전소의 핵연료 사용량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다. 핵연료세는 1976년 후쿠이현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2012년 현재 13개 도부현에서 핵연료세, 핵연료물질등취급세로 부과하고 있으며 2개 시에서는 별도로 사용후

〈표 6〉 일본의 핵연료세 개요 (2012년 4월 기준)

과세종목	지자체	최초 과세연도(세율)	세율	비고
핵연료세	후쿠이	1976 (5%)	① 핵연료가격의 8.5% ② 45,750엔/천kW(3개월간)	2011년부터 원자로 설치·운영에 대해 과세함
	후쿠시마	1977 (5%)	증가할 10%, 종량할 8,000엔/kg	
	에히메	1979 (5%)	핵연료가격의 13%	
	사가	1979 (5%)	핵연료가격의 13%	
	시마네	1980 (5%)	핵연료가격의 13%	
	시즈오카	1980 (5%)	핵연료가격의 13%	
	가고시마	1973 (7%)	핵연료가격의 12%	
	미야기	1983 (7%)	핵연료가격의 12%	
	니이가타	1984 (7%)	핵연료가격의 14.5%	
	홋카이도	1988 (7%)	핵연료가격의 12%	
이시카와	1992 (7%)	핵연료가격의 12%		
핵연료등취급세	이바라기	1978 (5%)	① 핵연료가액의 13%	1999년부터 핵연료세에서 핵연료등취급세로 변경하면서 과세대상을 4개로 확대, 2011년부터 6개로 확대함
			② 46,000엔/kg	
			③ 1,219,000엔/㎡	
			④ 1,219,000엔/本	
			⑤ 81,100엔/㎡	
			⑥ 3,900엔/㎡	
	아오모리	2004 (10%) (당면 12%)	① 19,100엔/kg	2004년 4개 과세대상으로 출발, 현재 7개로 확대함
			② 9,000엔/천kW(3개월간)	
			③ 핵연료가액 13%	
			④ 19,400엔/kg	
			⑤ 1,300엔/kg(8,300엔/kg)	
			⑥ 27,500엔/㎡	
			⑦ 845,400엔/本	

출처: 日本總務省, 「地方稅の概要」, <http://mext-atm.jst.go.jp/atomica>; 최병호·이근재(2013), p.64에서 재인용

“  
**전력에 대한 소비세는 가정용과 산업용을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국가에서  
 산업용 전기에 대해 가정용 전기보다 낮은  
 소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

핵연료세를 부과하고 있다(최병호 외, 2013). 핵연료세와 관련세의 도입 취지는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 대해 생활환경의 정비나 민생 안정대책 비용을 확보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핵연료세가 도입되던 1970년대 후반에는 세율이 핵연료가격의 5% 정도였으나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12년에는 핵연료가격의 8.5%에서 13%의 세율로 부과되고 있다.

독일의 원전연료세 (nuclear fuel rod tax)는 독일의 원자력 발전소 폐쇄정책의 변화로 인해 도입되었다. 독일은 2022년까지 원자력 발전소 17기를 완전히 폐쇄한다는 정책을 고수하였으나 2010년 이러한 방침을 바꿔 원전 17기의 폐쇄시기를 평균 12년 연장하는 대신 원전연료세를 납부하도록 하였다. 원전연료세는 2011년 1월부터 부과되어 왔으며, 원자로에 장전된 핵연료를 과세대상으로 부과하였다. 구체적으로, 독일 내 원자로에서 사용되는 핵연료 중 핵분열성 우라늄 1그램당 145유로(196달러)로 원전연료세를 과세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독일 원자력 발전사업자가 여러 독일 법원들에 원전연료세의 합법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납부액의 환불을 요청하고 있으며 현재 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3; 한국원자력산업회의 2010).

2. 전력 과세

OECD 회원국의 대부분에서는 전력에 대해 소비

세를 부과하고 있다. 전력에 대한 소비세는 가정용과 산업용을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국가에서 산업용 전기에 대해 가정용 전기보다 낮은 소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 일본, 폴란드, 스위스 등과 같이 가정용과 산업용 전기에 대해 비슷한 세율을 적용하거나 반대로 헝가리, 이탈리아, 네덜란드처럼 산업용 전기에 더 높은 소비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도 있다.

〈표 7〉 해외의 전력 과세 현황 (2013년 기준)

호 주	가정용 전기		산업용 전기
	부가가치세 (VAT) (%) <sup>1)</sup>	소비세 (Excise tax) 금액 <sup>2)</sup> (\$/MWh)	소비세 (Excise tax) 금액 <sup>2)</sup> (\$/MWh)
오스트리아	20	34.41	..
벨기에	21	20.60	16.82
캐나다	..	..	..
칠레	19	-	-
체코	21	1.52	1.43
덴마크	25	143.41	6.12
에스토니아	20	18.51	16.56
핀란드	23	22.20	9.17
프랑스	17.7	32.62	22.75
독일	19	106.52	46.81
그리스	13	23.86	23.86
헝가리	27	6.44	7.74
아일랜드	13.5	-	-
이스라엘	17	-	-
이탈리아	10	73.73	109.18
일본	5	3.79	3.79
대한민국	..	..	..
룩셈부르크	6	17.21	5.61
멕시코	16	-	-
네덜란드	21	10.16	12.26
뉴질랜드	15	-	-
노르웨이	25	20.01	-

〈표 7〉의 계속

	가정용 전기		산업용 전기
	부가가치세(VAT) (%) <sup>1)</sup>	소비세(Excise tax) 금액 <sup>2)</sup> (\$/MWh)	소비세(Excise tax) 금액 <sup>2)</sup> (\$/MWh)
폴란드	23	6.24	6.24
포르투갈	23	-	-
슬로바키아	20	-	-
슬로베니아	20	18.12	14.85
스페인	21	11.41	6.78
스웨덴	25	41.93	0.65
스위스	8	4.76	4.76
터키	18	12.44	4.98
영국	5	-	4.17
미국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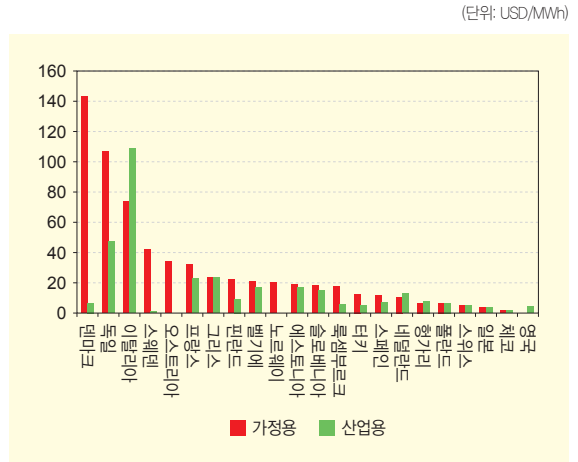
주: 위의 세율은 가장 최근 자료이며, 굵게 표기된 수치는 이전 분기 출판 이후 변경된 것임(· 자료 없음; × 해당 없음; - 없음; c 비공개)

- 1) 캐나다, 뉴질랜드의 상품·서비스세(GST, Goods and Service Tax); 일본의 소비세(consumption tax)
- 2) 자국화폐 단위로 표기된 금액을 부록의 환율을 이용하여 달러로 변환했음. 소비세(Excises tax)는 부가가치세(VAT)를 제외한 에너지에 부과된 모든 세금을 포함함.

자료: IEA, *Energy Prices and Taxes*, 2013, 2thQ

전기 소비세에 대한 세율은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력에 부과하는 소비세의 세율은 1.52~143.41USD/MWh로 분포되어 있으며 대부분 30USD/MWh 이하로 과세하고 있다. 덴마크의 가정용 전기에는 143.41USD/MWh, 이탈리아의 산업용 전기는 109.18USD/MWh, 독일의 가정용 전기는 106.52USD/MWh의 높은 세율로 부과되고 있고 이후 스웨덴, 오스트리아, 프랑스의 순으로 전기 소비세의 세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2] 해외의 가정용과 산업용 전기에 대한 소비세 (2013년 기준)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2012』

### 3. 시사점

해외의 에너지세제 사례에서 보듯이 일부 국가에서 원자력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방세(일본)이거나 논란의 여지(독일)를 가지고 있어 원자력에 대해 안정적인 과세 모델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다만 원자력과 관련된 외부비용에 대한 내부화(일본)나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위주의 에너지정책 추진에 필요한 자원마련(독일)을 달성하기 위해 원자력 연료에 직접 과세하는 방안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전력에 대한 소비세는 OECD 회원국 대부분에서 과세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력에 대한 과세는 최종소비물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소비세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발전 연료 과세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발전 관련 에너지원의 세제 구조도 최종 산출물인 전기에 대해 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전기의 상대요금이 전기에 대한 수요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만큼 조정되려면 전기에 대한 조세정책을 통해 가격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

#### IV. 에너지세제 개편 시나리오: 원자력과 전기를 중심으로

##### 1. 에너지세제 개편의 필요성

앞서의 논의와 해외의 에너지세제를 검토한 결과, 에너지원 간 과세 형평성과 전기가격의 합리화, 에너지의 외부비용 내부화를 위해서는 전력 관련 에너지원에 대한 세제 개편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전기와 관련하여 왜곡된 에너지 가격 구조 합리화를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인상하거나 조세제도를 활용하여 직·간접적으로 전기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 즉 전기요금이 충분히 원가를 반영하도록 인상하거나 전기에 대한 에너지 소비세의 직접 과세, 또는 전기의 발전 연료에 대한 과세를 통해 간접적인 전기 가격 인상을 추진하는 방법이다. 전기요금은 지난 정부에서 물가안정을 위한 요금통제로 2012년 말 기준 원가 보상률이 88.4%에 그쳐 전기 생산 원가가 요금 수입보다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1년 8월에 4.9%, 2011년 12월에 4.5%, 2012년 8월에 4.9%, 2013년 1월 4.0%, 2013년 11월 5.4% 등 최근 3년간 다섯 차례에 걸친 전기요금 인상이 이루어져 원가보상률은 상당 수준 상승하였고 2013년 한국전력공사는 6년 만에 흑자를 기록하였다. 전기요금 산정기준이 전기의 생산 및 공급에 소요되는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기요금의 추가인상 여력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전기의 상대요금이 전기에 대한 수요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만큼 조정되려면 전기에 대한 조세정책을 통해 가격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전기에 대한 직접 과세는 전기에 대해 직접 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직접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전기에 대한 간접 과세는 발전연료로 사용되는 에너지원에 소비세를 과세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세제 체계를 고려하면 현재 소비세가 과세되고 발전 비중이 높은 유연탄과 원자력에 대한 과세를 고려할 수 있다. 유연탄에 대해서는 OECD 회원국의 상당수가 소비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원자력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일본과 독일 등의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원고에서는 발전용 유연탄 과세가 가시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원자력에 대한 과세방안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장기적인 에너지세제 개편방안으로 전기에 대한 직접 과세 방안에 대해 다음 장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 2. 에너지세제 개편안

###### 가. 원자력 과세 방안

원자력 발전에 대해 과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는데, 첫째, 발전원료인 우라늄에 대해 직접 과세하는 방법과 둘째,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에 대해 과세하는 방법이다. 원자력 발전용 우라늄에 대해 직접 과세하는 경우 평균 수입단가의 일정 비율을 세율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우라늄의 2011년 평균 수입단가인 985,750원/kg의 20%를 세율로 설정한다면, 우라늄에 대한 세율은 197,150원/kg이 될 것이다. 우라늄

수입단가의 40%, 60%, 80%, 100%로 세율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세율은 각각 394,300원/kg, 591,450원/kg, 788,600원/kg, 985,750원/kg로 점차 올라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 비용에서 원료인 우라늄의 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중(10.2%)<sup>1)</sup>이 크지 않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 과세를 통한 전기가격의 실질적인 상승이 이루어지도록 우라늄에 대한 세율을 설정하려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세율을 설정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독일의 원전연료세의 경우 연료 1g당 196달러를 부과하고 있어 환산할 경우 아래 세율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세율이 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원자력 발전용 우라늄에 대한 직접 과세 시나리오 (2011년 기준)

(단위: (수입량) 톤, (수입액) 백만 원 (단가, 세율) 원/kg)

수입량	수입액	평균 수입단가	세율
907	894,075	985,750	(수입단가의 20%) 197,150
			(수입단가의 40%) 394,300
			(수입단가의 60%) 591,450
			(수입단가의 80%) 788,600
			(수입단가의 100%) 985,750

주: 2011년 수입액 8억 7백만달러를 연평균환율 1,107.9원/달러로 환산  
 자료: 『에너지통계연보 2012』

원자력에 과세하는 두 번째 방법은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에 대해 직접 과세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유연탄 과세(안)에서 제시되는 세율을 기준으로 하여 열량 기준으로 전력의 세율을 결정할 수 있다. 유연탄의 세율은 기본적으로 LNG의 열량 기준 세율을 적용하여 설정되었으며,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유연탄 세율 24원/kg을 전력에 적용하면 8.8원/kWh의 세율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탄력세율을 적용한 초기의 유연탄의 세율 18원/kg을 전력에 적용하면 6.6원/kWh의 전력 세율을 구할 수 있다. 이상의 유연탄과 원자력 발전의 세율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  
**원자력 발전에 대해 과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는데, 첫째, 발전원료인 우라늄에 대해 직접 과세하는 방법과 둘째,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에 대해 과세하는 방법이다.**  
 ”

가지로 탄력세율을 적용한 초기의 유연탄의 세율 18원/kg을 전력에 적용하면 6.6원/kWh의 전력 세율을 구할 수 있다. 이상의 유연탄과 원자력 발전의 세율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9〉 유연탄과 원자력의 개별 소비세 세율(안)

	유연탄*	원자력 발전
기본 세율	24원/kg	8.8원/kWh
탄력 세율	18원/kg	6.6원/kWh

주: \* 유연탄의 개별 소비세 세율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14.1)의 세율안을 적용

### 나. 전력 과세 방안 및 에너지세제 개편안

전력에 대한 과세는 전력에 대해 직접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전력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직접 부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번째는 이중과세의 우려이다. 발전연료에 이미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면 최종산출물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력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할 경우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환급되거나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고려사항은 세율의 결정

1) 고경민 · 정병진, 2012

“  
**에너지세제 개편 시나리오의  
 A안은 유연탄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안이고,  
 B안은 발전연료인  
 유연탄과 원자력에 대해 개별소비세 과세,  
 C안은 전기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직접 과세하고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환급하는 방안이다.**  
 ”

방법이다. 전력의 개별소비세 세율의 결정에 다양한 기준을 활용할 수 있지만, 본 원고에서 전력세의 세율은 발전연료에 각각 개별소비세를 부과했을 때와 동일한 전기가격 조정효과가 발생하도록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유연탄과 원자력에 기본세율과 탄력세율로 부과된 개별소비세의 세율과 LNG의 개별소비세(60원/kg)의 전체 합을 전력세의 세율로 설정하였다. 유연탄과 원자력의 기본세율을 적용할 때 전력의 개별소비세율은 8.64원/kWh로 산출되었고 탄력세율을 적용하였을 때는 6.96원/kWh로 산출되었다.

이상 논의된 원자력발전 과세안과 전력과세안을 종합하여 아래 표와 같이 에너지세제개편 시나리오를 작성해 보았다. A안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유연탄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안이고, B안은 발전연료인 유연탄과 원자력에 대해 개별소비세 과세, C안은 전기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직접 과세하고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환급하는 방안이다.

- ◆ (시나리오 A1) 유연탄에 개별소비세를 과세, LNG 개별소비세 인하 (60원/kg → 42원/kg)
  - A1은 유연탄에 기본세율 24원/kg으로 과세
  - A2는 유연탄에 탄력세율 18원/kg으로 과세
- ◆ (시나리오 B) A안에 추가적으로 원자력발전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8.8원/kWh으로 부과, LNG 개별소비세 인하 (60원/kg → 42원/kg)
  - B1은 유연탄과 원자력 발전의 세율을 기본 세율인 24원/kg과 8.8원/kWh으로 각각 부과
  - B2는 유연탄과 원자력 발전의 세율을 탄력 세율인 18원/kg과 6.6원/kWh으로 각각 부과
- ◆ (시나리오 C) 전기에 대해 직접과세하고 발전연료에 대한 소비세 환급/비과세 실시
  - C1은 유연탄, 원자력 발전의 기본세율에 해당하는 전력세율 8.64원/kWh 부과
  - C1은 유연탄, 원자력 발전의 탄력세율에 해당하는 전력세율 6.96원/kWh 부과

이상의 시나리오를 종합하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각각의 시나리오를 적용했을 때 발생하는 전력거래단가의 변동분은 유연탄에만 개별소비세를 추가한 시나리오 A의 경우 2.7~3.8%가 인상되고, 유연탄과 원자력에 동시에 개별소비세를 추가한 시나리오 B의 경우 전력거래단가의 4.9~6.8%가 인상된다. 한편 전기에 대해 과세하고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전부 환급/비과세한 경우에는 전력거래단가가 5.6~7.4%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에너지세제 개편안 시나리오와 전력거래단가 변동

	발전연료			전기 소비세	전력거래 단가 변동분
	유연탄	원자력	LNG		
현행	--	--	60원/kg	--	--
A1. 발전연료-유연탄 기본 과세	24원/kg		42원/kg	--	3.43/kWh (3.8%)
A2. 발전연료-유연탄 탄력세율 과세	18원/kg	--	42원/kg	--	2.42/kWh (2.7%)
B1. 발전연료-기본	24원/kg	8.8원 /kWh	42원/kg	--	6.10/kWh (6.8%)
B2. 발전연료-탄력	18원/kg	6.6원 /kWh	42원/kg	--	4.43/kWh (4.9%)
C1. 전기과세-기본	---*	---*	---	8.64원 /kWh	6.69/kWh (7.4%)
C2. 전기과세-탄력	--*	---	---	6.96원 /kWh	5.01/kWh (5.6%)

주: \* 발전용 유연탄과 원자력은 개별소비세 비과세, 발전용 LNG는 환급  
 자료: 2012년 에너지통계연보

#### 다. 시나리오별 장단점

발전연료와 전기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각각의 시나리오는 연료와 전기에 대한 과세 형태와 세율에 따라 각기 다른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장단점에 차이가 있다. 발전연료인 유연탄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시나리오 A는 비과세되던 유연탄에 과세함으로써 발전연료 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탄력세율로 과세할 경우(시나리오 A2)에 적용되는 세율도 낮고 전력거래단가의 인상분도 3.7%로 가장 낮아 조세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환경비용이 높은 유연탄에 직접 과세하여 유연탄의 사회적 비용을 내부화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발전 비중의 32%를 차지하는 원자력은 여전히 비과세되고 있어 발전연료 간 과세 형평성 이슈가 남아 있고, 유연탄에만 과세하

“  
 발전연료인 유연탄과 원자력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시나리오 B는 발전연료에  
 모두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에너지원 간 조세형평성은  
 매우 크게 제고된다는 장점이 있다.  
 ”

는 것이 오히려 원자력에 대한 상대적인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발전연료의 과세를 통한 전기요금의 간접적인 인상이기 때문에 전기의 최종가격 인상폭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단점이 있다.

발전연료인 유연탄과 원자력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시나리오 B는 발전연료에 모두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에너지원 간 조세형평성은 매우 크게 제고된다는 장점이 있다. 전력거래단가 인상폭이 커지게 되어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인한 전기사용 억제효과가 높아질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 산업계의 부담과 물가인상의 우려 등으로 인해 조세 저항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발전연료의 과세를 통한 전기요금의 간접적인 인상이기 때문에 전기의 최종가격 인상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전기에 개별소비세를 직접 과세하는 시나리오 C는 에너지원 간 조세 형평성 이슈에 있어서 발전 에너지원에 모두 과세하지 않거나 환급함으로써 발전 에너지원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전기에 소비세를 직접 과세하는 해외의 에너지세제의 경향과 동일한 방향이기도 하다. 또한 발전연료의 과세를 통한 간접적인 효과와 다르게 전기의 가격을 높이는 데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전기에 대한 단일세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다는 측면에서 전기 가격 인상으로 인

“  
**장기적인 관점과 해외 동향을 살펴보았을 때  
 발전연료에 각각 과세하는 것보다는  
 전력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 발전연료 간 조세형평성과  
 전기 가격 조정에 대한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더욱 큰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해 조세 수용도가 낮게 나타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게다가 최근 3년간 5번의 전기요금 인상이 있었고 추가적인 요금 인상이 전망되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적인 전기 과세가 이루어진다면 원가 인상과 물가 인상을 우려하는 산업계와 국민의 반대가 발전연료 과세보다 더욱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보면,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각각의 효과 중에서 발전원 간 형평성과 전기요금 조정효과, 신규과세 수용성 측면에서는 유연탄과 원자력에 낮은 세율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시나리오 B2가 가장 폭넓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과 해외 동향을 살펴보았을 때 발전연료에 각각 과세하는 것보다는 전력에 대해 낮은 탄력세율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시나리오 C2가 발전원 간 조세형평성과 전기가격 조정에 대한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V. 시사점 및 결론


본고에서는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는 발전연료 과세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세계 개편과 관련하여 이슈와 쟁점을 살펴보고 향후 에너지세계 개편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 에너지세계의

이슈를 살펴보고 해외의 에너지세계 중에서 특히 원자력과 전기에 관련된 소비세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에너지세계는 수송용 석유류에 세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과세되는 반면 다른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비과세되거나 낮게 과세되어 에너지원 간 과세 형평성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기에 대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초과수요 발생으로 수급부족이라는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원의 사용에 따른 외부효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슈가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이슈를 개선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현재 논의되는 에너지세계 개편방안과 해외사례를 검토하여 에너지세계 개편방안을 마련하였고 특히 원자력과 전기에 대한 과세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각각의 에너지세계 개편방안에 대한 장단점을 살펴본 결과,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발전용 유연탄과 원자력에 낮은 탄력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이 발전연료 간 조세 형평성과 조세 수용성 측면에서 가장 폭넓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과 해외 동향을 살펴보았을 때 발전연료에 각각 과세하는 것보다는 전력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 발전연료 간 조세형평성과 전기 가격 조정에 대한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더욱 큰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원고의 분석은 에너지세계 중에서도 발전과 관련된 유연탄과 원자력, 전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상의 개편안은 그간 이슈가 되었던 에너지원 간 조세 불균형을 개선하고 전기 가격의 조정을 통해 전기 가격을 합리화하여 자원배분의 왜곡문제를 개선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 이용에 따른 외부효과가 내부화되어 에너지 이용에 대한 비용을 현실화할 수 있다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원고의 분석은 함께 논의해야 할 수송용

석유류를 포함한 유류세의 조정, 발전 에너지원 관련 다양한 부담금(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사용후 핵연료관리 부담금, 원자력 연구개발사업 비용부담금, 원자력 관계사업자 등의 비용부담금)의 운용방안, 발전소 등에 부과되는 지방자원시설세 등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과세대상 확대에 대한 조세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과세부담 집중 대상에 대한 지원정책과 다른 에너지원에 대한 세율 인하 등과 같이 과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 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나 본고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지면상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했다. 에너지세제 개편방안이 더욱 현실성 있게 논의되고 이에 대한 수용도 제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석유류를 포함한 다른 에너지원에 대한 세제 조정과 각종 부담금의 조정, 과세부담 집중 대상에 대한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 차후에 이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중기에너지수요전망(2012-2017)』, 2013.6.  
 에너지정의행동·박원석 의원실, 「일본의 핵연료세·사용후 핵연료세 현황과 시사점」, 2013.1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독일법원, 유럽 사법재판소에 원전 연료세에 대한 예비판결 요청」, 『글로벌동향브리핑』, 2013. 12.6.  
 한국원자력산업회의, 「독일의회, 원전 연장운전 위한 탈원자력정책 개정안 가결」, 해외동향, 2010.11.  
 현대경제연구원, 「원전의 '드러나지 않는 비용」, 현대경제연구원 현안과 과제, 2012.

International Energy Agency, *Energy Prices and Taxes*, 2th Quarter 2013.

## 〈참고문헌〉

- 고경민·정범진, 「원자력의 경제성: 쟁점 검토와 해결 과제」, 『에너지경제연구』, 제 11권 제2호, 2012.9.  
 최병호·이근재·김필현, 『사용후핵연료 저장에 대한 지방세 과세 가능성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3.11.  
 허경선·성명재·김승래, 『친환경에너지세제 개편을 위한 주요 쟁점 분석 및 세입·세출 개선방안 수립 연구』, 녹색성장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2012.2.  
 기획재정부, 『2012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2013.  
 에너지경제연구원, 『2012년 에너지통계연보』, 2013.



# 주요국의 조세 · 재정동향

---

\* 이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의 「주요국의 조세동향」과 재정지출분석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재정동향」 자료를 요약 ·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 주요국의 조세동향

### 동향 14-01

#### 요약

- 프랑스는 2013년 12월 7일 반조세회피 조치에 포함된 대기업의 이전가격 보고의무 강화와 관련한 세부규정을 공포함
  - 이전가격 보고의무대상 기업, 보고내용, 제출기한과 미제출 가산세에 관한 내용임
- 이탈리아 정부는 개정세법을 2013년 12월 23일 의회 승인 후, 12월 27일 관보에 게재함
  - 이번 개정세법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개정세법에는 디지털세 부과,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APA) 적용대상 및 적용기간 확대, 임대 수입 양성화 방안이 포함됨
- 핀란드 정부는 2013년 12월 20일에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법인세 인하와 배당소득 과세체계 개정이 주요 내용임
  - 세법 개정안은 2014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며, 경제 활성화와 동시에 조세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중국 재무부와 국가세무총국은 2013년 12월 13일

증치세 적용에 관한 재세 106호 통지를 발표함

- 철도운송과 우편서비스에 대해 세율 11%를 적용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과세함
- 수출되는 용역대상인 연구개발, 설계, 항해용선, 정기용선, 포괄임대의 용역에 관한 증치세 지침을 수정함

- 싱가포르 과세당국(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은 부동산투자회사(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REITs)에 대한 과세를 명확히 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함
- 인도 직접세중앙위원회(Central Board of Direct Taxes: CBDT)는 2013년 12월 20일 세이프하버 룰의 집행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서한을 조사관들(assessing officers)에게 전달함
- 인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의 경제사무부(Department of Economic Affairs: DEA)는 모든 국외간접투자자(Foreign Portfolio Investors: FPIs)에게 동일하게 과세할 예정이라고 밝힘

#### 1. 프랑스의 대기업 이전가격 보고의무 강화<sup>1)</sup>

- 프랑스는 2013년 12월 7일 반조세회피 조치<sup>2)</sup>에 포함된 대기업의 이전가격 보고의무 강화와 관련한 세부규정을 공포함

1) IBFD, *Transfer pricing: New documentation requirements for large companies*, 2013,12,23.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13-11호



- 이번 개정으로 이전가격 보고의무가 부여된 대기업은 연매출액이나 총자산이 4억유로 이상이거나 50% 이상의 지분을 직·간접 소유하고 주주의 연매출액이나 총자산이 4억유로 이상인 기업임
- 세부규정에 따르면 그룹의 일반정보와 기업의 특수정보와 같은 이전가격 정보를 제출해야 함
  - 그룹의 일반정보는 세 가지 사항을 포함함
    - 관련 과세연도 중 발생한 변화를 포함해 그룹이 수행하는 사업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 프랑스 회사와 관련한 주요 무형자산(특히나 상표권)의 목록
    - 관련 과세연도 중 발생한 그룹의 이전가격 정책과 변동사항에 대한 설명
  - 기업의 특수정보는 세 가지 사항을 포함함
    - 관련 과세연도 중 발생한 변동사항을 포함한 기업의 사업활동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
    - 다른 관계회사와 거래한 내역의 요약
    - 정상가격과 관련해 이전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 전년도와 비교해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사항을 표시해야 함
- 납세자는 법인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전가격 정보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함
  - 2013년 12월 31일에 종료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이 2014년 5월 5일이므로 이전가격 문서의 제출기한은 2014년 11월 5일까지임
- 이전가격 정보의 미제출과 관련한 특별 가산세는 없

으며, 일반적으로 정보보고의무 불이행에 적용되는 정보미제출 가산세와 정보불성실보고 가산세가 적용됨

- 제출의무가 있는 정보를 미제출한 경우 적용되는 정보미제출 가산세는 150유로임
- 정보를 부정확하게 보고하거나 생략해서 보고한 경우 건당 15유로의 정보불성실보고 가산세가 적용되며, 이 가산세의 총한도는 1만유로임

(자료 수집 및 정리: 유현영 회계사)

## 2. 이탈리아, 개정세법 확정<sup>3)</sup>

- 이탈리아 정부는 2013년 12월 27일 개정세법을 관보에 게재하였으며, 개정세법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2013년 10월에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수정된 내용과 새로 도입된 규정 중 주요 사항을 소개함

### 가. 세법 개정안의 수정내용<sup>4)</sup>

- 소득세법의 근로소득(장려)세액공제(the earned income credit)의 최소 공제금액을 1,880유로로 개정하고 근로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인 납세자의 세액공제 계산식을 수정함
- 근로소득 8천유로 이하인 납세자가 최소 1,880유로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소득 세액공제의 기초금액을 1,880유로로 개정함
  - 개정 전 근로소득 세액공제의 기초금액은 1,338유

3) IBFD, "Budget Law for 2014 - details," 2014.17.

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13-11호

로였으며, 예산안에서 1,520유로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1,880유로까지 인상함

- 근로소득이 8,001~28,000유로인 납세자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

$$\text{세액공제} = 978 + 902 \times \frac{(28,000 - \text{과세소득})}{20,000}$$

- 근로소득이 28,001~55,000유로인 납세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

$$\text{세액공제} = 978 \times \frac{(55,000 - \text{과세소득})}{27,000}$$

#### 나. 새로 도입된 개정사항

##### 1) 디지털세의 부과

- 외국기업이 제공하는 온라인 광고용역을 과세할 목적에서 온라인 광고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방안과 거래양성화를 위한 방안을 도입함
- 부가가치세 개정세법의 시행일은 2014년 7월 1일이며, 다른 개정사항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온라인 광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해 이탈리아에서 랜선,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인터넷 사이트(검색엔진)를 통해 검색되는 광고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법인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함
- 검색엔진을 통해 검색되는 온라인 광고나 링크의 광고 수입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한 방안임
- 특히 외국 검색엔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저세율 국가에 소재한 관계회사를 통해 광고용역을 제공하여 세원이 감소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임

- 온라인 광고와 관련된 법인세를 과세하기 위해 외국 관계회사를 위한 예비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이익을 인식하는 수익성지표(profit-level indicator)를 사용하도록 함
- 개정세법에는 수익성 지표와 관련해 구체적인 이전가격 방법을 규정하지 않음
- 과세당국과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APA)를 통해 사전 합의된 내용이 있으면 수입성지표의 사용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온라인 광고와 관련된 거래양성화를 위해 내국법인이 외국 관계회사를 위해 예비적 활동을 수행하고 대금을 지불할 때 추적가능한 결제수단을 사용하도록 함
- 은행이나 우체국 등 거래내역을 추적할 수 있는 결제수단을 사용해야 하며 현금으로 지불할 수 없음
- 또한, 과세당국에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등록번호를 제출해야 함
-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2) 기타의 개정사항

-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APA)의 적용대상에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대한 사전 평가’를 추가하고, APA의 적용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 2005년부터 관계회사와 국제거래가 있는 법인에 대해 APA를 도입하였으며, 크게 세 가지 사항에 대해 APA를 신청할 수 있었음
  - 이전가격 방법
  - 배당, 이자와 로열티의 세무처리
  - 내국법인의 외국고정사업장이나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대한 이익과 손실배분에 관한 문제
-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대한 사전 평가’를



추가하여 외국법인이 이탈리아에서 수행하는 사업 (presence)을 정의하고, 이러한 사업이 이탈리아 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지에 대해 과세당국과 사전합의 할 수 있게 됨

- 또한, APA의 적용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외국법인이 5년 동안 사전합의된 내용에 따라 세무처리를 수행할 수 있게 함

- 이탈리아 거주자가 인접국가로부터 계속 고용을 전제로 받은 근로소득 중 6,700유로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탈리아에서 과세하는 규정을 도입함

- 임대수입 양성화를 위해 과세당국이 추적 가능한 결제수단을 통해 임대료를 지급한 임차인에 한해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을 적용함

- 즉, 현금으로 지급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세액공제나 감면을 신청할 수 없음

(자료 수집 및 정리: 유현영 회계사)

### 3. 핀란드의 법인세와 배당에 관한 주요 세법 개정안<sup>5)</sup>

- 핀란드 의회는 2013년 12월 20일에 2014의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법인세 인하와 배당에 대한 과세체계 개정이 주요한 내용임

- 지난 2년간 GNP가 감소한 핀란드 정부는 경제 활성화 및 과세수입 증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음
- 개정된 세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발효됨

- 핀란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법인세를 현행 24.5%에서 20%로 인하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함

- 법인세 인하의 주된 목적은 고용 창출, 투자 증대, 주변 유럽 국가들의 법인세 인하에 대한 대응임
  - 핀란드 주변국인 스웨덴이 2013년에 22%로 법인세를 인하하였으며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등의 주변국도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임<sup>6)</sup>

- 법인세율 인하하는 대신 접대비 손금산입 비율 조정, 이자비용 손금산입에 대한 조정 및 투자관련 세제 혜택 폐지 등 세수 보전 방안을 마련함

- 현행은 접대비가 50%까지 손금산입이 되지만 개정 후엔 전액 손금불산입이 되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게 됨
- 이자비용에 대한 손금 처리도 제한을 신설함
- 2013년에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R&D 인센티브와 가속상각 인센티브도 2014년엔 폐지됨
  - 투자설비에 대한 가속상각 인센티브의 폐지로 인하여 기업들의 연간 감가상각의 세무상 손금 금액이 줄어들게 됨

- 핀란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개정을 통하여 배당소득 과세를 강화함

- 배당에 대한 첫 번째 개정사항은 핀란드 내의 공공기업으로 정해진 기업에서 개인이 받는 배당액의 85%를 자본이득으로 과세하는 사항임
  - 2013년까지는 해당 공공기업으로부터의 배당액의 75%만 과세대상이었으며 개정으로 인한 과세

5) [http://services.taxanalysts.com/taxbase/tnipdf2014.nsf/PDFs/TT730113.pdf/\\$file/TT730113.pdf](http://services.taxanalysts.com/taxbase/tnipdf2014.nsf/PDFs/TT730113.pdf/$file/TT730113.pdf)

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13-04호 참조

대상의 확대로 세수증대가 예상됨

- 배당에 대한 두 번째 개정사항은 배당으로 과세되는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배분에 있어서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없는 잉여금(a reserve of invested unrestricted equity)을 기반으로 하는 자본의 환급은 2014년부터 배당으로 과세되는 것임

- 개정 이전에는 위와 같은 환급은 배당소득 대신 자본이득으로 과세되었으며 개인주주는 자본이득세와 배당소득세의 차이만큼 절세를 할 수 있었음

(자료 수집 및 정라: 흥성열 회계사)

#### 4. 중국의 증치세 관련 재세 106호 통지 발표<sup>7)</sup>

- 중국 재무부와 국가세무총국은 2013년 12월 13일 증치세 적용에 관한 재세 106호 통지를 발표함
  - 증치세 시범 프로그램은 영업세와 증치세가 이중과세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서비스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 초부터 시범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음
  - 재세 106호 통지는 증치세의 가장 최근 지침으로 기존의 재세 37호 통지를 대체함

##### 가. 증치세(VAT) 시범 프로그램의 범위 확장 및 세부 항목별 적용을 명확히 함

- 기존에 증치세가 부과되지 않던 철도운송과 우편서비스에 대해 세율 11%를 적용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과세
- 과세대상 포함 여부가 불명확 했던 특정 용역의 과세

적용 여부 및 적용세율을 추가적으로 명시함

- 항공운송용역 등을 추가하여 증치세가 적용됨을 분명히 하고, 항공운송용역은 11%, 감사와 세무관리·항공훈련·유통 및 번역 등에 대해 6%의 세율이 적용됨을 명시함

##### 나. 수출되는 용역에 대한 증치세 환급 규정을 수정

- 재세 106호 통지를 통해 수출되는 용역에 대한 증치세 지침을 수정함
  - 수출되는 연구개발, 설계의 가격에 대한 과세당국의 조정권한과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명확히 함
  - 항해용선, 정기용선, 포괄임대의 용역에 대해 거래에 따라 영세율 적용대상이 리스이용자에서 리스제공자로 변경됨
- 연구개발, 설계의 수출 시 증치세가 면제되며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 수출업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용역인 경우,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한 매입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증치세 납부세액에서 차감함
  - 무역회사가 제3자로부터 구매한 용역인 경우, 모든 매입세액에 대해 적용하고 전액 환급함
  - 과세당국은 수출용역의 가격이 너무 높다고 판단되면 이를 조정할 권리를 가지며 재조정 가격이 매입가격보다 낮으면 환급되지 않아 손실로 부담한다는 것을 명확히 함
  - 연구개발, 설계에 대한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함

7) Tax Notes Int'l, Dec.23, 2013, pp. 1078~1079.



- 항해용선, 정기용선 및 포괄임대에 대해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리스제공자에게 영세율이 적용됨
  - 기존에는 이러한 용역에 대해 리스제공자는 면세하고 리스이용자에게 영세율을 적용함
  - 항해용선에서 리스자산이 국제운송에 사용되는 경우 영세율대상을 리스이용자에서 국내 리스제공자로 변경함
  - 국내 리스제공자가 외국 리스이용자에게 정기용선 또는 포괄임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됨
    - 국내 리스제공자가 임차한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국제운송을 제공하는 리스이용자에게 정기용선 또는 포괄임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리스이용자가 영세율 적용을 받음

〈표 1〉 기존 재세 37호와 현행 재세 106호의 영세율 적용 비교

	재세 37호의 적용대상	재세 106호의 적용대상
항해용선	리스이용자	리스제공자
정기용선, 포괄임대 (국외 리스이용자의 경우)	리스이용자	리스제공자
정기용선, 포괄임대 (국내 리스이용자의 경우)	리스이용자	리스이용자 (국제운송용역을 다른 자에게 다시 제공하는 경우)

자료: Deloitte, "MOF and SAT issue new VAT reform rules", Tax analysis, December, 19, 2013, p. 4.

- 항해용선, 정기용선 및 포괄임대에 대한 새로운 지침은 증치세 시범계획의 유효일인 2013년 8월 1일부터 소급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정 훈 회계사)

### 5. 싱가포르,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과세지침 공개<sup>8)</sup>

- 싱가포르 과세당국(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은 부동산투자회사(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REITS)에 대한 과세를 명확히 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함
  - REITS를 도관으로 보아 특정소득(specified income)과 관련된 과세소득의 90% 이상이 동일 회계연도에 주주에게 배당되는 경우 REITS에 과세하지 않음
    - 특정소득은 부동산과 관련된 임대소득, 운용에 따른 일시적 소득, 재산신탁회사에서의 배당 등을 포함함
  - 주주에게 배분되지 않은 특정소득과 특정소득 이외의 부동산 처분 등의 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됨
    - 소득세 검사관(Comptroller of Income Tax)이 소득의 성격과 과세처리에 합의할 때까지 위의 소득을 배분할 수 없음
  - 지침은 즉시 발효됨

(자료 수집 및 정리: 정 훈 회계사)

### 6. 인도, 조세위원회의 세이프하버를 적용 서한 공개<sup>9)</sup>

- 인도 직접세중앙위원회(Central Board of Direct Taxes: CBDT)는 2013년 12월 20일 이전가격 세이프하버를 집행에 관한 서한을 조사관(assessing officers)들에게 전달함
  - 2013년 9월 18일 이전가격 세이프하버(safe harbor rule)의 고지에 따른 조치임

8) Tax Notes Int'l, Dec.23, 2013, p. 1084.

9) Tax Notes Int'l Jan.6, 2014, pp. 54~55.

〈표 2〉 인도의 주요 이전가격 세이프하버를

구분	적용금액	세이프하버율
소프트웨어개발, IT실행서비스(R&D제외)	5 INR Billion까지	총영업비용의 20% 이상
	5 INR Billion 초과	총영업비용의 22% 이상
지식프로세스아웃소싱 (KPO) 서비스	-	총영업비용의 25% 이상
완전자회사에 대한 관계기업 자금대여	500 INR Billion까지	인도중앙은행 기준금리 +150bp 이상
	500 INR Billion 초과	인도중앙은행 기준금리 +300bp 이상
핵심 자동차 부품의 제조와 수출	-	총영업비용의 12% 이상
비핵심 자동차 부품의 제조와 수출 (매출의 90% 이상이 OEM 매출인 경우)	-	총영업비용의 8.5% 이상

자료: Ernst & Young, "Indian Tax Administration issues final rules on transfer pricing safe harbor", *Global Tax Alert*, September 19, 2013, pp. 2~3.

- 서한에서는 세이프하버율의 집행방법에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음
  - 이전가격조사는 회사가 세이프하버 마진이나 비율의 준수 여부와 관계 없이 진행되어야 함
    - 회사의 이전가격이 세이프하버 마진이나 비율을 준수하더라도 정기적인 이전가격조사가 가능
  - 세이프하버상의 비율이나 마진은 세이프하버율을 선택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한 공정가치의 기준으로 사용될 수 없음
    - 세이프하버율을 선택하지 않으면 세이프하버 마진이나 비율을 충족한다하더라도 이전가격이 조정 가능
  - 조사관들은 세이프하버에 대한 신청한 달 이후의 두 달까지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해야 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정 훈 회계사)

7. 인도의 국외간접투자자에 대한 과세 단순화<sup>10)</sup>

- 인도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Board of India: SEBI)는 증권거래체계에서 국외투자자 단일화를 실행함
  - SEBI는 2014년 1월 7일 SEBI 2014 규정(SEBI FPIs Regulations 2014)을 고지함
    - 국외간접투자자의 투자방법과 감독의 합리화를 위한 위원회(Committee on Rationalization of Investment Routes and Monitoring of Foreign Portfolio Investments)가 2013년 7월 SEBI에 제출한 보고서의 권고에 따름
    - 동 규정은 고지일에 효력이 발생
  - 규정에서는 기존의 국외기관투자자(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FIIs), FII의 투자계정(subaccounts), 적격국외투자자(Qualified Foreign Investors: QFIs)를 모두 국외간접투자자(Foreign Portfolio Investors: FPIs)로 통합함
- 이러한 증권거래체계의 단일화에 따라 인도 재정부(Ministry of Finance)의 경제사무부(Department of Economic Affairs: DEA)는 모든 FPIs에 대해 동일하게 과세할 예정임
  - SEBI는 경제사무부(DEA)가 세 가지로 분류된 FPIs에 대해 유사한 과세처리를 할 것임을 SEBI와 CBDT에 통지하였다고 밝힘
  - 기존 과세체계에서는 FPIs에 대해 FIIs, FII의 투자계정과 QFIs로 구분하여 다른 과세가 이루어짐
    - 단기자본소득에 대해 FIIs 및 FII의 투자계정은 30%, QFIs는 40%로 과세

10) Tax Notes Int'l, Jan 6, 2014, pp. 55~56.



- 장기자본소득에 대해 FIIs 및 FII의 투자계정은 10%, QFIs는 20%로 과세
- 새로운 체계에서는 FIIs에 대한 과세체계와 유사한 과세체계가 FPIs에게 적용될 것임
- 이러한 변경사항의 시행 시기는 밝히지 않음  
(자료 수집 및 정리: 정 훈 회계사)

주요국의 재정동향



EU

- EU통계청, 2013년 3분기 정부부채 발표(2014.1.22.)<sup>1)</sup>
  - 유로존(EA17)의 2013년 3분기 GDP 대비 정부부채는 92.7%로, 전년 동기 대비 2.7%p 증가하고 직전

분기대비 0.7%p 하락

- 신규 회원국인 라트비아를 포함(EA18)한 GDP 대비 정부부채는 92.6%
- EU 회원국 전체(EU28)의 GDP 대비 정부부채는 86.8%로, 전년 동기 대비 1.9%p 증가하고 직전 분기대비 0.1%p 증가
  - 정부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그리스 (171.8%), 이탈리아(132.9%), 포르투갈(128.7%),

〈표 1〉 유로존(EA18) 및 EU 28개국의 2013년 3분기 정부부채

항목		2012 Q3	2013 Q2	2013 Q3
EA 18				
Government debt	(million euro)	8,538,064	8,883,890	8,850,588
	(% of GDP)	89.9	93.9	92.6
Of which: Currency and deposits	(million euro)	241,550	238,222	240,232
	(% of total debt)	2.8	2.7	2.7
Securities other than shares	(million euro)	6,723,513	7,036,488	7,018,978
	(% of total debt)	78.7	79.2	79.3
Loans	(million euro)	1,573,000	1,609,181	1,591,378
	(% of total debt)	18.4	18.1	18.0
Memo: Intergovernmental lending in the context of the financial crisis	(million euro)	158,483	221,079	224,686
	(% of GDP)	1.7	2.3	2.4
EU28				
Government debt	(million euro)	10,959,398	11,282,059	11,310,458
	(% of GDP)	84.9	86.7	86.8
Of which: Currency and deposits	(million euro)	419,983	403,245	407,993
	(% of total debt)	3.8	3.6	3.6
Securities other than shares	(million euro)	8,799,532	9,107,277	9,147,802
	(% of total debt)	80.3	80.7	80.9
Loans	(million euro)	1,739,883	1,771,538	1,754,663
	(% of total debt)	15.9	15.7	15.5
Memo: Intergovernmental lending in the context of the financial crisis	(million euro)	160,855	225,494	229,680
	(% of GDP)	1.2	1.7	1.8

1) EU통계청, "Third quarter of 2013 compared with second quarter of 2013- Euro area government debt down to 92.7% of GDP, EU28 up to 86.8% of GDP"



아일랜드(124.8%) 순이며, 가장 낮은 국가는 에스 토니아(10.0%), 불가리아(17.3%), 룩셈부르크 (27.7%) 순임

- 직전 분기 대비 정부부채가 가장 많이 증가한 나 라는 키프로스(+11.0%p), 룩셈부르크(+4.0%p), 그리스(+3.0%p) 순이며, 가장 많이 감소한 나라는 포르투갈(-2.6%p), 핀란드(-2.5%p), 벨기에(-1.5%p), 독일(-1.4%p), 헝가리(-1.3%p) 순임

■ EU 집행위, 에너지와 기후에 관한 2030년 정책 프레임워크 발표<sup>2)</sup>(2014.1.22.)

- 2030년 프레임워크는 2020년 프레임워크를 대체해 에너지와 기후 변화 관련 정책의 장기 방향성을 설정
- 2030년까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40%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7%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
- 회원국은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그리고 에너지 효율개선 및 안보에 관한 국가 에너지 계획을 수립해야 함
- 3월 EU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후 유럽회의의 토론과 승인을 거쳐 시행될 예정

■ EU 집행위, 루마니아의 IMF 대기성 차관 협정 (Stand-by agreement)에 대한 제 1·2차 평가 완료 (2014.2.4.)<sup>3)</sup>

- 루마니아는 재정 또는 외환위기가 발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20억유로 규모의 대기성 차관을 2013년 10

월에 지원받을 수 있는 협정을 맺음

- 루마니아의 예비적 국제수지 조정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잘 진행 중이라 밝힘

- 12월 말 기준 경제지표가 조건을 충족하였고, 구조개혁 기준 또한 충족되었거나 목표 수준에 근접

- 수출 호조로 인해 2013년 실질 GDP 성장률이 2.8%를 기록

- 국내수요 확대와 신용 상승으로 인해 2014년 실질 GDP 성장률은 2.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2014년 재정적자 목표를 GDP 대비 2.2%로 설정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정인 연구원)



IMF

■ IMF, World Economic Outlook(WEO) Update 발표(2014.1.21.)<sup>4)</sup>

- (세계경제) WEO Update 보고서에서 2014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선진국의 경기 회복에 힘입어 2013년 10월 전망 대비 0.1%p 상향 조정된 3.7%로 전망
- 2015년 경제성장률은 10월 전망과 동일한 3.9%로 전망

- (선진국) 2014년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은 3%로 2013년 10월 전망에 비해 0.2%p 상승했으며, 2015년의 경제 성장률은 2.3%로 전망

- (미국) 최근 예산합의로 인한 재정 지연(fiscal drag)<sup>5)</sup> 개선 등에 힘입어 2014년 경제성장률은 2.8%(10월 전망 대비 0.2%p 상승), 2015년은 3.0%로 전망

2) EU집행위, "2030 climate and energy goals for a competitive, secure and low-carbon EU economy"

3) EU집행위, "Romania: Statement at the Conclusion of the IMF and EC Staff Visit"

4) 참고: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4/update/01/>

5) 긴축과 세수 초과 등이 경제 회복을 지연시키는 현상

- (유로) 경기 회복국면으로 전환되면서 경제성장률은 2014년 1.0%(10월 전망 대비 0.1%p 상승), 2015년은 1.4%로 전망되며, 다양한 재정압력에 직면해온 유로국가(그리스, 스페인 등)들은 완만한 개선을 보일 전망
- (일본) 일시적인 경기 부양이 소비세 인상 영향을 일부 상쇄하면서 2014년 경제성장률은 전년과 동일한 1.7%(10월 전망 대비 0.4%p 상승), 2015년은 1.0%로 전망
- (신흥개도국) 신흥개도국의 2014년 경제성장률은 5.1%(10월 전망과 동일), 2015년은 5.4%로 전망
  - (중국) 투자 증대로 인한 2013년 하반기 경기 반등은 일시적인 것으로 예상되며 2014년 경제성장률은 7.5%(10월 전망 대비 0.3%p 상승), 2015년은 7.3%로 전망
  - 많은 신흥개도국들이 선진국 및 중국의 대외 수요 확대의 이익을 누리기 시작했으나 러시아, 브라질 등 일부 국가들은 예상 대비 부진한 국내 수요로 인해 10월 전망 대비 경제성장률 전망 하락
- (정책적 제언) 선진국의 경우는 매우 낮은 물가상승률을, 신흥개도국의 경우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tapering)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을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하며 모든 국가들은 견고한 성장 확보와 취약부분 관리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

〈표 2〉 세계 경제 전망

(단위: %)

	전망치				10월 전망 대비 차이	
	2012	2013	2014	2015	2014	2015
World Output <sup>1)</sup>	3.1	3.0	3.7	3.9	0.1	0.0
Advanced Economies	1.4	1.3	2.2	2.3	0.2	-0.2
United States	2.8	1.9	2.8	3.0	0.2	-0.4
Euro Area	-0.7	-0.4	1.0	1.4	0.1	0.1
Germany	0.9	0.5	1.6	1.4	0.2	0.1
France	0.0	0.2	0.9	1.5	0.0	0.0
Italy	-2.5	-1.8	0.6	1.1	-0.1	0.1
Spain	-1.6	-1.2	0.6	0.8	0.4	0.3
Japan	1.4	1.7	1.7	1.0	0.4	-0.2
United Kingdom	0.3	1.7	2.4	2.2	0.6	0.2
Canada	1.7	1.7	2.2	2.4	0.1	-0.1
Other Advanced Economies	1.9	2.2	3.0	3.2	-0.1	-0.1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sup>1)</sup>	4.9	4.7	5.1	5.4	0.0	0.1
Central and Eastern Europe	1.4	2.5	2.8	3.1	0.1	-0.2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3.4	2.1	2.6	3.1	-0.8	-0.7
Russia	3.4	1.5	2.0	2.5	-1.0	-1.0
Excluding Russia	3.3	3.5	4.0	4.3	-0.1	-0.1
Developing Asia	6.4	6.5	6.7	6.8	0.2	0.2
China	7.7	7.7	7.5	7.3	0.3	0.2
India <sup>2)</sup>	3.2	4.4	5.4	6.4	0.2	0.1
ASEAN-5 <sup>3)</sup>	6.2	5.0	5.1	5.6	-0.3	0.0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3.0	2.6	3.0	3.3	-0.1	-0.2
Brazil	1.0	2.3	2.3	2.8	-0.2	-0.4
Mexico	3.7	1.2	3.0	3.5	0.0	0.0
Middle East, North Africa, Afghanistan and Pakistan	4.1	2.4	3.3	4.8	-0.3	0.7
Sub-Saharan Africa	4.8	5.1	6.1	5.8	0.1	0.1
World Growth Based on Market Exchange Rates	2.5	2.4	3.1	3.4	0.1	-0.1
World Trade Volume (goods and services)	2.7	2.7	4.5	5.2	-0.5	-0.3



〈표 2〉의 계속

(단위: %)

	전망치				10월 전망 대비 차이	
	2012	2013	2014	2015	2014	2015
<b>Imports</b>						
Advanced Economies	1.0	1.4	3.4	4.1	-0.7	-0.5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5.7	5.3	5.9	6.5	0.0	-0.2
<b>Commodity Prices(U.S. dollars)</b>						
Oil <sup>4)</sup>	1.0	-0.9	-0.3	-5.2	2.8	0.8
Nonfuel	-10.0	-1.5	-6.1	-2.4	-2.0	-0.3
<b>Consumer Prices</b>						
Advanced Economies	2.0	1.4	1.7	1.8	-0.1	0.0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sup>1)</sup>	6.0	6.1	5.6	5.3	0.0	0.1
<b>London Interbank Offered Rate(percent)</b>						
On U.S. Dollar Deposits(6 month)	0.7	0.4	0.4	0.6	-0.2	-0.3
On Euro Deposits(3 month)	0.6	0.2	0.3	0.5	-0.2	-0.4
On Japanese Yen Deposits(6 month)	0.3	0.3	0.2	0.2	0.0	-0.2

주: 실질실효환율(Real Effective Exchange Rate)은 2013년 11월 11일부터 12월 9일까지 일정하게 유지된 것으로 간주, 알파벳 순으로 나열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 경제규모에 근거하여 정렬되었으며 집계된 자료는 계절 조정

1) 분기별 추정치와 전망치는 세계 구매력평가설(purchasing power parity) 비중의 90%를 설명하고 신흥개발도상국의 약 80%를 설명

2) 인도의 실적치, 전망치 데이터는 회계 연도 기준이며 생산 증가율은 시장 가격의 GDP 기준임. 요소 비용 기준 GDP에 대응하는 값은 2013~2015년 각각 4.6, 5.4, 6.4임

3)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4) 영국 브렌트(Brent), 두바이(Dubai), 미 텍사스 서부의 중질유(Intermediate crude oil)의 단순평균가격. 2013년 원유의 평균가격은 배럴당 104.11달러, 선물시장에 기초한 가격은 2014년 103.84달러, 2015년은 98.47달러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January 2014), Table 1.1

■ IMF 이사회, 한국에 대한 연례 평가(Article IV Consultation) 최종 결과 발표(2014.1.22.)<sup>6)</sup>

- (경제상황) 임금상승과 수출 강세, 거저효과로 인해 소비와 투자가 회복되면서 경제가 점차 개선되어 한

국의 2014년 경제성장률은 3.7%로 전망

- 대외 리스크로 주요 교역국의 성장 부진과 심각한 시장 충격을, 대내 리스크로 민간 채무의 급증과 구조개혁의 실패 시 고령화에 따른 국내 수요 부진을 지적

- (이사회 평가) 내수 중심으로 균형을 조정하고, 동반 성장을 촉진하며,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 구조개혁을 강조

- (경기부양) 완전한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2014년 내수는 상대적으로 약한 수준을 유지하고 생산 갭은 여전히 마이너스로 예상되어 경기 회복세가 확고해질 때까지 통화 및 재정 기조는 여전히 경기 회복을 지원하도록 해야 함

- (재정부문) 급속한 고령화, 우발 채무, 지정학적 리스크하에 재정 균형 회복을 위한 당국의 중기 재정 정책을 대부분 지지했으며, 재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 노력을 강조

- (환율부문) 환율은 시장에 의해 결정(외환시장 혼란 시 부담을 완화하는 데 한해 제한적으로 개입)되어야 하며, 환율시장 개입에 대한 투명성 제고가 환율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강화할 것임

\* 현재의 외화 보유 수준이 충분하다는 일부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위기 시 외화 보유고가 강한 완충 역할을 했던 점을 들어 속단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제기

- (구조개선) 노동시장 참여 증대와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선을 위한 당국의 개혁 아젠다를 지지하며, 서비스 분야의 생산성 제고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 많은 노력을 요구

- (금융부문) 은행의 이익 부진, 가계·기업의 채무, 비금융 예금기관 등에 대한 리스크 감시 강화와

6) 참고: <http://www.imf.org/external/np/sec/pr/2014/pr1420.htm>

감독 구조 개선을 권고

〈표 3〉 한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Real GDP(percent change)	6.3	3.7	2.0	2.8	3.7	3.8
Total domestic demand	6.2	2.0	1.0	2.0	2.7	2.9
Final domestic demand	4.5	1.4	1.1	2.2	2.8	3.0
Consumption	4.1	2.3	2.2	1.9	2.7	2.8
Gross fixed investment	5.8	-1.0	-1.7	3.1	2.9	3.5
Net foreign balance <sup>1)</sup>	0.1	1.9	1.1	1.2	1.3	1.2
Nominal GDP(in trillions of won)	1,173.3	1,235.2	1,272.5	1,343.0	1,414.2	1,496.6
Saving and investment(in percent of GDP)						
Gross national saving	32.4	31.8	31.8	32.3	32.0	31.6
Gross domestic investment	29.5	29.5	27.6	26.5	26.9	26.8
Current account balance	2.9	2.3	4.3	5.8	5.1	4.8
Prices(percent change)						
CPI inflation(end of period)	3.0	4.2	1.4	1.0	2.5	3.0
CPI inflation(average)	2.9	4.0	2.2	1.1	1.8	3.0
Core inflation(average)	1.8	3.2	1.7	1.5	2.0	3.0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11.4	0.6	1.1	-	-	-
Trade (percent change)						
Export volume	14.4	13.9	5.6	6.0	7.2	9.9
Import volume	16.8	5.6	0.5	4.6	6.4	9.9
Terms of trade	-0.9	-8.2	2.5	2.2	-1.4	-0.8
Consolidated central government(in percent of GDP)						
Revenue	22.7	23.3	24.2	23.6	23.6	23.6
Expenditure	21.0	21.4	22.4	22.6	22.5	22.4
Net lending(+)/borrowing(-)	1.7	1.8	1.8	1.0	1.2	1.2
Overall balance	1.4	1.5	1.5	0.7	0.9	1.0
Excluding Social Security Funds	-1.1	-1.1	-1.4	-2.1	-1.8	-1.7

〈표 3〉의 계속

					전망치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Money and credit(end of period)						
Overnight call rate <sup>2)</sup>	2.5	3.3	2.8	2.5	-	-
Three-year AA-corporate bond yield <sup>2)</sup>	4.3	4.2	3.3	3.3	-	-
M3 growth <sup>3)</sup>	5.9	6.6	7.8	6.8	-	-
Balance of payments(in billions of U.S. dollars)						
Current account balance	29.4	26.1	48.1	69.5	65.3	65.5
Gross international reserves(end of period) <sup>4)</sup>	291.5	304.2	323.2	363.3	385.3	407.7
External debt(in billions of U.S. dollars)						
Total external debt (end of period)	359.8	398.7	409.4	427.1	453.8	480.6
Total external debt (in percent of GDP)	35.4	35.8	36.2	35.3	35.4	35.0
Debt service ratio <sup>5)</sup>	6.8	6.4	7.5	7.5	7.8	7.9

주: 1) GDP 성장률 기여도  
 2) 2013년 자료는 2013년 11월 4일 기준  
 3) 2013년 자료는 8월 기준  
 4) 금 제외  
 5) 재화 및 서비스 수출 대비 중장기 채무상환 %비율  
 자료: IMF 보도자료(2014.1.22)

- IMF · EU집행위 · 유럽중앙은행, 키프로스 경제조정 프로그램<sup>7)</sup>에 대한 3차 검토 결과 발표(2014.2.11.)<sup>8)</sup>
  - 키프로스의 경제조정프로그램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예상보다 좋은 재정 성과가 나타났으나 향후 전망에 대한 리스크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
    - (성과) 건전한 예산 집행과 예상보다 심각하지 않은 경기 침체로 인해 2013년 재정 목표는 상당한 여유분을 두고 달성함

7) 거시경제 조정 프로그램은 강화된 감독체계 적용 회원국을 대상으로 집행위원회가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평가될 경우에 시행하고, 집행위원회는 ECB, IMF와 연계하여 조정 프로그램 실행을 분기별로 모니터링. EU의 예산감독 체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제기구 보고서 요약 2013 No.4 EU\_Public Finance in EMU」, 한국조세재정연구원, pp. 10~2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t.re.kr) 참고

8) <http://www.imf.org/external/np/sec/pr/2014/pr1449.htm>



- (전망) 2013년 GDP 성장률은 최근 검토의 전망치보다 약 2%p 개선된 약 -6%, 2014년은 -4.8%로 전망

- (정책 제언) 향후 과제로 금융부문의 부실 채권 관리, 은행 부문 규제 및 감시 강화, 구조 개혁 가속화 등을 언급

\* 검토 결과에 대해 4월초까지 EU 및 IMF의 승인 절차를 완료하면 키프로스는 ESM(유럽안정매커니즘)과 IMF로부터 각각 1억 5천만유로, 8천 6백만유로의 지원을 받을 예정임

■ IMF 이사회, 포르투갈 구제금융에 대한 10차 검토를 완료하고 9억 1천만유로의 지원 승인(2014.2.12.)<sup>9)</sup>

- (지원 내용) 검토 완료에 따라 포르투갈은 9억 1천만 유로의 추가 지원을 받게 되며, 이로써 IMF의 총 지원액은 251억유로로 증가

\* 2011년, IMF와 EU는 포르투갈에 대해 3년간 78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승인함

- (경제 현황) 포르투갈의 단기 경제 전망 개선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리스크도 존재한다고 지적

- (정책 제언) 공공지출 증가 압력 억제, 행정 운영 합리화, 재정 구조 개혁 등 공공 채무 축소를 위한 재정건전화 이행은 물론 경쟁 확대, 노동시장 유연화 등 잠재 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 개혁이 중요

(자료 수집 및 정리: 한혜란 연구원)



■ 2013년 3분기 고용률 발표(2014.1.21.)<sup>10)</sup>

• OECD회원국의 고용률은 지난 2분기 대비 0.1%p 오른 65.2% 수준이며 특히 고령층(55~64세)의 고용률은 꾸준히 상승하여 56.5%를 기록

- 유로지역의 고용률은 2011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상승하여 63.5% 수준이나 여전히 전년 대비 0.3%p 낮은 수준

- 일본은 71.8%, 미국은 67.4%, 한국은 64.6%로 전분기 대비 상승하였음

〈표 4〉 OECD 회원국의 고용률

	2010	2011	2012	2012			2013		
				Q2	Q3	Q4	Q1	Q2	Q3
OECD-Total	64.5	64.8	65.0	65.0	65.0	65.1	65.0	65.1	65.2
Major Seven	67.3	67.5	67.7	67.7	67.8	67.9	67.9	68.0	68.1
European Union	64.0	64.2	64.1	64.0	64.0	64.1	64.0	64.0	64.0
Euro area	64.1	64.3	63.8	63.8	63.8	63.6	63.5	63.4	63.5
Canada	71.5	72.0	72.2	72.2	72.2	72.5	72.5	72.6	72.4
France	63.9	63.9	63.9	63.9	63.9	64.1	63.9	64.0	64.1
Germany	71.1	72.5	72.8	72.7	73.0	73.1	73.1	73.3	73.4
Italy	56.9	57.0	56.8	56.9	56.7	56.4	56.0	55.6	55.4
Japan	70.6	71.1	70.6	70.5	70.7	70.9	71.2	71.5	71.8
United States	66.7	66.6	67.1	67.1	67.1	67.4	67.3	67.3	67.4
Korea	63.3	63.8	64.2	64.3	64.3	64.1	64.1	64.3	64.6

자료: OECD Quarterly Employment Situation

9) <http://www.imf.org/external/np/sec/pr/2014/pr1455.htm>

10) <http://www.oecd.org/std/labour-stats/QES-0114.pdf>

〈표 5〉 OECD 회원국의 2013년 연령별 고용율

	15~24			25~54			55~64		
	Q1	Q2	Q3	Q1	Q2	Q3	Q1	Q2	Q3
OECD-Total	39.1	39.3	39.3	75.5	75.6	75.6	56.0	56.2	56.5
Major Seven	42.1	42.2	42.4	78.0	78.1	78.1	59.2	59.3	59.7
European Union	32.4	32.3	32.3	76.8	76.7	76.7	49.5	49.8	50.4
Euro area	31.6	31.5	31.3	76.0	75.7	75.6	49.4	49.8	50.3
Canada	55.1	55.4	55.0	81.5	81.5	81.5	60.7	60.6	60.4
France	28.6	28.5	28.2	80.5	80.5	80.7	45.5	45.6	45.6
Germany	47.0	47.0	46.9	83.3	83.4	83.4	62.6	63.0	64.0
Italy	16.6	16.7	16.3	69.4	68.3	67.9	41.3	42.0	43.4
Japan	39.4	39.6	39.9	80.9	81.3	81.4	66.3	66.4	67.1
United States	45.9	46.2	46.5	75.8	75.9	76.0	61.2	60.9	60.9
Korea	23.8	23.9	24.2	74.6	74.8	75.2	63.5	64.1	64.7

자료: OECD Quarterly Employment Situation

(자료 수집 및 정리: 최주연 연구원)

- 이민부는 이민수용소(Immigration Detention Facilities) 4곳을 폐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연간 8,880만호주달러의 예산절감 효과 예상
- 폰트빌 수용소는 2013년 9월부터 사실상 운영을 멈춘 상태이고, 슈에거 수용소, 포트어거스타 주거지, 레오노라 수용소는 2014년 2월 말까지 폐쇄할 예정
- 외무부는 FY2013-14 원조(Aid)를 위한 예산을 당초 57억호주달러에서 50억호주달러로 조정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전년 대비 1억호주달러의 예산절감 효과 예상
- FY2013-14 재정적자 470억호주달러, 정부부채 6,670억호주달러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원조를 위한 예산은 매년 소비자 물가지수만을 적용하여 증액할 계획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은숙 연구원)



호주

1. 기타

- 이민부 및 외무부, 예산절감 구체내용 발표(2014.1.14, 1.18.)<sup>11)</sup>
  - 자유·국민당은 총선을 앞둔 2013년 9월 5일 공약 소비비용 추계 보고서에서 향후 4년간 약 420억호주달러 규모의 예산절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sup>12)</sup>
  - 총선 이후 예산절감과 관련해 복지수당 조정, 메디케어 재정비 등이 이슈화되었고, 최근 이민부와 외무부는 예산절감의 구체적 내용을 발표

11) 이민부 장관실 홈페이지 Media Centre 2014.1.14, 외무부 장관실 홈페이지 Media Release 2014.1.18

1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2013년 9월 제2호 재정동향 참고

13) 캐나다 재무부, <http://www.fin.gc.ca/n14/14-004-eng.asp>



캐나다

1. 예산·결산 등

- 2014년 예산안(Economic Action Plan 2014) 주요 우선 순위 발표(2014.1.14.)<sup>13)</sup>
  - 균형예산, 일자리 창출, 장기적 번영을 위한 낮은 세금 계획 등에 중점을 둔 2014년 예산안 우선 순위에 대해 발표
  - 이번 계획을 통해 FY2015-16에는 균형 예산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
- 캐나다 재무부, Economic Action Plan 2014 발표



(2014.2.12.)

- (예산기조) 2014년 예산안의 핵심 기조는 「일자리와 기회 창출(Creating jobs and opportunities)」를 주제로 하며,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정책에 중점을 둠
  - 노동시장 진입 지원(Connecting Canadians With Available Jobs)
  - 고용창출, 혁신 및 무역 육성(Fostering Job Creation, Innovation and Trade)
  - 자원개발, 캐나다 자연 유산 보존, 인프라 및 교통에 투자(Responsible Resource Development, Conserving Canada's Natural Heritage, and Investing in Infrastructure and Transportation)
  - 가계 및 지역사회 지원(Supporting Families and Communities)

〈표 6〉 일자리 창출 및 경기부양 예산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2013 -14	2014 -15	2015 -16	Total
<b>노동시장 진입 지원(Connecting Canadians With Available Jobs)</b>				
Ensuring Training Reflects Labour Market Needs		7	8	15
Training the Workforce of Tomorrow		66	194	259
Strengthening Canada's Labour Market	2	43	43	89
소계	2	116	245	363
<b>고용창출, 혁신 및 무역 육성(Fostering Job Creation, Innovation and Trade)</b>				
Keeping Taxes Low for Job-Creating Businesses		5	15	20
Fostering Trade and Canadian Entrepreneurship		195	302	497
Supporting Advanced Research and Innovation		423	410	833
Promoting Canada's Financial Sector Advantage		1	2	3
소계		624	729	1,354
<b>자원개발, 캐나다 자연 유산 보존, 인프라 및 교통 투자 (Responsible Resource Development, Conserving Canada's Natural Heritage, and Investing in Infrastructure and Transportation)</b>				
Responsible Resource Development		48	47	94
Supporting Mining, Forestry and Agriculture		86	11	97
Asserting Canada's Sovereignty by Investing in the North		47	43	90
Conserving Canada's Natural Heritage		13	21	33
Investing in Infrastructure and Transportation		160	216	376
소계		353	337	691
<b>가계 및 지역사회 지원 (Supporting Families and Communities)</b>				
Consumers First		63	150	214
Investing in Families	3	52	54	108
Investing in Stronger Communities	103	187	352	641
소계	106	302	555	964
총계	108	1,396	1,867	3,371
순 재정비용	86	730	1,003	1,819

자료: 캐나다재무부, "Economic Action Plan 2014(2014,2,11)," Table 3.0

- (경제 전망)<sup>14)</sup> 2014년 실질 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0.6%p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6년까지는 증가세를 보이다 FY2017-18에는 소폭 하향할 것으로 전망
- 실업률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표 7〉 캐나다 경제 전망(2013년 12월 기준)

(단위: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4-2018
실질GDP성장률	1.7	2.3	2.5	2.5	2.3	2.2	2.4
실업률	7.1	6.8	6.6	6.4	6.3	6.2	6.5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1.0	1.5	1.9	2.0	2.0	2.0	1.9

자료: 캐나다 재무부, "Economic Action Plan 2014(2014.2.11)," Table 2.1 일부 발췌

- (재정 전망) 2015년에 재정수지 균형 달성을 목표로 지속적인 예산 절감을 시행하고 있으며, FY2015-16에 64억캐나다달러로 재정수지가 개선될 전망
- 재정적자의 경우 FY2014-15에 29억캐나다달러로 감소할 전망이며, FY2015-16부터는 64억캐나다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GDP 대비 연방채무 비율은 FY2018-19에 25.5%까지 감소될 전망

〈표 8〉 캐나다 재정 전망(2013년 12월 기준)

(단위: 억캐나다달러, %)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2018-19
총세입	2,566	2,640	2,763	2,933	3,068	3,177	3,324
(GDP 대비 %)	(14.1)	(14.1)	(14.3)	(14.5)	(14.5)	(14.4)	(14.4)
프로그램지출	2,464	2,512	2,502	2,569	2,665	2,752	2,863
(GDP 대비 %)	(13.5)	(13.5)	(13.0)	(12.7)	(12.6)	(12.5)	(12.4)
이자지출	292	293	290	300	321	344	358
(GDP 대비 %)	(1.6)	(1.6)	(1.5)	(1.5)	(1.5)	(1.6)	(1.6)
재정수지	△189	△166	△29	64	81	81	103
(GDP 대비 %)	(△1.0)	(△0.9)	(△0.1)	(0.3)	(0.4)	(0.4)	(0.4)
연방채무	6,024	6,160	6,189	6,124	6,043	5,962	5,860
(GDP 대비 %)	(33.1)	(33.0)	(32.0)	(30.3)	(28.6)	(27.0)	(25.5)

자료: 캐나다 재무부, Economic Action Plan 2014(2014.2.11), Table 4.2.4

- (세입 전망) FY2014-15 총세입은 2,763억캐나다달러로, GDP 대비 비중은 전년 대비 약 0.2%p 증가될 전망
- (세출 전망) FY2014-15 프로그램지출은 2,502억캐나다달러이며, GDP 대비 프로그램 지출의 비중이 FY2012-13에 13.5%에서 FY2018-19에 12.4%로 하락할 전망
- FY2014-15 이자지출은 290억캐나다달러로 FY2013-14 대비 3억캐나다달러 감소할 전망
- (주요 정책)
- 균형예산 달성(Return to Balanced Budgets)을 위한 긴축기조 유지
- ☞ "Economic Action Plan 2013"과 동일하게 균형예산 달성을 위해 정부의 효율성 및 세금 제도

14) 캐나다 재무부는 민간 부문 경제 전문가 대상\* 서베이 결과를 토대로 경제 및 재정 전망 발표 \*참여 민간 경제 전문가 그룹(14개): BMO Capital Markets, Caisse de dépôt et placement du Québec, Canadian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 CIBC World Markets, The Conference Board of Canada, Desjardins, Deutsche Bank of Canada, IHS Global Insight, Laurentian Bank Securities, National Bank Financial Group, Royal Bank of Canada, Scotiabank, TD Bank Financial Group, The University of Toronto (Policy and Economic Analysis Program)



의 공정성, 조세 준수 강화를 강조

- ☞ 공무원에 대한 각종 급여의 합리화 및 비용 부담 관리를 위해 연방 정부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 지출을 직접 관리
- 일자리 창출 및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 ☞ 캐나다의 낮은 세금 정책을 유지하고 추가적인 감세를 허용, 경제성장과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자리 창출을 촉진
  - ☞ 일자리 창출, 혁신과 무역 육성을 위한 낮은 세금 유지, 캐나다 자연 보존 및 인프라, 교통 분야에 투자 등

(자료 수집 및 정리: 서주영 연구원)

- 프랑수아 올랑드(Francois Hollande) 대통령, 재정지출 감축 및 기업환경 개선에 대한 계획 발표(2014.1.20.)<sup>16)</sup>
  - 재정적자 감소를 위해 재정지출을 감축하고, 공공지출 감축을 위한 위원회(Conseil stratégique de la dépense publique)를 설립할 예정
  - 2014년에 150억유로 예산 절감 및 2015~2017년간 500억유로의 공공지출을 감축할 계획
  - 경제성장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환경 개선에 대한 다각적인 조치를 시행할 계획
  - 2017년까지 300억유로에 달하는 기업의 가족수당 관련 사회보장부담금을 폐지하고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 완화 추진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진아 연구원)

## 프랑스

### 1. 기타

- 2013 정부 재정적자 발표(2014.1.17.)<sup>15)</sup>
  - 프랑스 재무부는 2013년 정부 재정적자가 749억유로로 집계됐음을 발표
  - 2012년 정부 재정적자 869억유로에 비해 120억유로 감소한 수치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임
  - 재무장관 피에르 모스코비치(Pierre Moscovici)는 성명을 통해 “예상보다 높은 재정적자 규모는 목표치보다 35억유로 적게 걷힌 세금 때문”이라고 언급

15) 자료: 프랑스 재무부, <http://www.performance-publique.budget.gouv.fr/ressources-documentaires/toutes-les-actualites/les-resultats-de-lexecution-du-budget-de-letat-en-2013.html>

16) 자료: 프랑스 재무부, <http://www.gouvernement.fr/gouvernement/pourquoi-faut-il-baisser-la-depense-publique-et-comment>  
주 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 <http://fr.mofa.go.kr/>

17) 원문: <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14/01/2014-01-15-PM2.html>  
발표자료: [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14/01/2014-01-15-PM2-anlage.pdf?\\_\\_blob=publicationFile&v=2](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14/01/2014-01-15-PM2-anlage.pdf?__blob=publicationFile&v=2)

## 독일

### 1. 예산 · 결산 등

- 재무부, FY2013 잠정결산 발표(2014.1.15.)<sup>17)</sup>
  - (재정지출) 2013년 재정지출은 3,078억유로로 기존 지출목표 대비 22억유로 감소
  - (재정수입) 총재정수입은 2,857억유로로 기존 목표치 대비 8억유로 증가
  - (신규차입) 목표치보다 30억유로 감소된 221억유로로 집계

- 2013년 지출감소와 수입증가로 2012년 신규 차입액(225억유로) 대비 감소

〈표 9〉 FY2013 결산(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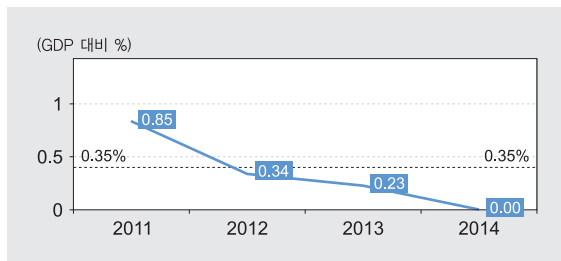
(단위: 10억유로, %)

	2013(목표) <sup>1)</sup>	2013(잠정)	목표치 대비 차이
재정지출	310.0	307.8	△2.2
재정수입	284.9	285.7	0.8
조세수입	260.6	259.8	△0.8
세외수입	24.3	25.9	1.6
신규차입	25.1	22.1	△3.0

주: 1) 2013 추경예산 포함  
 자료: 재무부, "Vorläufiger Haushaltsabschluss des Bundes für das Jahr 2013"

- (재정수지) 2013년 GDP 대비 구조적 재정수지는 0.23% 적자
- 「부채제한법(Schuldenbremse; Debt Brake)<sup>18)</sup>에 규정한 GDP 대비 0.35%보다 0.12%p 낮은 수치
- 2014년 재정수지 균형 목표
- 최종결산 수치는 6월 결산보고서에서 발표

〔그림 1〕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 추이



자료: 재무부, "Vorläufiger Haushaltsabschluss des Bundes für das Jahr 2013"

## 2. 기타

- 연방통계청, 2013년 경제성장률 발표(2014.1.15.)<sup>19)</sup>
  - 2013년 GDP 성장률은 0.4%로 전년도 성장률(0.7%)에 대비 0.3%p 하락
  - 민간소비는 0.9%, 정부지출은 1.1% 증가
  - 설비투자는 전년 대비 2.2%, 건설투자는 0.3% 각각 감소하여 총고정자본 형성 역시 0.8% 감소
  - 수입 증가율은 1.3%를 기록한 반면 수출 증가율은 0.6%로 전년도(3.2%) 대비 크게 하락

〈표 10〉 2013년 국민계정

(단위: %)

	2010	2011	2012	2013
GDP 성장률	4.0	3.3	0.7	0.4
민간소비	1.0	2.3	0.8	0.9
정부지출	1.3	1.0	1.0	1.1
총고정자본 형성	5.7	6.9	-2.1	-0.8
설비투자	10.0	5.8	-4.0	-2.2
건설투자	3.2	7.8	-1.4	-0.3
수출	15.2	8.0	3.2	0.6
수입	12.5	7.4	1.4	1.3

자료: 연방통계청 보도자료, 2014.1.15.

18) 연방의 신규 순채무 증가를 2016년부터 GDP의 0.35% 이하로 제한하고, 주정부의 신규 순채무 증가는 2020년부터 전적으로 금지(참고「정책분석 11-06 독일의 재정제도」,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pp. 103~106.

19) 원문: <http://www.bundesregierung.de/Content/DE/Artikel/2014/01/2014-01-15-bjp-2013-destatis.html>

보도자료: [https://www.destatis.de/DE/PresseService/Presse/Pressekonferenzen/2014/BIP2013/pm\\_bip2013\\_PDF.pdf?\\_\\_blob=publicationFile](https://www.destatis.de/DE/PresseService/Presse/Pressekonferenzen/2014/BIP2013/pm_bip2013_PDF.pdf?__blob=publicationFile)



- 경제에너지부, 「재생에너지법(EEG: Erneuerbare Energien Gesetzes)」 개정안 발표(2014.1.23.)<sup>20)</sup>
  - 가브리엘(Gabriel) 경제에너지부(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장관이 「재생에너지법」에 대한 개혁안을 내각에 제안
  -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재생에너지 장려 정책의 축소 및 변경
    - (보조금 삭감) 현행 재생에너지 사업에 지급되고 있는 키로와트당 평균 17유로센트의 보조금을 2015년 12유로센트로 축소
    - (태양력 및 풍력) 생산시설의 연간 신규 설치규모를 현행 3,500에서 2,500메가와트로 하향 조정
    - (바이오에너지) 신규 설치용량을 연간 100메가와트로 제한, 비용 효율적 기술에 대해 우대 조치 실시
  - 4월 9일까지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확정할 후 의회 승인을 거쳐 8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
- 독일 연방내각, 연금 개혁안 승인(2014.1.29.)<sup>21)</sup>
  - 연금 수급연령을 낮추고 여성에 대한 혜택 확대, 950만명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 45년 이상 연금을 불입한 경우 연금 수급연령을 67세에서 63세로 하향 적용
    - 1992년 이전에 태어난 아이를 둔 여성에 더 높은 연

- 금 지급<sup>22)</sup> : 아이 한명당 한달에 28유로 추가 지급
- 2014년 44억유로, 2030년까지 1,600억유로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수급연령 하향조정에 11억유로, 어머니 연금제 확대에 33억유로가 2014년 추가로 필요
  - 연금의 개인 부담률이 2018년까지 18.9%로 유지되지만 2019년부터는 19.7%로 인상될 예정
- 연금 개혁안은 의회 승인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선미 연구원)

## 이탈리아

### 1. 기타

- 이탈리아 정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운영을 목표로 하는 안정법안(della legge di stabilita)<sup>23)</sup>의 기대 효과 논의(2014.1.22.)<sup>24)</sup>
  - 엔리코 레타 총리는 안정법안을 통해 세부담 인하와 실업 해소를 위한 새로운 자금 창출을 기대
    - 2월 16일부터 5월 16일까지 석달간 추가적인 자금 조달을 위해서 산재보험공사(INAIL)에 지불 연기 및 삭감을 시행하고, 4억유로의 정리해고 기금(CIG)<sup>25)</sup>을 확충 계획

20) 원문: <http://www.bmwi.de/DE/Themen/Energie/Erneuerbare-Energien/eeg-reform.html>

보도자료: <http://www.bmwi.de/BMWi/Redaktion/PDF/E/eeg-reform-eckpunkte,property=pdf,bereich=bmwi2012,sprache=de,rwb=true.pdf>

21) 원문: <http://www.bundesregierung.de/Content/DE/Artikel/2014/01/2014-01-29-rentenreform-kabinett.html>

22) 1992년을 기준으로 모성지원정책이 강화됐다고 평가, 그 이전에 출산한 여성에 대해 추가적인 혜택 주려는 정책적 판단

23) 이탈리아의 예산안은 예산법안과 안정법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10월 15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예산법안은 현행 법률에 의한 모든 지출과 세입을 작성한 것이고 안정법안은 향후 3년간의 예산 계획에 대한 재정적 틀을 제공하고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당해 연도의 재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에 목표를 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4) 이탈리아 정부, <http://www.governo.it/Presidente/Comunicati/dettaglio.asp?d=74507>

25) 이탈리아는 경기가 침체할 경우 공장들이 조업을 늦추거나 중단하도록 하는 대신 일시 휴직상태인 근로자들의 임금 일부를 국가 정리해고기금(CIG)에서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음

- 또한 유로통계청(Eurostat)의 2013년 3분기 이탈리아 정부 부채가 8분기 연속 성장 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인 점을 경제정책 효과를 보여주는 신호로 판단

■ 이탈리아 정부, 공공부채를 감축하기 위한 민영화 추진(2014.1.23.)<sup>26)</sup>

- 우체국 지분 40%와 항공 관제소(Enav) 지분 49%를 민간에 매각할 계획
- 이탈리아 정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정유회사인 ENI를 비롯하여 8개의 공공기관 지분 매각을 발표한 바 있음
- 이번 우체국 매각으로 최소 40억유로, 항공 관제소(Enav) 매각으로는 20억유로의 자금을 확보할 것으로 추산되며, 향후 2년간 민영화 프로젝트를 통하여 약 80~100억유로 규모의 수익 기대

(자료 수집 및 정리: 황보경 연구원)

- 화의 양립을 목표로 하며, 사회보장을 비롯한 의무적 경비 등을 포함하여 예산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한 후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정책 중점화를 도모
- (세입)조세 및 인지수입 50조 10억엔, 기타수입 4조 6,313억엔, 공채금 41조 2,500억엔으로 총 95조 8,823엔 규모
- (세출)국채비 72조 6,121억엔, 기초재정수지대상 경비 72조 6,121억엔으로 총 95조 8,823엔 규모

■ FY2013 추가경정예산 국회제출(2014.1.24.)<sup>29)</sup>

- 2014년 4월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 시행에 필요한 5조 4,654억엔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국회에 제출<sup>30)</sup>
- '선순환 실현을 위한 경제 대책'<sup>31)</sup> 실시를 위한 경비를 추가하고, 최근 세입 실적을 감안한 조세 및 인지수입 증가 예상과 전년도 잉여금 수입을 포함하여 계상

● 일본

1. 예산·결산 등

■ FY2014 예산정부안 국회제출(2014.1.24.)<sup>27)</sup>

- 전년 대비 3.5% 증가한 95조 8,823엔 규모의 예산을 국회에 제출<sup>28)</sup>
- (기본방침)디플레이션 탈출·경제 재생과 재정건전

■ 「2012년도 국가의 재무서류」 발표(2014.1.31.)<sup>32)</sup>

- FY2012 국가자산은 640.2조엔으로 전년 대비 11.3조엔 증가하였고, 국가부채는 1,117.2조엔으로 전년 대비 28.9조엔 증가
- 자산 및 부채 차액은 △477.0조엔으로 전년 대비 17.7조엔 감소

26) 이탈리아 정부, [http://www.mef.gov.it/documenti-allegati/2014/Saccomanni\\_reuters.pdf](http://www.mef.gov.it/documenti-allegati/2014/Saccomanni_reuters.pdf)

27) 재무성, 「平成26年度予算政府案国会提出」, 2014.1.24.

28) 자세한 내용은 『2013년 하반기 재정동향』 일본편 참조

29) 재무성, 「平成25年度補正予算国会提出」, 2014.1.24.

30) 자세한 내용은 『2013년 하반기 재정동향』 일본편 참조

31) '경제정책 패키지'의 일부로 2013년 12월 5일 각의 결정,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충격 완화 정책이 포함

32) 재무성, 「平成24年度」国の財務書類, 2014.1.31.



〈표 11〉 국가재무서류 대차대조표

(단위: 조엔)

	FY2011	FY2012		FY2011	FY2012
〈자산〉			〈부채〉		
현금 및 예금	17.7	22.0	미지급금 등	11.2	11.3
유가증권	97.6	110.8	정부단기증권	107.2	101.7
미수금 등	13.0	12.4	공채	791.0	827.2
선불비용	4.3	2.8	차입금	24.5	26.8
대부금	142.9	139.5	예탁금	7.5	7.3
운용기탁금	110.5	106.7	책임준비금	9.2	9.2
대손충당금	△2.7	△2.6	공적연금예탁금	118.5	114.6
유형고정자산	180.9	180.3	퇴직급여충당금 등	11.0	10.1
무형고정자산	0.2	0.2	기타채무	8.1	8.8
출자금	59.3	62.2	부채 합계	1,088.2	1,117.2
기타 자산	5.2	5.8	〈자산 · 부채 차액〉		
			자산 · 부채 차액	△459.3	△477.0
자산 합계	628.9	640.2	부채 및 자산 · 부채 차액 합계	628.9	640.2

자료: 재무성, 「平成24年度「国の財務書類」の貸借対照表の概要」, 2014.1.31.

## 2. 기타

- 내각부, 2012년 국민경제계산(stock) 발표(2014.1.17.)<sup>33)</sup>
  - 2012년 국가 순자산은 전년 대비 0.03% 증가한 약 3,000조엔으로 5년만에 증가
    - 제도부문별로 살펴보면 비금융법인 기업과 일반정부는 감소하였고, 금융기관, 가계(개인기업 포함), 민간비영리단체는 증가하여 전체 국가 순자산이 증가세를 나타냄
    - 일반 정부 부문의 경우 5년 연속 감소 추세를 나타내며,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33) 내각부, 「平成24年度国民経済計算確報(ストック編ポイント)」, 2014.1.17.

34) 내각부, 「中長期の経済財政に関する試算(平成26年1月20日経済財政諮問会議提出)」, 2014.1.20.

〈표 12〉 제도부문별 국가 순자산

(단위: 조엔)

	2008	2009	2010	2011	2012	전년 대비
순자산(국부)	3,146.3	3,076.6	3,022.5	2,999.2	3,000.3	0.0%
비금융법인기업	671.2	642.9	632.3	679.6	649.9	△4.4%
금융기관	33.8	47.0	59.2	80.1	89.1	11.3%
일반정부	109.7	75.3	31.4	△17.6	△38.8	-
가계 (개인기업 포함)	2,246.8	2,229.3	2,220.4	2,190.9	2,232.7	1.9%
민간비영리단체	84.7	82.1	79.2	66.2	67.4	1.7%

자료: 내각부, 「平成24年度国民経済計算確報(ストック編ポイント)」, 2014.1.17.

### ■ 내각부, 중장기 경제재정 전망 발표(2014.1.20.)<sup>34)</sup>

- (경제)향후 10년(2013~2022년) 평균 실질 성장률은 2%, 평균 명목 성장률은 3%를 나타낼 전망
  - 세계경제 상승 추이에서 일본 경제 재생을 향한 대담한 금융정책, 구조적인 재정정책, 민간투자를 환기시키는 성장전략이 효과적으로 실현된다고 가정
  - 소비자물가 상승률(소비세율 인상 영향 제외)은 중기적으로 2%에 근접한 안정적인 추이를 나타낼 것
- (재정)2015년도 GDP 대비 국가 · 지방 기초재정수지(복구 · 부흥대책 경비 및 재원 금액 제외 베이스)는 △3.2%로, 재정적자 반감목표(2010년 수준의 절반, GDP 대비 △3.3%)를 달성할 전망
  - '중기재정계획'을 바탕으로 기초적 재정수지 개선 노력이 시행되고, 사회보장 및 세제 일체 개혁 관련 법 등을 바탕으로 한 소비세율의 단계적 인상과 사회보장제도개혁 실시 등을 통한 단계적 세출 증가를 가정
  - 2020년도 GDP 대비 국가 · 지방 기초재정수지는

△1.9%로 흑자달성 목표를 위한 수지개선 노력이 필요

〈표 13〉 중장기 경제재정 전망

(단위: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20	2022	2023
실질 GDP 성장률	0.7	2.6	1.4	1.7	1.8	2.0	2.3	2.4	2.4
명목 GDP 성장률	△0.2	2.5	3.3	3.4	3.8	3.4	3.6	3.7	3.7
소비자물가상승률	△0.3	0.7	3.2	2.6	2.8	2.0	2.0	2.0	2.0
완전실업률	4.3	3.9	3.7	3.6	3.5	3.4	3.2	3.3	3.3
기초재정수지 (명목 GDP 대비)	△5.9	△6.7	△5.2	△3.2	△2.5	△2.3	△1.9	△1.4	△1.3

자료: 내각부, 「中長期の經濟財政に關する試算(平成26年 1月20日經濟財政諮問會議提出)」, 2014.120.

- 「2014년도 예산이 향후 세출·세입에 미치는 영향 시산」 발표(2014.1.30.)<sup>35)</sup>
  - 본 시산은 2014년도 예산의 제도·정책을 전제로 '사회보장 및 세제 일체개혁' 실시에 따른 영향을 반영하여 향후(2017년도까지) 세출 세입 전망을 시산
  - 주요 경제지표는 2014년 이후 명목경제성장률 3%, 소비자 물가상승률 2%로 가정하며(I),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한 명목경제성장률 1.5%, 소비자 물가상승률 1% 가정도 포함(II)
  - (경제성장 3%) 세출은 2014년 95.9조엔에서 2016년 106.3조엔로 약 10.4조엔 증가, 세입은 54.6조엔에서 66.7조엔으로 약 12.1조엔 증가 예상
  - (경제성장 1.5%) 세출은 2014년 95.9조엔에서 2016년 105.4조엔으로 약 9.5조엔 증가, 세입은 54.6조엔에서 63.8조엔으로 약 9.2조엔 증가

35) 재무성, 「平成26年度予算の後年度歳出・歳入への影響試算」, 2014.1.30.

36) 재무성, 「平成26年度の国民負担率を公表します」, 2014.2.7.

〈표 14〉 세출 및 세입에 미치는 영향 시산

(단위: 조엔)

	2013 <sup>1)</sup>	2014	2015		2016		2017	
			I	II	I	II	I	II
국채비	22.2	23.3	24.8	24.8	27.0	26.7	29.4	28.8
기초재정수지대상 경비 <sup>2)</sup>	70.4	72.6	74.8	74.8	75.8	75.8	76.9	76.6
사회보장관계비	29.1	30.5	32.4	32.3	34.3	34.2	35.5	35.3
지방교부세 등	16.4	16.1	16.1	16.1	15.4	15.6	15.1	15.3
기타	24.9	26.0	26.4	26.3	26.2	26.0	26.3	26.0
합계(A)	92.6	95.9	99.7	99.6	102.8	102.5	106.3	105.4
세수 <sup>3)</sup>	43.1	50.0	55.5	54.6	60.4	58.5	62.4	59.5
기타 소득	4.1	4.6	4.4	4.4	4.4	4.4	4.3	4.3
합계(B)	47.1	54.6	59.9	59.0	64.8	62.9	66.7	63.8
차액(A-B)	45.5	41.3	39.8	40.6	38.1	39.7	39.7	41.6
기초재정수지	△23.2	△18.0	△15.0	△15.8	△11.1	△12.9	△10.2	△12.8

주: 1) 2013년도는 당초 예산 금액

2) 기초재정수지대상 경비의 2015년도 이후는 2014년도 예산의 제도·정책을 전제로 한 추계에 의해 산출된 세출액에 '사회보장 및 세제일체 개혁 실시'에 따른 사회보장 충실 등을 가산

3) 세수는 「사회보장 안정재원 확보 등을 위한 세제의 근본적인 개혁 실시를 위한 소비세법 일부 개정 등의 법률」 등에 따른 상당 금액을 포함

4) 기초재정수지 경비, 세수·세입 합계와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는 시산의 전제인 명목 성장률을 바탕으로 산출

자료: 재무성, 「平成26年度予算の後年度歳出・歳入への影響試算」, 2014.1.30.

- 2014년도 국민부담률 전망 발표<sup>36)</sup>(2014.2.7.)
  - 2014년도 국민부담률은 2013년도 대비 1.0%p 증가한 41.6%를 기록할 전망
  - 이는 역대 최고 수치로 후생연금 등 보험료율 인상 및 고령화 등에 따른 사회보장부담률의 소폭 증가, 경기회복 및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조세부담률 증가가 주요인으로 작용
  - 잠재적 국민부담률은 재정적자 감소 및 국민소득 증가에 의해 2013년도보다 0.3%p 감소한 51.9%를



기록할 전망

〈표 15〉 국민부담률 추이

(단위: %)

	2010	2011	2012	2013	2014
조세부담률(①)	22.1	22.7	23.2	23.3	24.1
사회보장부담률(②)	16.3	17.1	17.4	17.4	17.5
국민부담률(③=①+②)	38.5	39.8	40.7	40.6	41.6
재정적자(④)	11.3	11.7	10.8	11.6	10.3
잠재적 국민부담률(③+④)	49.8	51.5	51.5	52.2	51.9

자료: 재무성, '國民負担率の推移(對國民所得比)', 2014.2.7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정은 연구원〉

**스페인**

1. 기타

- 경제부는 10년 만기 국채 100억유로(약 14조 8천억 원)규모를 발행(2014.1.22.)<sup>37)</sup>
  - 발행 금리는 3.845%로 만기가 2023년 10월 31일인 지난 국채발행 금리 4.40%에 비하여 하락하였고, 이번 국채발행으로 2014년 차입계획의 16%를 달성
  - 발행된 국채의 60% 이상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각
- 통계청은 2013년 4분기 실업률(26.03%)을 발표(2014. 1.23.)<sup>38)</sup>
  - 2013년 4분기 실업률은 전 분기의 실업률인 25.98%에 비하여 0.05%p 상승하였으나, 2007년 2분기 이래 처음으로 연평균 실업률의 변화가 마이너스(-1.16%)를 나타냄 ([그림2]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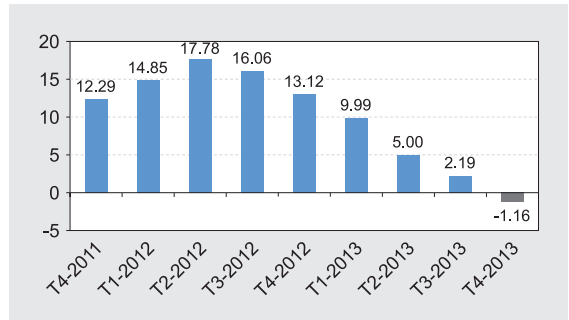
37) 스페인 경제부, [http://www.mineco.gob.es/portal/site/mineco/?lang\\_choose=en](http://www.mineco.gob.es/portal/site/mineco/?lang_choose=en)

38) 스페인 통계청, <http://www.ine.es/en/welcome.shtml>

39) 영국 통계청, <http://www.ons.gov.uk/ons/rel/psa-public-sector-finances/december-2013/index.html>

- 2013년 4분기에 실업자는 8,400명 감소하여 실업자 수는 589만 6,300명으로 집계

[그림 2] 연평균 실업률의 변화율



자료: 스페인 통계청

〈자료 수집 및 정리: 강민채 연구원〉

**영국**

1. 예산·결산 등

- 영국 통계청, 2013년 공공부문 재정 현황 발표(2014. 1.22.)<sup>39)</sup>
  - 2013년 12월 공공부문 경상재정 적자는 전년 대비 24억파운드 감소한 95억파운드이며, 2013년 4~12월 공공부문 경상재정적자는 FY2012-13 대비 180억파운드 감소한 684억파운드로 나타남
  - 2013년 12월 공공부문 순차입(Public Sector Net Borrowing)은 전년 동월 대비 21억파운드 감소한 121억파운드 규모이며, 4~12월 공공부문 순차입은 전년 동기간 대비 110억파운드 증가한 839억파운드

드로 나타남

- 공공부문 순부채는 전년 동기간 대비 719억파운드 증가한 1조 2,543억파운드로 GDP의 75.7%를 차지함

을 지원

- '컴퓨팅 앳 스쿨(Computing at School)<sup>42)</sup>에 초등 학교 교사 훈련비로 1,100만파운드를 지원하며, 컴퓨터과학 교사 희망자에 대한 장학금 2만 5천파운드 증대

〈표 16〉 공공부문 재정(Public Sector Finance)

(단위: 십억파운드)

	12월			4~12월		
	2013 (A)	2012 (B)	(A-B)	2013/14 (C)	2012/13 (D)	(C-D)
경상재정수지	△9.5	△11.9	△2.4	△68.4	△86.3	△18.0
순투자	2.5	2.3	0.2	15.5	△13.4	29.0
순차입	12.1	14.2	△2.1	83.9	72.9	11.0
순부채	1,254.3	1,182.4	71.9	1,254.3	1,182.4	71.9
GDP 대비 순부채(%)	75.7	74.4	1.3	75.7	74.4	1.3

자료: 영국 통계청, "Public Sector Finances," December 2013.

(자료 수집 및 정리: 하에스더 연구원)

 미국

1. 예산·결산 등

- FY2014 Omnibus(일괄세출법안) 상·하원 통과 후 공표(2014.1.17.)<sup>43)</sup>
  - 지난 1월 13일 합의된 바 있는 FY2014 Omnibus (2014년 일괄세출법안)는 상·하원 통과 후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공표됨
  - 하원 통과(2014.1.15.) → 상원 통과(2014.1.16.) → 대통령 서명(2014.1.17.)
- FY2015 대통령 예산안, 의회 제출 지연
  - 대통령 예산안의 의회제출 마감일은 매년 2월 첫 번째 월요일이지만 최근 몇 년간 기한을 지키고 있지 못하는 상황
  - FY2012(기한: 2011.2.7.): 2011년 2월 14일 제출
  - FY2013(기한: 2012.2.6.): 2012년 2월 13일 제출
  - FY2014(기한: 2013.2.4.): 2013년 4월 10일 제출
  - OMB(관리예산처)는 FY2014 예산 일정이 지연됨에

2. 기타

- 경제계획의 일환으로 소프트웨어교육 지원 계획 발표 (2014.2.4.)<sup>40)</sup>
  - 영국정부는 2014년 9월부터 초·중학교에 컴퓨팅 교과과정<sup>41)</sup>을 신설할 예정이며 사전작업으로 교사들에게 소프트웨어코딩법(coding)을 교육하기 위해 50만파운드를 지원할 예정
  - 다른 교사를 가르칠 400명의 '마스터 교사(Master Teachers)'를 고용할 수 있도록 영국컴퓨터학회(British Computer Society)에 2백만파운드 이상

40) 영국 재무부, <https://www.gov.uk/government/news/year-of-code-and-500000-fund-to-inspire-future-tech-experts-launched>

41) 새 컴퓨팅 교과과정은 기존의 단순 컴퓨터 활용능력을 가르친 ICT과목을 대체하여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코드짜기 등의 내용을 가르침

42) 컴퓨터 기술을 가르치는 교사 단체

43) THOMAS(<http://thomas.loc.gov/home/approp/app14.html>)



따라서 FY2015 대통령 예산안이 한 달 늦게 제출될 예정이라고 발표(2014.1.23.)<sup>44)</sup>

- 세출법안 통과 기한인 9월 30일을 3달 이상 넘긴 1월 13일에서야 FY2014 일괄세출법안이 통과되어 FY2014 예산 일정이 마무리 됨

## 2. 기타

- 미 재무부 장관 제이콥 루, 상·하원에 연방정부 채무 한도 관련 서신 전달<sup>45)</sup>

- 지난 10월 16일, 상·하원은 재원고갈 예상시점을 하루 앞두고 부채한도의 효력을 2014년 2월 7일까지 정지하는데 합의<sup>46)</sup>

- 이에 루 장관은 2월 말 연방정부의 부채가 한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니 의회가 그 전에 채무한도 상한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서신을 통해 전달

- 지난 12월 의회에 보낸 서신에서는 '디폴트에 빠질 소지가 있는 시점'을 '3월 초'로 언급했으나 이번 서신에서는 '2월 말'로 변경해 언급

- 이에 반해 재무부는 2월 말에 부채한도가 소진될 것으로 예상해 의회 예산처와 3개월 가량 차이가 남

- 2월 7일 이후 재무부가 몇 주 동안은 시간을 벌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어떤 '합리적인 시나리오'도 찾을 수 없는 바 신속한 부채한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

- 관리예산처(OMB), 「2013 PAYGO 보고서」 발표(2013. 1.24.)<sup>47)</sup>

- 「PAYGO법(2010)」은 의회의 매 회기(session)가 끝나고 14일 이내 관리예산처(OMB)가 예산점검표를 합산하여 보고서를 발행하고 일률삭감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

- 113대 연방의회 첫 번째 회기 동안 21개의 PAYGO 법안이 통과

\* Bipartisan Student Loan Certainty Act of 2013, Bipartisan Budget Act of 2013, Pathway for SGR Reform Act of 2013은 법안비용추계 제외대상

- 5년 예산점검표(5-year PAYGO scorecard)에 따르면 113대 연방의회 첫 번째 회기동안 제정된 PAYGO 법안은 향후 5년간(2014~2018) 매년 평균 2,500만달러 적자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

- 10년 예산점검표(10-year PAYGO scorecard)에 따르면 향후 10년간(2014~2023) 매년 평균 70만 달러 적자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

### <참고> 부채한도 증액시기 관련 입장: 재무부 vs. 의회 예산처

- CBO, 최대 6월까지 부채한도가 상한에 이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2013.11.20.)

- 재무부가 특별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세금 정산 마감일인 4월 15일을 전후로 소득세 세입이 늘어나 6월까지 예정된 지출을 출당할 만큼 세수확보가 가능하기 때문

44) <http://www.budget.senate.gov/republican/public/index.cfm/budget-background?ID=b2945e68-bfb9-4b1c-8084-2ec7195f761d>

45) 재무부(<http://www.treasury.gov/initiatives/Documents/Debt%20Limit%20to%20Congress%201-22-2014.pdf>)

46) 자세한 내용은 「2013년 하반기 KIPF 재정동향」을 참고

47) OMB(<http://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omb/assets/paygo/2013reportcomplete.pdf>)

- 일률삭감 필요 금액은 현재 0으로 전망

[그림 3] 2013 PAYGO 예산점검표(Scorecards)

STATUTORY ESTIMATES OF PAY-AS-YOU-GO LEGISLATION*												
in millions of dollars; positive amounts portray increases in deficits and negative amounts portray decreases in deficits												
* Uses Congressional estimates referenced in enacted legislation or OMB estimates if there are no references to the Congressional estimates.												
FYETs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13-18
Total budgetary effects of PAYGO legislation for the first session of the 113th Congress												
Net PAYGO impact:	0	57	4	171	-52	-55	149	-55	-79	-70	6	125
Then year PAYGO scorecard, current Congressional session: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Revenues from previous sessions of Congress:	-3,594	-3,594	-3,594	-3,594	-3,594	-3,594	-3,594	-3,594	-3,594	-3,594	-3,594	-3,594
Total, one-year PAYGO scorecard:	9,361	9,361	9,361	9,361	9,361	9,361	9,361	9,361	9,361	9,361	9,361	9,361
Then year PAYGO scorecard, current Congressional session:	7	7	7	7	7	7	7	7	7	7	7	7
Revenues from previous sessions of Congress:	-8,215	-8,215	-8,215	-8,215	-8,215	-8,215	-8,215	-8,215	-8,215	-8,215	-8,215	-8,215
Total, one-year PAYGO scorecard:	-8,208	-8,208	-8,208	-8,208	-8,208	-8,208	-8,208	-8,208	-8,208	-8,208	-8,208	-8,208
Potential Sequestration, end of session:	0	0	0	0	0	0	0	0	0	0	0	0

■ CBO, FY2015 예산기준선(baseline) 전망<sup>4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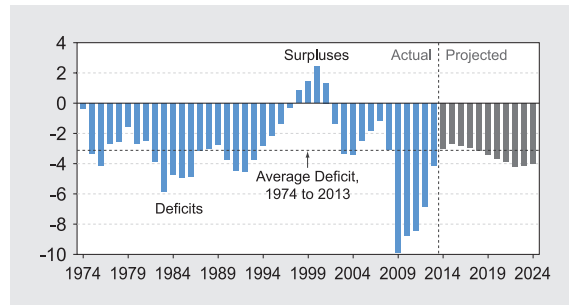
- (재정전망) 연방정부의 FY2014 재정적자는 5,140억 달러(GDP 대비 3.0%)로 전년에 비해 개선. 재정적자는 FY2015까지 감소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재정적자 감소는 세금 감면 기한 완료 및 경제회복으로 인한 세입 증가에 기인. FY2014 세입은 9%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비정부부문이 소유한 채무는 GDP 대비 73.6%로 1950년대 이후 최고치. FY2017까지 감소하지만 FY2018부터 증가추세로 전환하며 FY2024에는 79.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표 17> CBO, 재정 전망 2014~2024

(단위: 십억달러, %)

구분	FY2013	FY2014	FY2015	FY2016	FY2017	FY2018
수입	2,774	3,029	3,305	3,481	3,631	3,770
(GDP %)	(16.7)	(17.5)	(18.2)	(18.2)	(18.1)	(18.0)
지출	3,454	3,543	3,783	4,020	4,212	4,425
(GDP %)	(20.8)	(20.5)	(20.9)	(21.1)	(21.0)	(21.1)
재정수지	△680	△514	△478	△539	△581	△655
(GDP %)	(△4.1)	(△3.0)	(△2.6)	(△2.8)	(△2.9)	(△3.1)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	11,982	12,717	13,263	13,861	14,507	15,218
(GDP %)	(72.1)	(73.6)	(73.2)	(72.6)	(72.3)	(72.6)
구분	FY2019	FY2020	FY2021	FY2022	FY2023	FY2024
수입	3,932	4,104	4,288	4,490	4,702	4,926
(GDP %)	(18.0)	(18.0)	(18.1)	(18.1)	(18.2)	(18.4)
지출	4,684	4,939	5,200	5,522	5,749	6,000
(GDP %)	(21.4)	(21.7)	(21.9)	(22.3)	(22.3)	(22.4)
재정수지	△752	△836	△912	△1,031	△1,047	△1,074
(GDP %)	(△3.4)	(△3.7)	(△3.8)	(△4.2)	(△4.1)	(△4.0)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	16,028	16,925	17,899	19,001	20,115	21,260
(GDP %)	(73.3)	(74.2)	(75.3)	(76.8)	(78.0)	(79.2)

[그림 4] 미국 재정적자 추이(GDP 대비 %)



48) CB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Fiscal Years 2014 to 2024*, <http://www.cbo.gov/publication/45010>



- (경제전망) 2014년 성장률은 3.1%로 2016년까지 3%대 성장세를 유지할 것. 그러나 2017년까지 잠재 성장률이 실질 GDP 성장률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
- (실업률) 2017년까지 실업률은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경기회복으로 인한 노동참여율 증가로 실업률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금리) 연준이 2015년 중반까지는 단기금리를 낮게 유지하며 장기금리는 점진적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

- 제이콥 루 재무부 장관은 부채한도 관련 협상을 적절한 시점에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서신을 의회에 전달(2014.2.7.)<sup>50)</sup>
- 만약 2월 27일까지 한도상향이 이뤄지지 않으면 잔여 현금 500억달러와 세입만으로 지출을 충당하지 못해 디폴트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의회에 경고
- 상·하원은 부채한도 효력정지를 2015년 3월 15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Temporary Debt Limit Extension Act)을 통과시킴(하원은 2.11, 상원은 2.12. 통과)
- 부채한도 기한 연장에 다른 조건을 붙이지 않았으며 대통령 서명을 거치면 부채한도 효력정지가 바로 시작됨

〈표 18〉 CBO, 경제 전망 2014~2024

(단위: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2024
	Estimated	Forecast				Projected Annual Average
실질 GDP 성장률 <sup>1)</sup>	2.1	3.1	3.4	3.4	2.7	2.2
실질 잠재 성장률 <sup>1)</sup>	1.7	1.8	2.0	2.2	2.4	2.2
CPI <sup>1)</sup>	1.2	1.9	2.1	2.1	2.3	2.4
실업률 <sup>2)</sup>	7.0	6.7	6.3	6.0	5.8	5.5
금리 <sup>2)</sup>						
90일(Treasury bills)	0.1	0.2	0.4	1.8	3.3	3.7
10년(Treasury notes)	2.4	3.1	3.7	4.3	4.8	5.0

주: 1) 전년비  
2) 연평균

- 미 의회, 부채한도 효력정지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법안 통과<sup>49)</sup>
  - 부채한도 효력정지 기한(2.7.)까지 부채한도 협상이 진행되지 않음

〈참고〉 Temporary Debt Limit Extension Act

1.Short title

This Act may be cited as the Temporary Debt Limit Extension Act.

2.Temporary extension of public debt limit

(a) In general

Section 3101(b) of title 31, United States Code, shall not apply for the period beginning on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Act and ending on March 15, 2015.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지혜 연구원)

49) 의회정보시스템GovTrack(<https://www.govtrack.us/congress/bills/113/s5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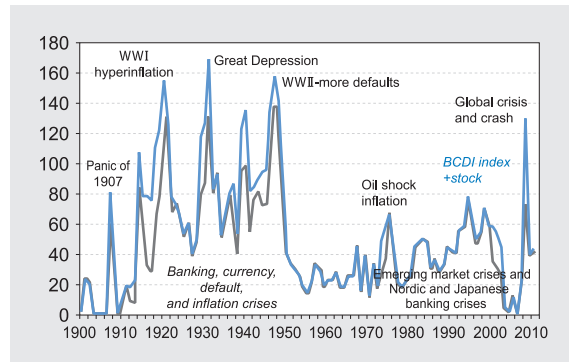
50) 재무부(<http://www.treasury.gov/initiatives/Documents/Debt%20Limit%20Letter%2020020714.pdf>)

국제기구 주요 보고서

1. IMF, Financial and Sovereign Debt Crises: Some Lessons Learned and Those Forgotten (2013.12.31.)<sup>51)</sup>

- 경제위기에 대한 선진국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하고 국가 부채 감축을 위한 방법을 분석
  - 대부분의 선진국은 재정긴축과 경제성장을 통해 부채감축 및 경기회복을 달성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음
    - 선진국의 경우 공공의 신뢰 유지를 위해 신흥국가에서 사용되는 부채 및 인플레이션 조정, 자본통제 등의 금융억압(Financial Repression) 정책을 기피함
  - 선진국의 부채 현황을 분석하고, 부채 감축을 위한 방법 및 경제위기의 순서를 도식화 함
- 1900~2010년 세계 경제위기를 각국의 소득 점유율에 가중치를 두고, BCDI index<sup>52)</sup>와 주가를 반영한 값을 산출하여 연도별 위기의 규모를 분석
  - BCDI index와 주식시장 문제를 반영했을 경우 경제위기는 더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남
    - 1907년 경제공황, 제1차 세계대전 초인플레이션, 제2차 세계대전 디플트, 오일쇼크로 인한 인플레이션, 글로벌금융위기 등 7차례 심각한 경제위기가 발생했었음
  - 금융억압이 있었던 1945~1979년 기간 동안 위기의 상황이 현저하게 적었던 것으로 나타남

[그림 5] 1900~2010년 세계 경제위기



자료: IMF, Financial and Sovereign Debt Crises: Some Lessons Learned and Those Forgotten, Figure 1.

- 선진국의 부채과잉(Debt overhang)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고, 부채규모 및 리스크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언급
  - 선진국의 1970~2011년간 GDP 대비 공공 및 민간의 총대외부채는 점차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남
    - 선진국의 부채규모는 [그림 2]와 같이 오히려 신흥국에 비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2009년 선진국의 총대외부채는 GDP 대비 250% 이상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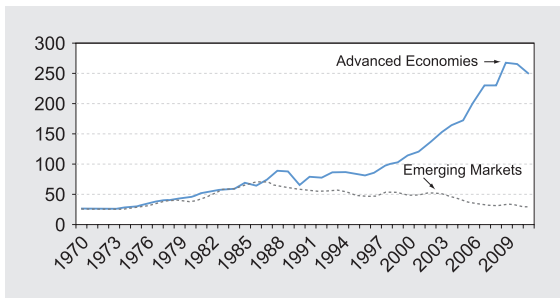
51) <http://www.imf.org/external/pubs/ft/wp/2013/wp13266.pdf>

52) BCDI index는 Banking, Currency, Default, Inflation crises를 말함. 66개 국가, 396개의 경제위기 사건에 대해 0~5 사이의 값을 부여하여 산출



[그림 6] 1970~2011년 GDP 대비 공공 및 민간 총대외부채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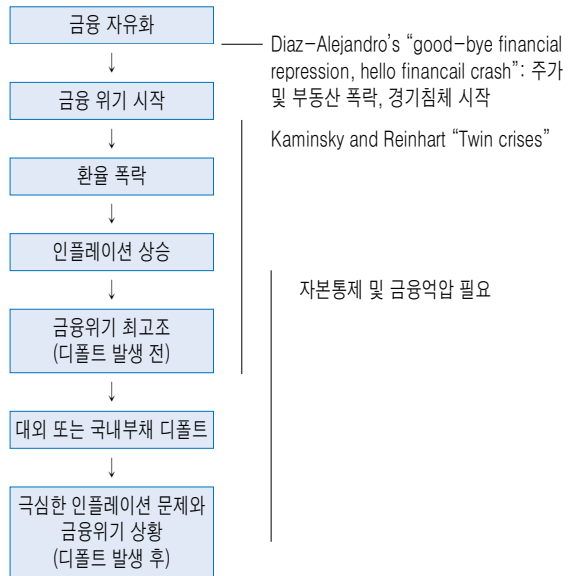
주: 1. 선진국 22개국과 신흥국 25개국의 대외부채(External debt)를 분석  
 2. 장기 데이터 사용 및 노령연금과 의료급여 부채를 포함하여 분석하기 위해 순 정부부채(Net government debt) 대신 총국가부채(Gross government debt) 데이터를 사용  
 자료: IMF, *Financial and Sovereign Debt Crises: Some Lessons Learned and Those Forgotten*, Figure 4.

■ 각 국가들의 부채 감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소개

- 부채 감축을 위한 방법: ① 경제성장 ② 긴축재정 (Fiscal adjustment-austerity) ③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Inflation surprise) ④ 명시적 디폴트 (Explicit (de jure) default)나 구조조정 ⑤ 인플레이션 조정을 동반한 금융억압
- 제2차 세계대전 전에는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 방법으로 부채를 감축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인플레이션 조정을 동반한 금융억압의 방법을 사용
  - \* 국가별 경제위기 대응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 참고
- 현재 선진국들의 부채규모를 고려하면 인플레이션 조정을 동반한 금융억압의 방법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
  - 그러나 최근 선진국들은 공공신뢰 유지를 위해 명시적 디폴트나 구조조정, 인플레이션 조정을 동반한 금융억압 정책은 피하고 있음

- 위기 진행 순서를 도식화 하고, 선진국들은 기존과 다른 부채 감소 방법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금융 자유화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위기의 진행은 [그림 3]과 같음
  - 신흥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인플레이션 조정, 금융억압 등의 정책이 부채 과잉 해결에 효과적임

[그림 7] 위기의 진행 순서(The Sequencing of Crises)



자료: IMF, *Financial and Sovereign Debt Crises: Some Lessons Learned and Those Forgotten*, Figure 7.

주요 보고서

1. IMF, Reforming Tax Expenditures in Italy: What, Why, and How?(2014.1.16.)<sup>53)</sup>

- 재정건전화와 최적의 세금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이탈리아의 조세지출(tax expenditures) 사례를 통해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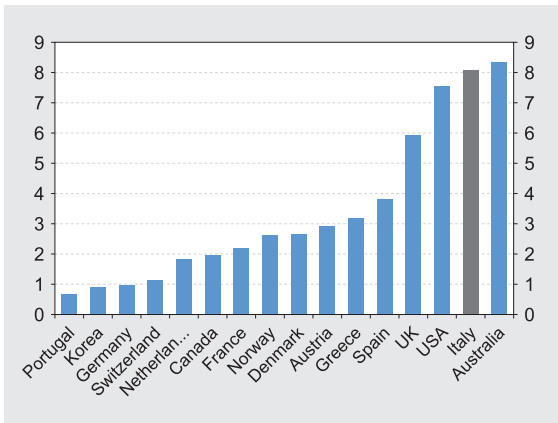
53) <http://www.imf.org/external/pubs/cat/longres.aspx?sk=41261.0>

세지출에 대해 연구

- 조세지출은 재정지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특례 규정에 의한 세금 감면을 의미<sup>54)</sup>
  - 개인이나 기업에게 원칙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지만 정부가 비과세·감면·공제 등의 세제상의 각종 유인장치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 조세지출은 공제, 면제, 특혜적 세율 완화, 과세이연(tax deferrals) 등의 형태로 나타남
- 선진국들 중 특히 이탈리아의 조세지출 규모는 2010년 기준 GDP 대비 7% 이상으로 높은 수준임

[그림 8] 선진국의 조세지출 비율

(단위: GDP 대비 %)



자료: OECD, United States, National Commission on Fiscal Responsibility and Reform (2010)

(자료 수집 및 정리: 박신아 연구원)

54)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news/news05a.jsp?actionType=view&runno=6608>



## | 정책 흐름 |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
- 벤처기업 스톡옵션 소득에 대한 세제지원방안 마련
- 2013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 경제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 결과
- '12년말 공공부문 부채 산출 결과
- 2014년도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 확정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

\* 본 자료는 2014년 2월 10일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회계결산과, 국고국 국고과, 세제실 조세분석과에서 발표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 10(월) 11:40 감사원의 김병철 감사위원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3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하였음

\*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의 의의: 한 회계연도의 출납사무를 종결하고, 정부 전체의 세입·세출 실적과 세계잉여금 규모를 계수적으로 확정

- 마감 결과, 총세입은 292.9조원, 총세출은 286.4조원, 그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6.5조원 발생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7.2조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Delta 0.8$ 조원임

- 총세입 292.9조원은 일반회계에서 232.4조원(당초 예산액 240.7조원 대비 8.3조원 적게 징수), 특별회계에서 60.5조원(당초 예산액 63.2조원 대비 2.7조원 적게 징수) 발생
- 총세출 286.4조원은 일반회계에서 229.5조원(예산현액 242.9조원\* 대비 94.5%)이 집행되었고, 특별회계에서 56.9조원(예산현액 68.9조원\*\* 대비 82.5%)이 집행되었음

\* 예산현액(242.9조원)=예산액(240.7조원)+전년도 이월액(2.2조원) 등

\*\* 예산현액(68.9조원)=예산액(63.2조원)+전년도 이월액(5.6조원) 등

- 국세수입은 201.9조원으로 예산(210.4조원) 대비

$\Delta 8.5$ 조원이 부족

- 정부 전망('13. 9월, 추경예산 대비  $\Delta 7$ 조~8조원 수준) 범위 내에서 부족분 발생

※ '13년 실질성장률(잠정)이 2.8%인데 '13년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감소한 이유

- ① '12년 경기침체에 따른 법인세의 부진
- ② 경기와 관련이 적은 자산관련 세목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의 부진
- ③ 이월세수\* 영향에 따른 '12년 국세수입의 증가 효과

\* '11.12.31일이 토요일로 인해 '12.12일(월)에 이월되어 납부된 실질적인 '11년 세수

- 세입부족 등에 따른 불용액은 일반회계에서 10.5조원, 특별회계에서 7.6조원이 각각 발생하였음

- 전출금(일반회계 → 특별회계) 등 회계·계정 간 거래를 제외한 전체 순불용규모는 14.2조원에 해당

- 그간 정부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일반회계에서 인건비·경상경비 절감 및 미집행 예비비로 인한 가용재원과 기금유여자금 등 대체재원으로 확보한 6조원 내외를 활용하여 불용처리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적으로 뒷받침하였음

- 이에 따라 사실상 불용분은 일반·특별회계 각각 3조~4조원 내외 수준으로, 과거 실적에 비추어 세

입부족 등에 따른 통상적인 불용수준에 해당됨

- 결산상잉여금은 6.5조원 흑자이나 이월액 7.2조원을 뺀 세계잉여금은 0.8조원 적자를 기록하였음
  - 일반회계에서는 813억원의 흑자가 발생하였으나,
  - 특별회계에서 8,365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음
    - 이는 “세입 없는 세출이월”이 가능한 특별회계의 특성에 따른 것이며, 주로 농특회계 적자에 기인
- ※ 세계잉여금은 과다·과소보다는 “0”에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재정건전성의 판단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
- 정부는 '13년 하반기의 어려웠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14년도 상반기 예산조기집행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며, 연초부터 현재까지 순조롭게 집행되고 있음
  - \* '14 조기집행 목표: 상반기 55%(1분기 28%)

**붙임 1** '13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회계결산과)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 총세입 292.9조원(예산 대비 3.6% 부족), 총세출 286.4조원(예산현액 대비 91.9% 집행)  
 • 세계잉여금은 △0.8조원(일반회계 813억원, 특별회계 △8,365억원)

- 총세입·총세출
  - 총세입 292.9조원, 총세출 286.4조원이며, 이월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총 △0.8조원(일반회계 813억원, 특별회계 △8,365억원)
  - \* 세계잉여금 = 결산상잉여금 - 이월액

(단위: 억원)

구 분	예산액	세입액 (A)	세출액 (B)	결산상 잉여금 (C=A-B)	이월액 (D)	세계 잉여금 (C-D)
합 계	3,038,475	2,928,727	2,864,051	64,676	72,230	△7,554
(2012)	2,826,873	2,823,704	2,747,611	76,093	77,577	△1,484
일반회계	2,406,702	2,323,929	2,295,443	28,486	27,673	813
(2012)	2,231,384	2,237,034	2,206,878	30,156	21,623	8,533
특별회계	631,773	604,798	568,607	36,191	44,556	△8,365
(2012)	595,490	586,670	540,733	45,937	55,954	△10,017

- **(세입)** 292.9조원으로 예산(303.8조원) 대비 10.9조원 미징수
  - **(일반회계)** 예산 대비 8.3조원(△3.4%) 부족한 232.4조원 징수
    - ※ 국세수입(△7.5): 법인세 △21, 소득세 △20, 증권거래세 △1.5 등
    - 세외수입(△0.8)
  - **(특별회계)** 예산 대비 2.7조원(△4.3%) 부족한 60.5조원 징수
    - ※ 국세수입(△1.0), 세외수입(△1.7)
- **(세출)** 286.4조원으로 예산현액(311.8조원) 대비 91.9% 집행
  - **(일반회계)** 예산현액(242.9조원\*) 대비 94.5%인 229.5조원 지출
    - \* 예산액(240.7조원), 전년도 이월액(2.2조원) 등
  - **(특별회계)** 예산현액(68.9조원\*) 대비 82.5%인 56.9조원 지출
    - \* 예산액(63.2조원), 전년도 이월액(5.6조원) 등
- **(이월·불용)** 이월액 7.2조원, 불용액 18.1조원\*으로 전년 대비 이월은 0.5조원 감소, 불용은 12.4조원 증가
  - \* 전출금 등 계정간 거래를 제외한 순불용액은 14.2조원

(단위: 억원)

구분	이월액			불용액		
	2013년 (A)	2012년 (B)	증감 (A-B)	2013년 (C)	2012년 (D)	증감 (C-D)
합계	72,230	77,577	△5,347	181,357	57,221	124,136
일반회계	27,673	21,623	6,050	105,428	25,847	79,581
특별회계	44,556	55,954	△11,398	75,930	31,374	44,556

\* 이월: (일반회계) 교육부(0.8), 안전행정부(0.8), 국방부(0.5) 등  
(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2.3), 광역지역발전(1.2), 혁신도시건설(0.3) 등  
\* 불용: (일반회계) 기획재정부(2.9), 국토교통부(1.6), 교육부(1.0) 등  
(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3.4), 교통시설(1.4), 에너지및자원사업(0.6) 등

■ **(세계잉여금)** △0.8조원(일반회계 813억원, 특별회계 △8,365억원)

- 일반회계 세계잉여금(813억원)은 국가채정법(§ 90)에 따라 교부세 정산, 국가채무상환 등에 사용(특별회계는 자체세입 조치)

\*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정부결산을 완료한 후, 국가채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 채무상환, 다음연도 세입이입 등에 사용할 수 있음

\*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각 회계별 법령에 근거하여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

**붙임 2** '13회계연도 국세수입 개관(조세분석과)

1. 2013년 국세수입

- 2013년 국세수입: 201.9조원
  - 2013년 국세세입 예산(210.4조원) 대비 △8.5조원 (△4.0%) 부족  
→ '12년 경기 침체에 따른 법인세의 부진과 '13년 자산시장(부동산·주식) 침체에 따른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등의 부진에 주로 기인
  - 2012년 국세수입 실적(203.0조원) 대비 △1.1조원 (△0.5%) 감소

2. 회계별 국세수입 내역

(단위: 조원, %)

구분	'12년 실적	2013년		'12년 실적대비		'13년 예산대비	
		예산	실적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총국세	203.0	210.4	201.9	△1.1	△0.5	△8.5	△4.0
일반회계	196.2	202.9	195.4	△0.8	△0.4	△7.5	△3.7
특별회계*	6.9	7.5	6.5	△0.3	△4.8	△1.0	△13.1

\* 특별회계: 주세(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 주요 세목별 증감 사유(전년 대비)

<증가 세목>

① 근로소득세: +2.3조원 증가

- 취업자 수 증가 및 명목임금 상승 등에 기인

\* 취업자 수: ('12) 2,468만명 → ('13) 2,507만명 (+1.6%)

\* 전체근로자 월평균임금(11월 누계): ('12) 295만원 → ('13) 307만원 (+4.0%)

② 종합소득세: +1.0조원 증가

- 자영업자 신고소득 증가와 최고세율 과표구간 신설 등에 기인

\* 종합소득 신고과세표준: ('11귀속) 84.1조원 → ('12귀속) 84.5조원 (+0.5%)

\* '12년 발생소득부터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3억원 초과, 38%) 적용

③ 관세: +0.7조원 증가

- 불합리한 관세환급제도 개선 등 과세제도의 정상화 노력

\* 관세환급액: ('12) 5.1조원 → ('13) 4.3조원

④ 증여세: +0.4조원 증가

- '13년 최초 시행된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에 기인

- ⑤ 부가가치세: +0.3조원 증가
- 민간소비 증가에 주로 기인
  - \* '13년 민간소비증가율(잠정): +1.9%

〈감소 세목〉

- ① 법인세: △2.1조원 감소
- 법인의 영업실적 감소와 '12년 이월세수 영향 등에 기인
  - \*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 ('11귀속) 61.1조원 → ('12귀속) 58.8조원 (△3.8%)
  - \* '12년 '법인세' 이월세수('11.12.31 → '12.1.2): 0.4조원

- ② 과년도수입\*: △1.0조원 감소
- \* 과세관청이 고지하는 세금으로 고지서 발행일이 속하는 해에 납부되면 해당세목으로 분류되나, 그 이후에 납부되면 해당세목과 관계없이 과년도수입으로 계상
  - '12년 이월세수 영향으로 감소하였으나, 이월세수 영향 제외시는 체납정리 노력 등으로 +0.3조원 증가
  - \* '12년 '과년도수입' 이월세수('11.12.31 → '12.1.2): 1.3조원

- ③ 양도소득세: △0.8조원 감소
-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에 주로 기인
  - \* 주택가격매매지수: ('12) 100.5 → ('13) 100.1 (△0.4%)
  - \* 지가지수: ('12) 101.3 → ('13) 100.7 (△0.6%)

- ④ 교통·에너지·환경세: △0.6조원 감소
- '12년 이월세수 영향으로 감소하였으나, 이월세수 영향 제외시는 휘발유·경유 소비량 증가로 +0.3조원 증가
  - \* '12년 '교통·에너지·환경세' 이월세수('11.12.31 → '12.1.2): 0.9조원
  - \* 휘발유 소비량: ('12) 71,765천Bbl → ('13) 73,363천Bbl (+2.2%)
  - \* 경유 소비량: ('12) 136,725천Bbl → ('13) 142,699천Bbl (+4.4%)

- ⑤ 증권거래세: △0.6조원 감소
- 주식거래대금 감소에 기인
  - \* 유가증권 시장 주식거래대금: ('12) 1,196조원 → ('13) 986조원 (△17.6%)
  - \* 코스닥 시장 주식거래대금: ('12) 528조원 → ('13) 450조원 (△14.8%)

4. 세목별 국세수입실적

(단위: 조원, %)

구분	'12년 실적	2013년		'12년 실적 대비		'13년 예산 대비	
		예산	실적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총국세	203.0	210.4	201.9	△1.1	△0.5	△8.5	△4.0
• 소득세	45.8	49.8	47.8	+2.1	+4.5	△2.0	△3.9
- 종합소득세	9.9	10.7	10.9	+1.0	+9.7	+0.2	+1.6
- 근로소득세	19.6	22.2	21.9	+2.3	+11.7	△0.2	△1.1
- 양도소득세	7.5	7.5	6.7	△0.8	△10.7	△0.8	△11.3
• 법인세	45.9	46.0	43.9	△2.1	△4.5	△2.1	△4.6
• 상속증여세	4.0	4.7	4.3	+0.3	+6.7	△0.4	△9.4
• 부가가치세	55.7	56.6	56.0	+0.3	+0.5	△0.6	△1.1
• 개별소비세	5.3	5.9	5.5	+0.1	+2.8	△0.4	△6.3
• 증권거래세	3.7	4.5	3.1	△0.6	△16.4	△1.5	△32.2
• 인지세	0.6	0.6	0.6	-	+5.9	-	△0.8
• 과년도수입	5.8	5.6	4.8	△1.0	△17.2	△0.9	△15.4
• 교통에너지환경세	13.8	13.0	13.2	△0.6	△4.1	+0.2	+1.9
• 관세	9.8	10.3	10.6	+0.7	+7.6	+0.3	+2.8
• 교육세	4.6	4.8	4.5	△0.1	△2.7	△0.3	△5.3
• 종합부동산세	1.1	1.1	1.2	+0.1	+8.2	+0.1	+11.8
• 주세	3.0	3.0	2.9	△0.1	△1.7	△0.1	△2.9
• 농특세	3.9	4.5	3.6	△0.3	△7.2	△0.9	△20.1

붙임 3 불용액 발생 사유 및 대응(국고과)

- 결산서상 총세출의 불용액 18.1조원(일반 10.5+특별 7.6)은 각 회계 불용액을 단순 합산한 「총계기준」 수치임
- 회계간 중복\*(3.9조원)을 제거한 「순계기준」에 따르면 실제 총불용액은 14.2조원임

\* (예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출하는 전출금 3.1조원 등

- 불용액이 '12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은 기본적으로 세수부족에 따른 결과임
- 그간 정부는 '13년 상반기부터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세수보전대책을 수립하고 예산사업 집행에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였음
- 우선 일반회계에서 세입부족에 따라 발생하는 결산상 불용액(10.5조원)을 살펴보면
  - 인건비·경상경비 절감 및 미집행 예비비로 인한 가용재원과 기금여유자금 등 대체재원으로 확보한 6조원 내외를 활용하여 세입재원 없이도 정상적인 사업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음
  - 이에 따라 사실상 불용규모는 4조원 내외로서, 이는 통상적인 불용수준(2.5조~4.1조원)에 해당됨

- 다음으로 특별회계 불용액은 회계간 중복치(기금간 전출금 3.9조원)를 제외하면 사실상 불용규모 3.7조원 수준으로 세수부족만큼 발생한 것임

\* 특별회계 세입부족액  $\Delta 4.5\text{조} = \text{불용 } 3.7\text{조} + \text{재원없는 이월 } 0.8\text{조}$

#### 붙임 4 세계잉여금 적자 발생 원인(회계결산과)

- 금번 세계잉여금 적자는 특별회계의 세입부족에 따른 것임
  - \* 세계잉여금 적자  $\Delta 7,554\text{억원} = 813(\text{일반회계}) + \Delta 8,365(\text{특별회계})$
- 주요 원인은
  - ① 경기침체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등 국세수입의 감소와 이에 따른 특별회계로의 전입금 부족과 농특세 등 특별회계 자체 세입부족
  - ② 특별회계의 '세입재원 없는 이월'에 기인

\* 일반회계는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제7항 규정에 따라 세계잉여금 적자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임(세출예산의 이월사용 제한)

- 세계잉여금 적자규모가 가장 큰 농특회계의 적자 발생의 원인은
  - 세입측면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 $\Delta 0.5\text{조원}$ ), 농특세 징수액 감소( $\Delta 0.9\text{조원}$ ) 등으로 세입이 덜 걷힌 반면(약 2조원)
  - 세출측면에서는 농특회계 특성상 계속비 사업이 많아서 이월규모가 크게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세계잉여금 적자가 발생

\* 18개 특별회계( $\Delta 8,365\text{억원}$ ) = 농특회계( $\Delta 17,964$ ) + 광특회계( $\Delta 6,306$ ) + 우체국예금특별회계(10,070)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2,726) 등

- 정부는 '12년 농특세 실적(3.9조원)부진을 감안하여, '13년도 예산을 대폭 축소하였고, '14년 예산도 보수적으로 추계하여 반영

\* '12년 5.5조원 → '13년 4.5조원 → '14년 4.2조원

- 앞으로도 적정 세입·세출 편성노력을 강화함으로써 세계잉여금이 균형수준(0)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

#### 붙임 5 세계잉여금과 재정건전성 판단(회계결산과)

- 세계잉여금은 과다·과소한 것보다 '0'으로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재정건전성은 재정수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제기준에도 부합
  - 세계잉여금 계산시에는 재정수지 계산시 고려하지 않는 국채발행액과 이월액까지 고려되므로 재정건전성 판단의 기준으로 부적절

$$\begin{array}{l}
 \boxed{\text{국세수입}} + \boxed{\text{국채 발행액}} - \boxed{\text{세출액}} = \boxed{\text{결산상 잉여금}} \\
 \boxed{\text{결산상 잉여금}} - \boxed{\text{이월액}} = \boxed{\text{세계 잉여금}} \\
 \boxed{\text{국세수입}} - \boxed{\text{세출액}} = \boxed{\text{재정수지}}
 \end{array}$$

- 국채발행액이 커지거나 이월액이 작아지면 세계잉여금이 커지는 구조임

### 세계잉여금 및 통합재정수지 추이

(단위: 조원)

	'08	'09	'10	'11	'12	'13
○ 세계잉여금	6.5	6.5	7.8	6.5	△0.1	△0.8
- 일반회계	4.6	3.6	6.0	5.1	0.9	0
- 특별회계	1.9	2.9	1.8	1.4	△1.0	△0.8
○ 통합재정수지	15.8	△17.6	16.7	18.6	18.5	미확정
○ 적자국채 발행규모	7.4	35.0	23.3	16.5	13.8	24.5

→ 세계잉여금은 '09년이 크지만,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작은 '13년이 '09년보다 재정이 건전했다고 봄

- 또한 세계잉여금은 포괄범위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한정되고 기금은 제외하므로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대표하기에 한계가 있음

\* 재정수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금융성기금 제외) 모두 포함

# 벤처기업 스톡옵션 소득에 대한 세제지원방안 마련

\* 본 자료는 2014년 2월 5일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발표한 「벤처기업 스톡옵션 소득에 대한 세제지원방안 마련」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정부는 2. 5(수),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스톡옵션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의결하였음
- 그동안 정부에서는 스톡옵션 행사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현행 방식이 근로자에게 과도한 세금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3년간 분할납부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음(13. 8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그러나, 동 개선안 이후에도 새누리당 창조경제특위(위원장 김학용 의원), 청년특위 등에서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를 취득주식 양도시 과세하는 미국식 방식의 도입을 계속하여 건의하여 왔음
- 정부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우 상장주식 양도차익이 대주주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등 미국 제도와 차이가 있으므로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 벤처기업 등의 요구가 지속되는 점을 감안하여 국세청, 금융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 과세가 가능하도록 스톡옵션을 구분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임
- 해당 방안은 2월 중 국회에 제출되어 입법을 추진할 계획

## 참고 스톡옵션 과세제도 개선방안

### 1. 추진배경

- **(현행)** 근로자가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시가보다 낮게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행사이익을 행사시 근로소득으로 과세
  - 기업에 대하여는 행사시 발생하는 비용을 손금(인건비)으로 인정
    - 다만, 벤처업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불인정
    - \* 자기주식 교부형, 현금정산형 스톡옵션에 대하여만 손금처리 인정
  - 별도로,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은 처분시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으로 과세
    - \* 상장주식의 경우 지분 2% 또는 50억원(코스닥 4%, 4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나머지의 경우는 비과세

현행 스톡옵션 과세체계

구분	옵션교부	옵션행사	주식처분
	1만주, 주당 1만원 (이익 없음)	1만주 1만원 (시가 3만원)에 취득 (행사이익 2억원*)	1만주 4만원에 매각 (양도차익 1억원**)
개인	과세 없음	근로소득(2억원) 과세 (세율 6~38%)	양도소득(1억원) 과세 (세율 20%, 중소기업은 10%)
기업	과세 없음	인건비(2억원*) 비용 처리	과세 없음

\* 2억원=1만주×(시가3만원-옵션가액 1만원)

\*\* 1억원=1만주×(시가4만원-취득가액 3만원)

■ **(기 개선방안)** 행사시점에서 과세시 옵션행사에 따른 자금부담이 과도해지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3년 분할납부 허용('13. 8월)

■ **(추가 제기사항)** 스톡옵션 행사시 자금부담이 여전히 부담이 높고, 추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미 실현 이익에 과세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  
 • 또한, 주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은 신주 발행형 스톡옵션 행사비용의 손금불인정시 이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의견

2. 개선내용

①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선택적 과세 허용(조특법 개정)

• **(개요)** A) 근로소득세로 과세하는 현행방식과, B) 적격요건 충족시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방식 중 택일 허용

• **(적격요건)**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여받은 스톡옵션  
 ② 스톡옵션 행사시 부여받은 주식을 1년간 보유  
 ③ 연간 행사금액 1억원 이하\* 등

\* 미국식 Qualified Stock Option 제도(연간10만불 한도)와 동일한 방식

• **(B의 과세방식)** 행사시점이 아닌 처분시점에 양도

세(20%, 중소기업 10%)로 과세하되, 스톡옵션을 부여한 기업에 인건비 손금산입을 인정하지 않음

※ 양도세 방식은 위 적격요건을 충족한 경우만 허용하고, 미 충족시 근로소득 과세

• **(관리방안)** 양도소득세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스톡 옵션 전용금융계좌를 통하여 거래하도록 하여, 추후 상장되더라도 과세될 수 있도록 관리

◇ “스톡옵션 전용금융계좌” 도입(안)

• **(도입취지)** “스톡옵션 전용금융계좌”를 도입하여 행사시 취득한 주식을 여타 주식과 구분관리함으로써 동 주식의 처분시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 가능하도록 함

※ 스톡옵션 전용금융계좌 적용(안)

- 옵션 행사시: 부여회사가 세무서에 주식 교부 내역 및 과세방식 신고

☞ (근로자) “스톡옵션 전용금융계좌”에 부여받은 주식을 보관하고, 동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

☞ (증권회사) 연간 스톡옵션 전용금융계좌 거래내역정보를 과세관청에 제공

- 주식 양도시: 주식을 양도한 근로자가 주식 양도소득으로 신고·납부

\* 과세관청은 근로자의 신고자료와 증권회사의 거래내역을 상호 대사하여 적정과세 검증

② 신주발행형 스톡옵션 손금산입 인정(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 현행 과세방식을 선택(A)하는 경우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에 대해 기업에 손금으로 인정하여 세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신주발행형 스톡옵션 활용 지원

◇ 제도개선에 따른 세부담 비교(예)

(예) 행사가격 3억원의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3년근무후 시가 10억원인 시점에 3년에 걸쳐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15억 원에 처분

	종 전	변경 후	
		A 선택	B 선택
개인	근로소득세 2.1억원* + 양도소득세 0.5억원 → 총 2.6억원 소요 * 실효세율 30% 가정	근로소득세 2.1억원* + 양도소득세 0.5억원 → 총 2.6억원 소요 * 실효세율 30% 가정	양도소득세 1.2억원 소요
회사	7억원 손금 불인정 → 법인세 감소 없음	7억원 손금 인정 → 법인세 1.4억원 감소 * 세율 20% 가정	7억원 손금 불인정 → 법인세 감소 없음
세부담	2.6억원	1.2억원	1.2억원

→ (기대효과) 스톡옵션이 인재유치를 위한 유리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

- (A 선택시)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추가비용 없이 스톡옵션 부여 가능)
- (B 선택시)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근로자의 세부담이 완화되고, 사업 초기에 이익이 많지 않아 법인세 부담이 없는 벤처기업이 활용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의 손금산입도 금년중 마무리

3. 향후 추진일정

- (조특법)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 간 선택을 허용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2월중 국회에 제출
  - 스톡옵션 전용금융계좌 시스템 조기 구축(증권금융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
  - \* 시스템 구축에 6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

## 2013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 본 자료는 2014년 2월 18일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에서 발표한 「2013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 후속조치로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1. 24)한 바 있으며

\* 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부가가치세법·개발소비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인지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세기본법·조세특례제한법·조세범처벌절차법·세무사법·농어촌특별세법·교육세법·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종합부동산세법·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특례법·관세사법·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 시행령·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 법제처 심사(1. 24~2. 11), 입법예고(1. 24~2. 10) 및 부처협의(1. 24~2. 3) 등을 거쳐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 이에 따라 입법예고 의견을 반영하고 법제처·규제위 심사과정에서 당초 발표된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일부 수정하였음

• 시행령 수정안은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오는 2. 21일 공포 예정임

**별첨** 2013년 세법시행령 수정사항

① 교육비 공제대상 방과후수업 교재비 범위 조정(소득령 §118의6)

당 초 안	수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비 공제대상 방과후수업 교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구입) 도서+기타교재 구입비</li> <li>• (학교외 구입) 도서 구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정비</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대상 방과후수업 교재비 범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구입) 도서 구입비</li> <li>• (좌 등)</li> </ul> </li> </ul>

**수정이유** 방과후수업 교재의 범위를 조정하여 복잡한 제도 간소화

② 부녀자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결정방법 신설(조특령 §100의8)

당 초 안	수 정 안
※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부녀자 소득공제 중복적용 배제	■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부녀자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녀자 소득공제에 따라 감소한 세액을 차감후 근로장려금 결정</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일반적으로 결정할 근로장려금                          (-) (부녀자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부녀자공제를 적용한 경우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div>

**수정이유** 부녀자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③ 고소득 작물재배업 농업법인 과세전환(조특령 §63 및 §65)

당 초 안	수 정 안
■ 고소득 작물재배업 과세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농조합법인) 조합원당 수입금액 6억원을 초과하는 기타 작물재배업 소득분</li> <li>• (농업회사법인) 연간 수입금액 30억원을 초과하는 기타 작물재배업 소득분</li> </ul>	■ 기준금액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연간 수입금액 30억원 → 50억원 초과 소득분</li> </ul>

**수정이유** 농업법인 과세 전환에 따른 세부담 증가 완화

## 경제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 결과

\* 본 자료는 2014년 2월 7일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 한국은행 국제총괄팀, 금융감독원 거시감독국, 국제금융센터에서 합동으로 발표한 「경제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 결과」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2월 6일(금) 7시 30분 국제금융센터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경제금융상황 점검회의”가 개최\*되었음
  - \* 참석자: 기획재정부 1차관(주재), 금융위 고승범 사무처장, 한국은행 박원식 부총재, 금감원 김영린 부원장보, 국제금융센터 김익주 원장 등
  - 同 회의에서는 지난 1월 美 FOMC의 양적완화 축소 이후 신흥국을 포함한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 1 국제금융시장 동향

- ◇ (변동성 확대) '13. 12. 19일 미국 양적완화 최초 축소 이후 신흥국 중심으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 ◇ (신흥국별 차별화) 신흥국 주가와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CDS 프리미엄은 상승하는 가운데, 변동폭은 국가별로 차별화
  - 특히, 최근에는 정치불안이 심화되고, 시장에서 경제 기초체력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아르헨티나, 터키 등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

- ◇ (선진국 영향) '14. 1. 29일 미국의 양적완화 추가 축소(자산매입규모: 월 750억 → 650억달러) 이후 신흥국 불안과 美·中 경제지표 부진\*이 맞물리면서 선진국 금융시장도 영향\*\*

- 다만, 금주 후반 들어 신흥국 및 선진국 시장 모두 다소간 안정세를 회복하는 분위기

\* 1월 美 ISM 제조업지수: 51.3(전월 56.5, 시장예상 56.0 하회, '13.5월 이후 최저), 1월 中 비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53.4(전월 54.6 하회, 3개월 연속 하락세)

\*\* 1월 FOMC 이후 주가변동률(%): 미국 Δ0.7, 일본 Δ8.0, 독일 Δ0.4

- (주가) 1월 FOMC 이후 일부 신흥국 불안, 美·中 경제지표 부진 등으로 선진국 증시 동반 하락

(변동률, %)	미국	일본	독일	중국	태국	인니
5. 22~12월 FOMC	5.6	△0.3	7.6	△6.7	△17.2	△19.4
12월 FOMC ~ 1월 FOMC	△2.7	△1.3	1.7	△4.6	△5.8	5.3
1월 FOMC~2. 6	△0.7	△8.0	△0.9	△0.8	1.9	0.2

(변동률, %)	인도	터키	브라질	아르헨	한국
5. 22~12월 FOMC	4.0	△23.4	△10.4	52.5	△0.9
12월 FOMC ~ 1월 FOMC	△1.0	△13.1	△5.9	4.6	△1.7
1월 FOMC~2. 6	△1.6	4.0	0.4	3.9	△1.7

\* '13.5.22일: 버냉키 前 Fed 의장이 최초로 양적완화 축소 시사  
 \*\* 12월 FOMC: '13.12.19일(최초의 양적완화 축소, 자산매입규모 월 850억 → 750억달러)  
 1월 FOMC: '14.1.29일(추가적인 양적완화 축소, 자산매입규모 월 750억 → 650억달러)

■ (환율) 신흥국 통화가치는 전반적으로 약세기조

(절상률, %)	미국	일본	유로	중국	태국	인니
5. 22~12월 FOMC	△4.6	△0.7	6.3	1.0	△7.8	△19.7
12월 FOMC ~ 1월 FOMC	0.1	1.9	△0.1	0.3	△1.9	0.0
1월 FOMC~2. 6	0.5	0.2	△0.5	△0.1	0.5	△0.2

(절상률, %)	인도	터키	브라질	아르헨	한국
5. 22~12월 FOMC	△10.7	△10.2	△12.1	△33.3	5.9
12월 FOMC ~ 1월 FOMC	△0.5	△9.0	△4.3	△20.3	△1.8
1월 FOMC~2. 6	0.0	2.3	2.3	1.6	△0.4*

\* 한국의 경우 2.6일 NDF(뉴욕장)까지 반영

■ (CDS) 신흥국 CDS는 1월중 상승, 2월 들어 소폭 하락하는 등 변동성 확대

(변동폭, bp)	미국	일본	독일	중국	태국
5. 22~12월 FOMC	0	△22	△2	△10	37
12월 FOMC ~ 1월 FOMC	△1	10	△2	31	47
1월 FOMC~2. 6	0	△2	2	△2	△8

(변동폭, bp)	인니	터키	브라질	아르헨	한국
5. 22~12월 FOMC	75	87	47	△1,057	△15
12월 FOMC ~ 1월 FOMC	14	47	31	1,080	12
1월 FOMC~2. 6	△15	△8	△22	△348	2

■ (국채금리) 12월 FOMC 직후 선진국은 하향 안정화, 신흥국은 상승 및 하락이 국가별로 차별화

(변동폭, bp)	미국	일본	독일	중국	태국	인니
5. 22~12월 FOMC	85	△22	42	120	72	272
12월 FOMC ~ 1월 FOMC	△21	△3	△11	△11	△3	39
1월 FOMC~2. 6	2	△2	△4	0	△1	26

(변동폭, bp)	인도	터키	브라질	아르헨	한국
5. 22~12월 FOMC	162	352	302	△266	69
12월 FOMC ~ 1월 FOMC	△1	47	68	207	0
1월 FOMC~2. 6	△6	△4	△14	△49	△8

■ (외국인 주식자금 유출입) 태국, 인니, 필리핀 등을 중심으로 유출세 지속

	대만	인도	태국	베트남	인니
11월중	△7.8	29.3	△15.1	0.2	△3.4
12월중	16.1	25.3	△12.6	0.6	△4.3
1월중	8.1	△0.1	△4.2	0.8	2.0
2월중(~2.5)	△14.8	△1.9	△3.4	0.0	△0.5
'13. 6~12월	50.9	48.8	△54.8	0.1	△37.8

	필리핀	터키	브라질	한국
11월중	△1.1	0.8	3.4	△2.0
12월중	△1.7	△1.9	△3.7	△14.1
1월중	△1.1	2.0	△2.9	△6.6
2월중(~2.5)	△0.6	0	2.5	△12.6
'13. 6~12월	△10.7	△1.3	12.6	86.5

\* 외국인 채권순투자(조원): ('12년)7.4 ('13년)3.5 (11월) △1.0 (12월) △0.4 ('14.1.1~26일) 0.0 ('13년까지는 결제기준, '14년은 체결기준)

출처: 블룸버그, 한국은 금감원

2 국내금융시장 동향

◇ 1월 FOMC 이후 우리나라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었으나,  
 • 週 후반 들어 주가가 1,900선을 회복하는 등 점차 안정되는 모습

■ (주가) 국내증시는 美 FOMC 이후 하락하였으나 2.6일 들어 1,900선을 회복

(단위:pt)	'13년말	'14. 1. 29일 (FOMC직전)	2.3	2.4	2.5
KOSPI	2,011.3	1,941.2	1,920.0	1,886.9	1,891.3
KOSDAQ	500.0	515.2	513.6	507.6	505.6

(단위:pt)	2.6	전일비	1월 FOMC 직전 대비	전년 말 비
KOSPI	1,907.9	0.9%	△1.7%	△5.1%
KOSDAQ	509.9	0.9%	△1.0%	2.0%

■ (환율) 원/달러 환율은 1월 FOMC 이후 1,080원대로 상승하였으나, 신흥국 통화 안정세 등으로 2.5일 이후 1,070원대로 하락

(단위: pt)	'13년말	'14. 1. 29일 (FOMC직전)	2.3	2.4	2.5
원/달러	1,055.4	1,070.4	1,084.5	1,083.8	1,077.9
원/100엔	1,002.2	1,035.9	1,074.1	1,066.3	1,062.6

(단위: pt)	2.6	전일비	1월 FOMC 직전 대비	전년 말 비
원/달러	1,079.0*	+1.1	+8.6	+23.6
원/100엔	1,063.8	+1.2	+27.9	+61.6

\* 26일 뉴욕장 NDF 기준 원/달러 환율: 1,075.1

■ (금리) 채권시장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신흥국 불안 등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국채선물투자 지속 등으로 안정세 유지

(단위: pt)	'13년말	'14. 1. 29일 (FOMC직전)	2.3	2.4	2.5
국고3년	2.86	2.88	2.88	2.85	2.86
국고10년	3.58	3.61	3.61	3.54	3.55

(단위: pt)	2.6	전일비	1월 FOMC 직전 대비	전년 말 비
국고3년	2.85	△1bp	△3bp	△1bp
국고10년	3.54	△1bp	△7bp	△4bp

## 3 평가 및 대응방향

- FOMC 직후 확대되었던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은 금주 후반 들어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주요 경제지표 등 글로벌 이벤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아직까지 취약한 모습
  - 우리 경제는 작년 12월 양적완화 축소 개시 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신흥국 시장 불안 등으로 부정적 영향을 다소 받고 있으나, 그 정도는 상대적으로 덜한 상황
- 정부는 최근의 글로벌 시장변동성 확대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을 배경으로 신흥국들의 대내 취약요인(경상·재정수지 적자, 고인플레이, 정치불안 등)들은 단기적으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
  - 아울러, 美 부채한도 협상, 신흥국 정치불안, 중국 경기둔화 우려 등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 요인들이 맞물려 글로벌 시장 변동성이 심화될 우려도 상존
- 정부는 이러한 대외 리스크의 상시화에 대응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연계하에 긴장감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
  -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수위를 격상시키는 한편, 금감원·한은·KIC 해외 현지사무소 등을 통해 글로벌시장 주요 이슈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
  - 기재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국제금융센터 등 관계기관 간 시장동향 관련 정보교환 및 인식공유 등을 보다 강화하여
    - 시장불안 조짐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하에 신속하게 대응

## 참고 1 해외 주요 시각(국제금융센터 정리)

- (미국·중국) 미국경제 전망은 여전히 양호해 Fed가 양적완화 축소를 예정대로 진행할 가능성. 다만, 중국경제 둔화 우려는 작년에 비해 증가
    - 미국 경제는 최근 신흥국 상황에 크게 영향받지 않을 전망이며 견조한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
      - 최근 美 경제지표 둔화는 일시적 현상이며, 신흥국 불안은 신흥국 내부의 문제로 남을 것 (Goldman Sachs). 최근 주가하락 수준이 기존 경제전망을 바꿀 정도는 아님(JP Morgan)
    - 중국 경제는 최근 투자 및 제조업경기 둔화로 우려가 부각. 국내금리 상승, 기업수익성 저하도 위험요인이며 세계 경제가 중국으로부터 차별화될 수 있을지도 의문(HSBC)
      - 최근 China Credit Trust 구제\*로 금융 구조개혁 기회가 상실되었으며, 투자자들의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위협인식이 높아짐(FT)
- \* 중국 China Credit Trust의 디폴트 위기에도 중국 공상은 행이 이례적으로 원금 상환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1.21일) 중국 그림자 금융에 대한 우려 확산. 이후 공상은 행이 신탁상품 변제에 합의하면서 동 우려가 다소 완화
- (신흥국) 신흥국 불안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 다수
    - 신흥국 불안이 6개월래 두 번이나 나타날 정도로 짧아지고 있고 금번 불안의 원인을 뚜렷하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점에서 단기간 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움. 신흥국 정부의 방어적 조치 축곡(HSBC)
      - 금번 사태는 개별 요인보다는 '00년대 중국 고성장, 원자재 호황, 글로벌 저금리로 인한 '행운의 10년(lucky decade)' 이 약화되는 등 신흥국 거시 펀더멘탈 환경의 조정 필요성을 반영 (Goldman Sachs)

- 신흥국들에는 Fed의 Tapering보다 중국 경착륙이 더 중요하며 이로 인한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Reuters)
  - 중국 경기둔화세를 감안할 때 원자재 수출국인 브라질,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도 안전한 투자처가 아님(FT)
  - 'Sudden stop' (급격한 자본유출) 촉발 요인들은
    - ① 중국의 디레버리징
    - ② 터키와 브라질의 자금 조달 상황
    - ③ 신흥국의 정정 불안(Morgan Stanley)
- 97년 금융위기를 겪은 후 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경험. 이에 따라 신흥국 불안은 아시아 이외의 국가들로 제한될 가능성(Fidelity)
- **(한국)** 일부에서는 이번 신흥국 불안이 국내에 전이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대체로 긍정적인 시각
  - 한국은 내수·수출 회복과 경기부양에 중점을 둔 정책이 안정적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 선진국 경제개선으로 수출 성장세는 작년 추세를 유지할 전망(BoA)
    - 단기적으로 Fed tapering, 기업실적 등이 악재이나, 중장기적으로 경제 및 주식시장에 대해 긍정적 시각 유지(Barclays). 신흥국 중 멕시코, 대만, 한국, 말레이시아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처(relative haven)(FT)
    - 당분간 선진국을 선호하나, 한국 등 일부 국가는 견조한 펀더멘탈, 저가 매력 등으로 매수 유인 존재(UBS). 최근 한국 크레딧 스프레드 상승 폭은 미·유럽 투자자들의 강한 수요 등으로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낮음(IFR)
  - 신흥국 불안에 더해 엔화 약세,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 등이 경기회복 속도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존재(Citi 등)
    - 신흥국 조정장세는 끝나지 않았음. 펀더멘탈이

견고한 헝가리, 멕시코, 한국 통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우려(Goldman Sachs)

**참고 2** 2. 6일 국제금융시장 동향

	주가	환율		금리	유가	한국물 금융지표	
	美 Dow	달러/유로	엔/달러	美 국채 (10년물)	WTI	NDF	CDS
당일치	15,629	1.3592	102.10	2.70	97.84	1075.1	69
전일 대비	↑1.22%	↑0.0058	↑0.64	↑3bp	↑0.47%	↑3.9	↑3bp

**1 (시장동향)** 美/유럽증시 상승, 유로화 강세, 금리 상승, 유가 상승

① (주가) 美/유럽 증시는 美 경제지표 호조\*로 상승

\* 美 신규 주간실업청구자 수 33.1만명(전주 대비 △2만명, 시장전망치 하회)

- 2.6일 주가변동률(%): 美 +1.22, 英 +1.55, 獨 +1.54, 佛 +1.70, 中 휴장, 日 +1.23, 韓 +0.24, 인도 +0.25, 인니 +0.92, 태 +1.17, 브 +2.39, 터 +3.37, 아르헨 △0.72

- 美 Dow: (11말)12,217 (12말)13,104 (13말) 16,577 (14. 1말) 15,699 (2.5) 15,440 (2.6) 15,629

② (환율) 유로화는 ECB의 추가 완화조치 유예 표명\*으로 강세

\* 드라기 ECB 총재는 ECB 기준금리를 동결(0.25%)하며, "다음 달 새 경제전망 발표 후 추가 완화정책 시행 여부 결정"이라고 발표

- 달러/유로: (11말) 1.2927 (12말) 1.3193 (13말) 1.3779 (14. 1말) 1.3486 (2.5) 1.3534 (2.6) 1.3592

- 엔/달러: (11말) 77.8 (12말) 86.75 (13말) 105.26 (14. 1말) 102.04 (2.5) 101.46 (2.6) 102.10

- 2.6일 통화절상률(%): 인도 +0.31, 인니 △0.00,

브 +0.85, 남아공 +0.87, 터 +1.29, 아르헨  
+0.28

③ (금리) 美 국채금리는 美 경제지표 호조로 상승

\* 미국 (10년물, %): (11말)1.88 (12말)1.69 (13말) 3.03 (14.1말)  
2.64 (2.5) 2.67 (2.6) 2.70

일본 (10년물, %): (11말)0.99 (12말)0.79 (13말) 0.74 (14.1말)  
0.62 (2.5) 0.60 (2.6) 0.62

독일 (10년물, %): (11말)1.83 (12말)1.32 (13말) 1.93 (14.1말)  
1.66 (2.5) 1.64 (2.6) 1.70

인도 (10년물, %): (11말)8.57 (12말)8.05 (13말) 8.83 (14.1말)  
8.78 (2.5) 8.71 (2.6) 8.72

포르투갈 (10년물, %): (11말)13.36 (12말)7.01 (13말) 6.13  
(14.1말) 5.00 (2.5) 5.00 (2.6) 4.97

④ (유가) 유가는 美 경제지표 호조로 상승

\* WTI(\$/bbl): (11말)98.8 (12말)91.82 (13말) 98.42 (14.1말)  
97.49 (2.5) 97.38 (2.6) 97.84 +0.47%

Dubai(\$/bbl): (11말)104.9 (12말)107.8 (13말) 107.88 (14.1말)  
103.77 (2.5) 102.19 (2.6) 102.58 +0.38%

② (한국물 금융지표) 역외환율 3.9원 하락, CDS 3bp  
하락

\* 원/달러: (11말)1151.8 (12말)1,070.6 (13.11말)1058.2 (12말)1055.4  
(2.6) 1079.0 (2.6 뉴욕장 NDF) 1075.1

\* CDS(bp): (08. 10) 692 (11말) 161 (12말) 68 (13말) 66 (14.1말)  
71 (2.5) 72 (2.6) 69

\* 주요국 CDS(bp): 인니 216(△4) 브 186(△6) 日 52(△1) 中  
94(△2) 터 245(△10) 아르헨 2,376(△135)

# '12년말 공공부문 부채 산출 결과

\* 본 자료는 2014년 2월 11일 기획재정부 재정관리총괄과, 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에서 발표한 「'12년말 공공부문 부채 산출 결과」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12년말 기준으로 일반정부와 LH, 한전 등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는 821.1조원임
-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과 비영리공공기관을 포함하는 일반정부 부채는 504.6조원,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389.2조원, 내부거래로 제거되는 부채는 72.8조원임

## 공공부문 부채 산출 결과

(단위: 조원)

분류		2011년	2012년	증감	
비 금융 공 기 업	중앙정부	회계·기금	394.4	425.7	31.3
		비영리공공기관(165개)	43.1	52.3	9.2
		내부거래	△11.6	△11.3	0.3
	중앙정부 부채(a)		425.9	466.7	40.8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	40.8	43.4	2.6
		지방교육자치단체	9.9	9.9	△0.1
		비영리공공기관(87개)	1.2	1.1	△0.1
		내부거래	△0.5	△0.6	△0.1
	지방정부 부채(b)		51.4	53.7	2.3
	중앙-지방간 내부거래(c)		△18.1	△15.8	2.2
	일반정부 부채(A=a+b+c)		459.2	504.6	45.4 <sup>2)</sup>
	비 금융 공 기 업	중앙(123개)	323.9	343.5	19.6
		지방(50개)	48.2	51.3	3.2
		내부거래	△8.1	△5.6	2.5
비금융공기업 부채(B)		363.9	389.2	25.3 <sup>3)</sup>	
A와 B간 내부거래(C)		△69.8	△72.8 <sup>1)</sup>	△3.0	
공공부문 부채(A+B+C)		753.3	821.1	67.8	

주: 1) 국민연금-비금융공기업간 채무증권(30.8조), 국민주택기금-LH간 융자(29.7) 등

2) 국고채(24.4조), 예보(6.4조), 장학재단(1.6조) 등

3) LH(6.2조), 한전(4.6조), 가스(4.4조), 철도시설(1.8조), 경기도시(1.3조) 등

- 이번엔 공표하는 공공부문 부채는 없던 부채가 새로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 그동안 각각 산출하여 공표했던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기관 부채를 최신 국제지침\*에 따라 공공부문을 하나의 단위로 통합하고 내부거래를 제거하여 산출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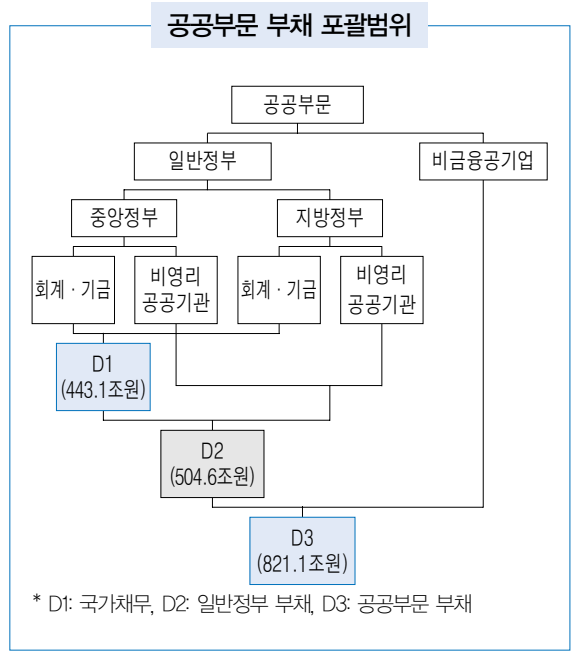
\* IMF 등 국제기구 공동으로 발표(12.6월)한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Guide for Compilers and Users, PSDS)

- 공공부문의 정확한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내부거래를 제거함에 따라, 단순 합산하는 경우보다 부채 규모가 줄어들음

**<예시> 국민주택기금이 채권을 발행하여 LH에 융자한 경우**

- ① 국민주택기금이 채권 100을 발행 → 국민주택기금 부채 100
- ② 국민주택기금이 LH에 30을 융자 → LH 부채 30, 국민주택기금 자산 30
- ③ 내부거래 미제거시 부채 : 130(국민주택기금 100+LH 30)
- ④ 내부거래 제거시 부채 : 100(국민주택기금 100)

\* 두 기관을 하나의 단위로 생각하여 융자로부터 발생한 LH 부채 30과 국민주택기금 자산 30을 상계함



\* 금융공기업은 예금 등이 부채로 인식되므로 적자국채 등 일반적인 부채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 산출대상에서 제외

### 1 공공부문 부채를 공표하는 이유

- 우리나라가 최신 국제지침에 따라 처음으로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하여 공표하는 이유는
  - ① 공기업 부채 등 향후 재정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공공부문의 재정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 ②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공공부문 정상화에 기여하며,
  - ③ 국정과제 실현과 정부 3.0 추진 등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2 부채 유형별 개념 및 활용

- 부채 유형에는 ①국가채무(D1), ②일반정부 부채(D2), ③공공부문 부채(D3) 등 3개가 있으며, 각각의 개념 및 활용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국가채무(D1)는 국가재정법(제91조)에 따라 현금주의 기준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을 대상으로 산출하며,
  - 중장기(5개년) 국가채무 관리 목표를 설정하는 등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시 활용
- ② 일반정부 부채(D2)는 국제지침,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중앙 및 지방의 회계·기금뿐만 아니라 비영리공공기관까지 포함하여 산출하며,
  - 현재 국가간 재정건전성 비교는 일반정부 부채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 우리나라 공공부문 부채와 외국의 일반정부 부채를 단순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 부채 규모가 외국에 비해 과도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

\* 일반정부 부채의 GDP 대비 비율: OECD 평균('12년) 107.4%(OECD Economic Outlook('13,11월))

\* 참고로, 발생주의 기준의 일반정부 부채는 결산 이후에 산출되므로, 예산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에는 현금주의 기준의 국가채무(D1)로 관리하고 있음
- ③ 공공부문 부채(D3)는 국제지침,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일반정부 부채(D2)에 비금융공기업까지 포함하여 산출하며,
  -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재정위험 및 재정건전성 관리 지표로 활용

유형	규모('12년) (對GDP)	포괄범위	산출기준	활용
국가채무 (D1)	443.1조원 (34.8%)	중앙 및 지방 정부의 회계·기금	국가재정법, 현금주의	국가재정 운용계획
일반정부 부채 (D2)	504.6조원 (39.7%)	D1+비영리 공공기관	국제지침, 발생주의	국제비교 (IMF, OECD)
공공부문 부채 (D3)	821.1조원 (64.5%)	D2+비금융 공기업	국제지침, 발생주의	공공부문 재정 건전성 관리

### 3 공공부문 부채 관리방안

#### 1 국가채무 관리 강화

- 국가채무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17년까지 GDP 대비 30%대 중반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
  - 항구적 세출절감 등을 통해 중기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Pay-go\* 등 재정규율 강화

\* 신규 재정지출 도입시 이에 상응하는 재원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
- 월간 재정동향('14. 2월), 통합재정정보 공개 시스템('15년)을 통해 월간 세입·세출 실적, 국가채무 등을 투명하게 공개

#### 2 지방부채 통합관리체계 구축

- 개별적인 부채관리에서 자치단체별 통합 관리체계 (자치단체+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로 전환하고, 지자체별 부채관리를 총괄 전담하는 부채관리관 지정 운영
  - 지자체가 매년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의무화
- \* 지자체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에 대해 부채 현황 및 전망(5회계연도), 관리계획 등을 포함

#### 3 공기업 부채 감축 목표 설정·관리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 공공기관의 부채를 '17년까지 부채비율 200% 수준('12년: 220%)이 되도록 관리
  - 항구적 현재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후속조치로 중점관리 18개 기관의 부채감축계획을 제출('14. 1. 29일)받아 검토중
- 지방공사 부채감축목표제를 도입하여 사채발행한도를 '12년 400%에서 '17년 200%로 매년 40%씩 순차적 감축

#### 4 공공부문 부채 관리방안

- ① 공공부문 부채와 성격이 다른 충당부채, 보증채무는 공공부문 부채에 합산하지 않되, 미래 재정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별도로 부기하여 공개함
- 충당부채는 미래 지급 규모를 추정한 것으로 부채 규모가 불확정적이며, 외국에서도 합산하지 않는 것이 관례임

(단위: 조원)

	2011년(A)	2012년(B)	증감(B-A)
• 연금충당부채 <sup>1)</sup>	342.1	436.9	94.8*
공무원연금	289.9	351.4	61.5
군인연금	52.2	85.5	33.3
• 퇴직수당 충당부채 <sup>2)</sup>	28.8	30.5	1.7
공무원연금	26.2	27.8	1.6
군인연금	2.6	2.7	0.1

주: 1) 연금가입자에게 장래 연금수급기간 동안 지급할 것으로 추정되는 연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

\* 적용 할인을 하락(22.4조), 기대여명 증가(33.9조), 산정방식 변경(24.5조) 등

2) 연금가입자가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수당을 추정한 금액

- 보증채무는 민간부문에서 채무 불이행시 공공부문 부채로 전환되는 등 발생 여부가 불확정적인 우발 부채로 부채에 합산하지 않음

(단위: '12년말 기준, 조원)

	민간	외국	합계
• 중앙 회계 · 기금*	130.5	-	130.5
• 비영리공공기관	11.1	-	11.1
• 비금융공기업	1.9	2.2	4.1
합계	143.5	2.2	145.7

주: \* 신용보증기금(45.4조), 주택신용보증기금(38.7조), 기술신용보증기금(18.1조) 등

- 충당부채, 보증채무 등 공공부문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부채를 공공부문 부채와 합산하여 사용하는 것은

부채 규모가 과다 계상되는 등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므로,

- 단순 합산한 규모를 공공부문 부채 또는 국가부채 규모라고 사용해서는 안 되며, 각각의 특성에 맞게 구분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람

#### 참고 1 국가채무, 일반정부 부채, 공공부문 부채 비교

(단위: '12년말 기준)

구분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규모 (GDP 대비)	443.1조원 (34.8%)	504.6조원 (39.7%)	821.1조원 (64.5%)	
산출근거	국가재정법(제91조) ('86 GFS)	국제기준 ('01 GFS, PSDS)	국제기준 (PSDS)	
회계기준	현금주의	발생주의	발생주의	
포괄범위	중앙정부	• 일반회계	• 일반회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특별회계	• 특별회계
		• 정부 관리기금	• 정부 관리기금	• 정부 관리기금
			• 공공기관 관리기금	• 공공기관 관리기금
지방·교육 자치단체	지방·교육 자치단체	• 일반회계	• 일반회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특별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기금	• 기금
		• 교육비특별회계	• 교육비특별회계	• 교육비특별회계
비금융공기업	비금융공기업	• 비영리공공기관	• 비영리공공기관	• 비영리공공기관
부채항목	국채	포함	포함	포함
	차입금	포함	포함	포함
	공채	제외	포함	포함
	충당부채 (공무원·군인연금 등)	제외	제외 (별도 부기함)	제외 (별도 부기함)
	기타발생주의 부채항목	제외	포함	포함
	연기금이 보유한 국공채	포함	제외	제외

참고 2 부채 규모 상세 비교

(단위: '12년말 기준)

분 류		국가채무 (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합 계		443.1조원	504.6조원	821.1조원	
국공립·민립 기관	중앙정부	회계·기금	425.1	425.7	425.7
		비영리공공기관	-	52.3	52.3
		내부거래	-	△11.3	△11.3
	중앙정부 부채		425.1	466.7	466.7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	27.1	43.4	43.4
		지방교육자치단체	2.1	9.9	9.9
		비영리공공기관	-	1.1	1.1
		내부거래	-	△0.6	△0.6
		지방정부 부채		29.2	53.7
	중앙-지방간 내부거래		△11.2	△15.8	△15.8
	비영리민간 기업	중앙	-	-	343.5
		지방	-	-	51.3
		내부거래	-	-	△5.6
		비금융공기업 부채		-	-
일반정부-비금융공기업간 내부거래		-	-	△72.8*	

주: \* 국민연금-비금융공기업간 채무증권(30.8조), 국민주택기금-NH간 용자(29.7조) 등

중앙정부 회계·기금의 부채 규모 비교

	D1	D2, D3
중앙회계·기금 부채	425.1조원	425.7조원
• 국채 <sup>1)</sup>	420.0	424.7
• 차입금 <sup>2)</sup>	2.3	4.8
• 국고채무부담행위 <sup>3)</sup>	2.8	0.6
• 공채	-	40.5
• 발생주의 항목	-	61.0
• 연금보유 국공채 <sup>4)</sup>	-	△105.8

주: 1) 액면가액(D1)과 할인·할증 발행을 반영한 장부가액(D2, D3) 차이

2) 공공기관 관리기금 제외(D1) 및 포함(D2, D3)

3) 계약시 인식(D1), 지급의무 발생시 인식(D2, D3)

4) 국민연금 보유 국채 92.4조원, 국민연금 보유 공채 11.2조원 등 내부거래로 제거

참고 3 중앙 공공부문 포괄범위(12년 기준)

구 분	내 용
일반 회계	국회, 대법원, 국무총리실 등 전 소관(일반회계가 없는 조달청, 특허청은 제외)
특별 회계 (18개)	1.농어촌구조개선, 2.교통시설, 3.등기, 4.교도작업, 5.에너지및자원사업, 6.환경개선, 7.우체국보험, 8.주한미군기지이전, 9.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10.국방·군사시설이전, 11.혁신도시건설, 12.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13.광역·지역발전, 14.양곡관리, 15.책임운영기관, 16.조달, 17.우편사업, 18.우체국예금
기금 (65개)	1.고용보험, 2.공공자금관리, 3.공무원연금, 4.공적자금상환, 5.과학기술진흥, 6.관광진흥개발, 7.국민건강증진, 8.국민연금, 9.국민주택, 10.국민체육진흥, 11.국제교류, 12.군인복지, 13.군인연금, 14.근로복지진흥, 15.금강수계관리, 16.낙동강수계관리, 17.남북협력, 18.농수산물가격안정, 19.농어업재해보험, 20.농지관리, 21.대외경제협력, 22.문화예술진흥, 23.문화재보호, 24.방사성폐기물관리, 25.방송발전, 26.범죄피해자보호, 27.보훈, 28.복권, 29.사립학교교직원연금, 30.사학진흥, 31.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 32.석면피해구제, 33.수산업발전, 34.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 35.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 36.양곡증권관리, 37.연론진흥, 38.여성발전, 39.연산강·섬진강수계관리, 40.영화발전, 41.원자력연구개발, 42.응급의료, 43.임금채권보장, 44.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 45.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 46.전력산업기반, 47.정보통신진흥, 48.중소기업창업및진흥, 49.지역신문발전, 50.청소년육성, 51.축산발전, 52.특정물질사용합리화, 53.한강수계관리, 54.외국환평형, 55.기술신용보증, 56.구조조정, 57.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58.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 59.부실채권정리, 60.산업기반신용보증, 61.무역보험, 62.신용보증, 6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64.주택금융신용보증, 65.국유재산관리기금
비영리 공공 기관 (165개)	1.공무원연금공단, 2.예금보험공사, 3.기술신용보증기금, 4.국민연금공단, 5.한국연론진흥재단, 6.한국문화예술위원회, 7.한국무역보험공사, 8.한국자산관리공사, 9.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0.신용보증기금, 11.영화진흥위원회, 12.중소기업진흥공단, 13.건강보험심사평가원, 14.국립공원관리공단, 15.국민건강보험공단, 16.국제방송교류재단, 17.농수산물품유통공사, 18.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9.도로교통공단, 20.농업기술실용화재단, 21.한국과학창의재단, 22.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3.한국보건산업진흥원, 24.한국산업단지공단, 25.한국산업인력공단, 26.한국소비자원, 27.한국장애인고용공단, 28.한국농어촌공사, 29.한국광해관리공단, 30.한국세라믹기술원, 31.한국교육학술정보원, 32.독립기념관, 33.여수광양항만공사, 34.국도교통과학기술진흥원, 35.한국인터넷진흥원, 36.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37.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38.한국고용정보원, 39.한국우체국물류지원단, 40.한국노인인력개발원,

구분	내 용
	41. 한국연구재단, 42.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4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45. 정보통신산업진흥원, 46. 한국콘텐츠진흥원, 47.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48. 한국환경공단, 49. 한국장학재단, 50. 한국디자인진흥원, 5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52. 한국정보화진흥원, 53.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54. 농림수산물기술기획평가원, 55.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56.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5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58.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59. 국토연구원, 60. 기초기술연구회, 6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62. 대한법률구조공단, 63. 한국고전번역원, 6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65.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66. 국방과학연구소, 67. 국민생활체육회, 68. 출판문화산업진흥원, 69.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70. (재)체육인재육성재단, 7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72. 한국교육개발원, 73. 한국교통연구원, 74. 한국국방연구원, 75. 한국국제교류재단, 76. 한국기계연구원, 77.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78. 한국노동연구원, 79.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80. 한국문학번역원, 8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82. 한국법제연구원, 8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84. 한국사학진흥재단, 85. 한국생명공학연구원, 86. 한국식품연구원, 8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8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89. 한국영상자료원, 90. 한국원자력문화재단, 9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9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93.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94. 산업연구원, 95. 영상물등급위원회, 96. 재외동포재단, 97. 신용보증재단중앙회, 98. (재)명동·정동극장, 99. 통일연구원, 100. 한국국제협력단, 101. 한국개발연구원, 10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03.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04.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0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0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07. 국방기술품질원, 10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09.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10. 한국전문연구원, 11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12.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13. 한국학중앙연구원, 114. 한국한의학연구원, 115.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16. 한국행정연구원, 117. 한국화학연구원, 118.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119. 대한장애인체육회, 120. 한국문화예술포럼진흥원, 121. 한국특허정보원, 122. 한국문화예술포럼연합회, 123. 동북아역사재단, 124. 녹색사업단, 125. 향로표지기술협회, 126. 정부법무공단, 127. 한국저작권위원회, 128. 게임물등급위원회, 129. 전략물자관리원, 130. 태권도진흥재단, 131. 산업기술연구회, 132. 학교법인한국폴리텍, 13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3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35.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3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37. 소상공인진흥원, 138. 가족위생방역지원본부, 139.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40. 노사발전재단, 141. 한국장애인개발원, 142.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143. 재단법인국악방송, 144.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145. (재)한국공연예술센터, 146. (재)예술경영지원센터, 147. 한국로봇산업진흥원, 148.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49. 창업진흥원, 150.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151. 한국기상산업진흥원, 152. 한국임업진흥원,

구분	내 용
	153. 기초과학연구원, 154.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155. 농업정책자금관리단, 156. 세종학당재단, 157. 한국건강진흥재단, 158. 한국보건건의료연구원, 159. 한국보육진흥원, 160.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16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162.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163. (재)한국문화정보센터, 164. 서울대학교, 165.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비금융 공기업 (123개)	1. 부산항만공사, 2. 인천국제공항공사, 3. 인천항만공사, 4. 한국지역난방공사, 5. 한국공항공사, 6. 한국석유공사, 7. 한국전력공사, 8. 한국가스공사, 9. 한국중부발전, 10. 한국수력원자력, 11. 한국서부발전, 12. 한국동서발전, 13. 한국남부발전, 14. 한국남동발전, 15. 한국광물자원공사, 16. 한국토지주택공사, 17. 대한석탄공사, 18. 한국철도공사, 19.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0. 한국감정원, 21. 한국관광공사, 22. 한국도로공사, 23. 한국마사회, 24.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5. 한국수자원공사, 26. 한국조폐공사, 27. 근로복지공단, 28.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29. 한국원자력환경공단, 30.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3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32. 한국석유관리원, 33. 한국시설안전공단, 34. 한국전기안전공사, 35. 한국전력거래소, 36. 교통안전공단, 37. 에너지관리공단, 38. 축산물품질평가원, 39. 한국산업기술시험원, 40. 선박안전기술공단, 41. 한국가스안전공사, 42.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4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4. 한국해양수산연수원, 45. 한국우편사업진흥원, 46. 대한지적공사, 47. 한국소방산업기술원, 48. 한국철도시설공단, 49.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50. 강원대학교병원, 51. 강원랜드, 52. 경북대학교병원, 53. 경상대학교병원, 54. 광주과학기술원, 55. 대한적십자사, 56. 대한체육회, 5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58. 중소기업유통센터, 59. 한국회귀의약품센터, 60. 국립중앙의료원, 61. 한국건설관리공사, 62. 한국기술교육대학교, 63. 한국문화진흥원, 64. 한전원자력연료, 65. 88관광개발, 66. 울산항만공사, 6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68. 부산대학교병원, 69. 서울대학교치과병원, 7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71. 에너지경제연구원, 72. 예술의전당, 73. 한국원자력의학원, 74. 인천종합에너지, 75. 전남대학교병원, 76. 전쟁기념사업회, 7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78. 주택관리공단, 79. 한국가스기술공사, 80. 충북대학교병원, 81. 코레일로지스, 82. 국립암센터, 83.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84. 서울대학교병원, 85. 충남대학교병원, 86. 한국문화재보호재단, 87. 한국보건건의료인국가시험원, 88. 한국생산기술연구원, 89. 한국원자력연구원, 90.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91. 한국전력기술, 9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93. 한국체육산업개발, 9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95. 한전KPS, 96. 한전KDN, 97. 코레일네트웍스, 98. 기초전력연구원, 99. 코스콤, 100. 국립박물관문화재단, 101. 한국발명진흥회, 102. 한국표준협회, 103. 시장경제진흥원, 104. (재)우체국시설관리단, 105.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06. 코레일테크, 107. 인천항만공사, 108.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09. 전북대학교병원, 110. 제주대학교병원, 111. 한국과학기술원,

구분	내 용
비금융 공기업 (123개)	112. 한국전기연구원, 113. 코레일유통, 114. 한국어촌어항협회, 115. 부산항보안공사, 116. 코레일관광개발, 117. 그랜드코리아레저, 118. 해양환경관리공단, 119. 국제식물검역인증원, 120. 부산대학교치과병원, 121. 한국잡월드, 122. KBS, 123. EBS

**참고 4** 지방 공공부문 포괄범위(12년 기준)

구분	내 용
일반회계 (244개)	광역시·도 17개, 기초시·군·구 227개 (시 74개, 군 84개, 구 69개)
기타 특별회계 (1,927개)	자치단체별 특정목적 달성을 위해 설립
직영공기업 특별회계 (251개)	상수도 115개, 하수도 85개, 공영개발 33개, 지역개발기금 18개
교육비특별 회계(17개)	광역시·도 17개 교육비 특별회계
기금 (2,395개)	노인, 청소년, 문화, 복지, 지역개발 등 특정목적에 위해 각 자치단체가 설립
비영리공공 기관 (87개)	(공사) 1.대구, 2.광주, 3.대전 도시철도공사, 4.인천교통공사, 5.양평지방공사, 6.청도공영사업공사, 7.의왕도시공사, 8.구리도시공사, 9.경상북도관광공사 (공단) 10.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11.중로구시설관리공단, 12.중구시설관리공단, 13.울산구시설관리공단, 14.성동구도시관리공단, 15.광진구시설관리공단, 16.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17.중랑구시설관리공단, 18.성북구도시관리공단, 19.강북구도시관리공단, 20.도봉구시설관리공단, 21.노원구시설관리공단, 22.은평구시설관리공단, 23.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24.마포구시설관리공단, 25.양천구시설관리공단, 26.강서구시설관리공단, 27.구로구시설관리공단, 28.금천구시설관리공단, 29.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30.동작구시설관리공단, 31.관악구시설관리공단, 32.강남구도시관리공단, 33.송파구시설관리공단, 34.강동구도시관리공단, 35.부산시설공단, 36.부산환경공단, 37.부산지방공단스포원, 38.기장군도시관리공단, 39.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40.대구광역시환경시설공단, 41.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42.인천환경공단, 43.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44.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 45.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 46.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47.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48.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49.인천광역시강화군시설관리공단,

구분	내 용
	50. 광주광역시환경공단, 51.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52.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53.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54. 울주군시설관리공단, 55. 수원시시설관리공단, 56. 성남시시설관리공단, 57. 부천시시설관리공단, 58. 안양시시설관리공단, 59.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60. 시흥시시설관리공단, 61. 파주시시설관리공단, 62. 군포시시설관리공단, 63. 양주시시설관리공단, 64. 안성시시설관리공단, 65. 포천시시설관리공단, 66. 오산시시설관리공단, 67. 과천시시설관리공단, 68. 여주시시설관리공단, 69. 가평군시설관리공단, 70. 연천군시설관리공단, 71. 동해시시설관리공단, 72. 속초시시설관리공단, 73. 영월군시설관리공단, 74. 정선군시설관리공단, 75. 청주시시설관리공단, 76. 단양관광관리공단, 77. 보령시시설관리공단, 78. 전주시시설관리공단, 79. 포항시시설관리공단, 80. 안동시시설관리공단, 81. 구미시설공단, 82. 문경관광진흥공단, 83. 창원시시설관리공단, 84. 창원경륜공단, 85. 김해시시설관리공단, 86. 양산시시설관리공단, 87. 천안시시설관리공단
비금융 공기업 (50개)	1. 서울메트로, 2.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3. 부산교통공사, 4. SH공사, 5. 부산도시공사, 6. 대구도시공사, 7. 인천도시공사, 8. 광주광역시도시공사, 9. 대전도시공사, 10. 울산도시공사, 11. 경기도공사, 12. 강원도개발공사, 13. 충북개발공사, 14. 충청남도개발공사, 15. 전북개발공사, 16. 전남개발공사, 17. 경상북도개발공사, 18. 경상남도개발공사, 19.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0. 서울농수산식품공사, 21. 김대중컨벤션센터, 22. 대전마케팅공사, 23. 경기관광공사, 24. 경기평택항만공사, 25. 고양도시관리공사, 26. 용인도시공사, 27. 안산도시공사, 28. 남양주도시공사, 29. 평택도시공사, 30. 화성도시공사, 31. 광주지방공사, 32. 김포도시공사, 33. 구리농수산물공사, 34. 하남시도시개발공사, 35. 춘천도시공사, 36. 강릉관광개발공사, 37. 태백관광개발공사, 38.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39. 당진해양관광공사, 40. 여수시도시공사, 41. 완도개발공사, 42. 청송사과유통공사, 43. 영양고추유통공사, 44. 통영관광개발공사, 45. 함안지방공사, 46. 창녕군개발공사, 47. 제주관광공사, 48. 부산관광공사, 49.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50. 제주에너지공사

# 2014년도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 확정

\* 본 자료는 2014년 2월 7일 기획재정부 평가분석과에서 발표한 「2014년도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 확정」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1. 개요

- 기획재정부는 2. 7일(금) 이석준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4년도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을 심의·의결하였음
  -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은 주무 기관의 장이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타공공기관 평가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 것으로,
  - 금번 평가편람(안) 마련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임

## 2. 편람(안)의 주요 내용

- 평가편람(안)은 조직 규모가 유사한 강소형기관(준정부기관)\*의 편람을 준용하여 마련하였으며,
  - 세부 평가 항목과 배점은 주무 기관이 자율 결정하되,
  - 방만경영 지표(보수·복리후생·노사관리)는 모든 기관에 대해 필수적으로 평가하도록 함
 \* (위탁집행형) 정원 500인 미만, (기금관리형) 정원 500인 미만이고 자산 1조원 미만
- 특히, 기타공공기관 중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기관에 해당하는 8개 기관\*에 대한 중간평가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주무 부처가 올해 9월말까지 해당 기관의 방만경영 개선 실적을 평가하도록 함

\* 코스콤, 한국수출입은행, 강원랜드,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 기술, 부산대학교병원, 한국투자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 또한, 산은, 기은 등 주요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이 아닌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사용하도록 함

\* 조직·사업 규모, 업무성격 등에 비추어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한 기관

- 평가의 후속조치로서 주무 기관은 소관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장과 상임이사 등의 해임 조치 등이 가능함

3. 향후 추진 일정

- 기획재정부는 심의·의결된 평가편람(안)을 주무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며,
  - 주무 기관은 2014년도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을 바탕으로 3월말까지 소관 기관별 평가편람(안)을 확정하고, 2015년도에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기타공공기관 평가 추진 일정

일정	내용	비고
'14. 2월초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 마련	공운위 의결
'14. 3월말	기관별 평가편람 및 평가계획 확정	주무 기관
'14. 9월말	중간평가 실시 및 공운위 보고	8개 기관 실시
'15. 1~6월 중	'14년도 실적 평가 및 공운위 보고	

참고 2014년도 부처별 기타공공기관 현황(187개)

주무기관	기관명
총 리 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고 용 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기 재 부	한국투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교 육 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외 교 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통 일 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법 무 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 방 부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안 행 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문 체 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한국문화진흥(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태권도진흥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아시아문화개발원, 세종학당재단,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그랜드코리아레저(주), 국민생활체육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게임물관리위원회, (재)한국문화정보센터, (재)한국공연예술센터, (재)체육인재육성재단, (재)예술의전당,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명동·정동극장, (재)국악방송, (사)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농 식품 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자금관리단
산 업 부	(주)강원랜드,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기초전력연구원, 인천종합에너지(주),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전력기술(주), 한국표준협회,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전원자력연료(주), 한전KDN(주), 한전KPS(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복 지 부	(재)한국보육진흥원, (재)한국장애인개발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사, 한국건강증진재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무기관	기관명
환 경 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여 가 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 토 부	(주)위더웨이플러스, (주)한국건설관리공사, 주택관리공단,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항공안전기술센터
해 수 부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항로표지기술협회
금 융 위	한국정책금융공사, 코스콤,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산은금융지주
미 래 부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과학연구원, 기초기술연구회,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산업기술연구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건설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공 정 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안 전 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보 훈 처	88관광개발(주)
방 사 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문화재청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산 림 청	녹색사업단
중 기 청	(주)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특 허 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식 약 처	한국회귀의약품센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각 언론매체에 보도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관련 주요 기사내용입니다.

- 편집자 주 -

### 조세재정연구원 “기초연금 지급대상 45%로 축소해야”

소득하위 70% 보다 노인빈곤률 45.1%가 효과 최대

박근혜정부가 당초 100% 지급을 약속했던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초연금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에서 지급대상을 다시 45%로 줄여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윤성주 부연구위원은 「기초연금제도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재정포럼』 2014년 1월 호)에서 “기초연금이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공공부조의 개념이라면, 그들이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지원하면 된다”며 “노인빈곤층은 경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법적으로 미리 70%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율인 45.1%에게만 지원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부연구위원은 “빈곤율이 45.1%인데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경우 하위 50~70%에 해당하는 노인들은 기초연금 20만원을 여가생활 등에 지출할 가능성이 높지만, 하위 30% 노인들은 여전히 그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70%가 아닌 45.1%에게 지급할 경우 빈곤층에게 더 큰 금액을 지원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빈곤율을 낮출 가능성

도 높다는 얘기가.

그는 지난 2012년 7월에도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한 소고」 보고서에서 기초연금의 100% 지급보다 소득 하위 70%만 지급하자는 주장을 처음 제기해 정부의 지급대상 축소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려운 재정형편상 중·장기적으로 실제 정책으로 추진될 지 여부가 관심사다.

그는 “국민의 세금으로 모든 국민에게 충분하지 못한 동일한 수준을 지원하는 것이 복지국가는 아닐 것”이라며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부족한 만큼을 채워줘 실질적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복지국가 개념에 가깝고, 이것이 기초연금에 적용될 때 노인빈곤율도 하락하는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OECD도 2001년 권고안에서는 기초연금이 보편적 제도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고 했으나 2012년에는 저소득층 노인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운용할 것을 권고했다는 것.

아울러 “국가가 국민의 노후를 준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노후준비는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것을 정부와 정치권은 강조해야 한다”면서 “스스로 노후준비를 못한 노인들에 한해서 공공부조 개념에서 국민세금을 이용해 지원해주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아시아투데이, 2014-02-17〉

## “기업 규제 풀어야 稅收 늘어나”

### 일관성 있는 정책 필요, 세수 너무 낙관적 예측

세수 부족으로 비상이 걸린 가운데 경제전문가들은 “기업 규제를 풀고 경영 환경을 개선해 기업 실적이 나아져야 세수 확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안재욱(경제학) 경희대 교수는 10일 문화일보와 전화통화에서 “세수 확대를 위해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푸는 걸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해야 된다”며 “지금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가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규제들이 대거 만들어지면서 기업 활동이 위축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대형마트 출점 금지를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기업을 옥죄고 있는 규제들을 풀어야 실적이 좋아지고 그만큼 법인세도 많이 걷혀 세수 증대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중석(경영학) 홍익대 교수는 “정부가 세수 부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세율을 올리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지만 경기 불황 국면에서 세율을 올리면 오히려 세금이 잘 걷히지 않는다는 게 경제학의 결론”이라며 “부가가치세·법인세 등 경제 활동 활성화에 따른 세수 확대를 피하는 편이 정공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관광·의료·교육 등 서비스 분야의 규제를 포함해 투자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기업 활동을 자유롭게 해준다면 세수는 자연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은 “세수를 낙관적으로 예측한 잘못이 있었다”며 “2008년 금융위기 이래 6년 이상 전 세계 경제가 함께 곤란에 빠진 건 몇 십년 만의 일로, 올해를 넘어 내년에도 침체가 계속될 걸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선택과 집중으로 재정 투입을 하는 ‘두 마리 토끼’의 상반된 정책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결론내렸다.

(문화일보, 2014-02-10)

## 공기업 개혁, 민영화가 대안

### 자유경제원 세미나

공기업의 과도한 부채와 방만 경영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영화가 대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경제원이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공기업 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의 세미나에서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는 ‘이다’ 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박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의 계산법을 적용하면 우리나라 광의의 국가부채는 1,285조원, 협의의 국가부채는 858조원에 달한다”면서 “500조원에 육박하는 공기업 부채가 통계에서 누락돼 착시효과로 재정 적자를 부추기는 결과가 초래됐다”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영국의 마거릿 대처 총리가 추진한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롤 모델’로 제시하면서 △낙하산 방지법 제정 △부채 해결에 실패한 공공기관장 해임 △공공요금 현실화 목표를 설정 △경영진·노조의 자기혁신 등을 주문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서 이원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은 “10대 공기업의 차입금 의존도가 모두 30%를 초과해 주의를 요구하는 수준”이라며 “공공성 회복을 통한 신뢰 확보와 경영 의지를 확립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울신문, 2014-02-05)

# 재정포럼

2014년 2월호 통권 제212호

-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발행인 /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노영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한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상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혜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담당연구원 / 최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출판팀장)  
최윤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장은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위원)  
신지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위원)

## ■ 월간 재정포럼

2014년 2월 17일 발행 / 제18권 제2호(통권 제212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송파라00035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TEL: (02) 2186-2130~3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선 디자인 TEL: (02) 2269-2234

■ 인쇄 / 상일인쇄 TEL: (02) 2269-6770

##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 시 두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셔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 (02) 2186-2132
- FAX : (02) 2186-2139
- E-mail : pub@kipf.re.kr
- 주소 :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출판팀

###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 441-05-000011
  - 예금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